



오산시의회  
OSANCITY COUNCIL

#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및 감사방안 수립 연구 용역

**2021. 11.**



# 참 여 연 구 진

< 오산시 민간위탁 연구회 참여의원 >



◆ 김영희 의원

◆ 장인수 의원

◆ 성길용 의원

◆ 이성혁 의원

< 연구단체 대표 >



# 목 차

01 과업의 배경 .....	3
1절 과업개요 .....	3
2절 과업의 범위와 대상 .....	3
3절 과업의 방법 .....	7
02 민간위탁 이론 및 관계법령 검토 .....	11
1절 민간위탁의 의의 및 근거 .....	11
2절 민간위탁 대상과 사무유형 .....	18
03 민간위탁 현황 분석 .....	39
1절 민간위탁 운영 현황 분석 .....	39
2절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제도 현황 분석 .....	75
3절 오산시 민간위탁 운영 현황 .....	89
04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	95
1절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검토 기준 .....	95
2절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안) .....	98
3절 공공위탁에 관한 검토 .....	137
4절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 .....	141
5절 오산시 위탁에 관한 감사 전략 검토 .....	166
부록 표준 입찰공고문 (안) .....	183

# 표 목 차

표 1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분류 .....	18
표 2  민간위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0
표 3  편익의 속성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 분류 .....	21
표 4  위임과 위탁의 비교 .....	24
표 5  민간위탁 사무와 유사개념의 단계적 구분기준 .....	26
표 6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기준 .....	27
표 7  공공서비스 전문성 판단 기준 .....	28
표 8  지방행정 민간위탁 유형별 분류표 .....	33
표 9  전국 민간위탁 현황 요약 .....	35
표 10  전국 민간위탁 낙찰자 선정방법 .....	42
표 11  전국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기준 및 서비스 평가 실시 여부 .....	43
표 12  전국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기준 및 서비스 평가 실시 여부 .....	45
표 13  특·광역시 민간위탁 낙찰자 선정방법 .....	46
표 14  특·광역시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기준 및 서비스 평가 실시 여부 .....	47
표 15  도단위 민간위탁 현황(사업수, 예산, 법적근거) .....	48
표 16  도단위 민간위탁 낙찰자 선정방법 .....	50
표 17  도단위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기준 및 서비스 평가 실시 여부 .....	51
표 19  시단위 민간위탁 현황(사업수, 예산, 법적근거) .....	54
표 19  시단위 민간위탁 낙찰자 선정방법 .....	55
표 20  시단위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기준 및 서비스 평가 실시 여부 .....	57
표 22  군단위 민간위탁 현황(사업수, 예산, 법적근거) .....	62
표 22  군단위 민간위탁 낙찰자 선정방법 .....	62
표 23  군단위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기준 및 서비스 평가 실시 여부 .....	65
표 25  자치구단위 민간위탁 현황(사업수, 예산, 법적근거) .....	70
표 25  자치구단위 민간위탁 낙찰자 선정방법 .....	70
표 26  자치구단위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기준 및 서비스 평가 실시 여부 .....	72
표 27  개별 조례상 민간위탁 관련 근거 .....	75
표 28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개념 .....	76
표 29  민간위탁 관련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예시 .....	76
표 30  민간위탁과 유사개념의 차이점 .....	77
표 31  시설형 위탁과 사무형 위탁 .....	77
표 32  민간위탁 추진절차 .....	78
표 33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관련 조례 .....	79
표 34  연도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현황 .....	80
표 35  서울시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항목 예시 .....	81

# 표 목 차

표 3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적격자 심의지표 .....	81
표 37  자치구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도 .....	82
표 38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적격자 심의지표 .....	83
표 39  지도·점검 .....	83
표 40  조례와 지침에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공개 관련 규정 .....	85
표 4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유형별 평가영역 및 지표 .....	85
표 42  민간위탁사업 사업건수 및 예산 .....	87
표 43  민간위탁사업 위탁횟수 현황 .....	87
표 44  민간위탁사업 위탁기간 현황 .....	87
표 45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방법 현황 .....	88
표 46  민간위탁사업 유형별 현황 .....	88
표 47  민간위탁사업 분야별 현황 .....	88
표 48  오산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현황 - 2021. 6. 기준 .....	89
표 49  오산시 민간위탁 계약기간 현황 .....	91
표 50  오산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기준 .....	92
표 51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검토 기준 .....	95
표 52  행정안전부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96
표 53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97
표 5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기준 총괄 .....	98
표 55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기준 : 1단계 .....	98
표 57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분석 점수 기준표 .....	100
표 58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최종 판단 기준표 .....	102
표 59  현 오산시 민간위탁 위탁기간 기준 .....	103
표 60  오산시 민간위탁 위탁기간 기준 개선(안) .....	104
표 61  현 오산시 민간위탁 위탁 비용 산정 기준 .....	104
표 62  오산시 민간위탁 위탁 비용 산정 기준 개선(안) .....	104
표 63  현 오산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방법 기준 .....	105
표 64  오산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방법 개선(안) .....	105
표 65  서울특별시 위탁수수료 반영 방안 .....	106
표 66  서울특별시 위탁수수료 효율 .....	106
표 67  오산시 민간위탁 위탁수수료 개선(안) .....	106
표 68  현 오산시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 운영 기준 .....	107
표 69  오산시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 운영 개선(안) .....	107
표 70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 .....	108
표 71  현 오산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109

# 표 목 차

표 72  현 오산시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 운영 기준 .....	110
표 73  위수탁 계약서 개선 검토 기준 .....	110
표 74  오산시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서 개선(안) .....	111
표 75  갑질근절 추진 근거 .....	114
표 76  입찰단계에서 갑질 해소를 위한 체크리스트 .....	114
표 77  낙찰 후 단계에서 갑질 해소를 위한 체크리스트 .....	115
표 78  민간위탁 갑질근절 전담팀 신설 방안 .....	116
표 79  민간위탁 수탁기관 설문조사(안) .....	117
표 80  성과평가 평가방법 기준 .....	121
표 81  정량평가 평가방법 세부내용 .....	121
표 82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 (사무의 성격) .....	123
표 83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 (시설 유지관리 업무 포함 여부) .....	123
표 84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분류 지표 구성 .....	123
표 85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 세부 체계 .....	124
표 86  성과목표 설정 기준 .....	124
표 87  사업성과목표 측정 예시 (청소년상담센터) .....	125
표 88  허위 및 오류자료에 대한 처리 .....	126
표 89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	127
표 90  시민이용 - 시설형 민간위탁 평가지표 구성 .....	128
표 91  시민이용 - 사무형 민간위탁 평가지표 구성 .....	129
표 92  중간지원조직 - 시설형 민간위탁 평가지표 구성 .....	130
표 93  중간지원조직 - 사무형 민간위탁 평가지표 구성 .....	131
표 94  사회복지 - 시설형 민간위탁 평가지표 구성 .....	132
표 95  사회복지 - 사무형 민간위탁 평가지표 구성 .....	133
표 96  단순시설관리 민간위탁 평가지표 구성 .....	134
표 97  중간지원조직 - 시설형 민간위탁 평가지표 구성 .....	135
표 98  직영운영 요약 .....	137
표 99  운영방식별 관리의 비교 .....	138
표 100  운영방식별 장단점 비교 .....	139
표 101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 .....	140
표 102  공공위탁 조례 구성(안) .....	140
표 103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141
표 104  감사연구원 민간위탁 감사 전략 .....	166
표 105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감사지적 사항 1 .....	167
표 106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감사지적 사항 2 .....	168

## 표 목 차

표 107   경기도 부천시 민간위탁 감사지적 사항 1 .....	169
표 108   경기도 부천시 민간위탁 감사지적 사항 2 .....	169
표 109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감사지적 사항 .....	170
표 110   경기도 안산시 민간위탁 감사지적 사항 .....	171
표 111   서울시 영등포구 민간위탁 감사지적 사항 .....	172
표 112   서울시 성동구 민간위탁 감사지적 사항 .....	173
표 113   민간위탁 사무 운영방식 선정 부문 감사 중점사항 .....	175
표 114   조례/규칙/지침 준수 부문 감사 중점사항 .....	175
표 115   운영예산 적정성 부문 감사 중점사항 .....	176
표 116   서비스디자인 입찰기획 부문 감사 중점사항 .....	176
표 117   계약서 작성 부문 감사 중점사항 .....	177
표 118   성과목표 개발 부문 감사 중점사항 .....	177
표 119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 부문 감사 중점사항 .....	178
표 120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부문 감사 중점사항 .....	179
표 121   표준 입찰공고문 작성 기준 .....	183



CHAPTER

I

# 과업의 배경



# 01 | 과업의 배경

## 1절 과업개요

- 경기도 오산시는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통해 이를 통제·조정하고 있음.
- 단, 오산시의 지역적 여건과 민간위탁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함에 따라 민간 위탁 추진 시 업체선정 및 예산집행을 함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성과평가의 주기 및 실현가능성, 적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 지자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104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오산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기본 조례 정비 및 표준적인 운영관리 지침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기준 및 추진절차, 위탁원가산정·계약·집행·성과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 하고, 관련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조정 보완 후 대 내·외적 합리적 운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2절 과업의 범위와 대상

### 1. 대상적 범위

- 대 상 : 경기도 오산시 민간위탁 사무 및 관련 지침
- 기 간 : 2021년도
- 범 위

연번	위탁사무/시설명	소관부서	수탁기관	계약기간	위탁방식
1	오산시청 어린이집 운영	자치행정과	개인	3년	공개모집
2	오산종합사회복지관	희망복지과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3년	공개모집
3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희망복지과	사단법인 오산예일	5년	공개모집
4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희망복지과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	5년	공개모집
5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노인장애인과	오산대하고 산학협력단	4년 7월	공개모집
6	오산남부장래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노인장애인과	사단법인 오산예일	5년	공개모집
7	오산은빛사랑채 운영	노인장애인과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4년 6개월	공개모집
8	오산남부은빛사랑채 운영	노인장애인과	사단법인 오산예일	5년	공개모집
9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	5년	공개모집
10	우산세교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	5년	공개모집
11	오산노인종합복지관 및 실버케어센터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	5년	공개모집

제1장. 과업의 배경

연번	위탁사무/시설명	소관부서	수탁기관	계약기간	위탁방식
12	오산세교은빛사랑채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	5년	공개모집
13	오산시보조기수리센터	노인장애인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오산시지회	2년	공개모집
14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가족보육과	오산대하교 산학협력단	5년	공개모집
15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가족보육과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5년	공개모집
16	시립금바위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금바위 사회적협동조합	4년 2개월	공개모집
17	시립꽃다리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3년	공개모집
18	시립나리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2개월	공개모집
19	시립남부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20	시립매홀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2개월	공개모집
21	시립미래클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2년 2개월	공개모집
22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사단법인 아이길벗	4년 2개월	공개모집
23	시립비둘기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2개월	공개모집
24	시립삼미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2개월	공개모집
25	시립세교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세교꿈터사회적협동조합	4년 2개월	공개모집
26	시립세마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2개월	공개모집
27	시립수청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4년 2개월	공개모집
28	시립가온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29	시립예일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대한예수교장로회오산장로교회	4년 2개월	공개모집
30	시립오산숲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5년	공개모집
31	시립오산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원불교 오산교당	4년 2개월	공개모집
32	시립오산자이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7개월	공개모집
33	시립은빛어린이집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34	시립은여울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2년 2개월	공개모집
35	시립잔다리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2개월	공개모집
36	시립죽미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37	시립청호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2년 2개월	공개모집
38	시립초록별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같이가치 사회적협동조합	4년 2개월	공개모집
39	시립푸른숲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40	시립한신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1년 11개월	지정위탁
41	시립오산세교복지관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3년	공개모집
42	시립세교호반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더키움 사회적협동조합	5년	공개모집
43	시립세교자이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44	시립아이행복어린이집 우녕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45	시립자연숲파복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46	시립자이꿈미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양일교회	5년	공개모집
47	시립시티자이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아이자람 사회적협동조합	5년	공개모집
48	시립푸르지도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49	시립세교행복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50	시립청호행복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연번	위탁사무/시설명	소관부서	수탁기관	계약기간	위탁방식
51	시립한아름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52	시립청학행복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53	시립파크시티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3개월	공개모집
54	시립운암6단지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2년 1개월	공개모집
55	시립시티자이3단지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2개월	공개모집
56	시립오산대역센트럴시티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3개월	공개모집
57	시립번개뜰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11개월	공개모집
58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아동청소년과	사단법인 오산예일	5년	공개모집
59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아동청소년과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3년	공개모집
6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아동청소년과	오산청년회의소	3년	공개모집
61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운영(국가위임사무)	아동청소년과	행복한이주민센터	5년	공개모집
62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운영	아동청소년과	법무부법사랑위원 오산지구협의회	3년	공개모집
63	오산시함께자람센터1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유림사회적협동조합	4년 4개월	공개모집
64	오산시함께자람센터2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유림사회적협동조합	4년 4개월	공개모집
65	오산시함께자람센터3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자람사회적협동조합	4년 9개월	공개모집
66	오산시함께자람센터4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글로벌사회적협동조합	4년 9개월	공개모집
67	오산시함께자람센터5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자람사회적협동조합	4년 9개월	공개모집
68	오산시함께자람센터6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유림사회적협동조합	4년 6개월	공개모집
69	오산시함께자람센터7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유림사회적협동조합	4년 6개월	지정위탁
70	오산시함께자람센터8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유림사회적협동조합	4년 11개월	지정위탁
71	오산시함께자람센터9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유림사회적협동조합	4년 9개월	지정위탁
72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일자리정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오산지역본부	3년	공개모집
73	오산오색시장고객지원센터 운영	지역경제과	사)오산오색시장상인회	3년	공개모집
74	유엔군초전기념관 운영	문화예술과	대한민국상이군경오산지회	2년	공개모집
75	체력인증센터 운영(국가위임사무)	체육관광과	사)오산스포츠클럽	3년	공개모집
7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위생과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	5년	공개모집
77	현수막게시대 운영	건축과	사)오산시광고협회	3년	공개모집
78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건축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3년	공개모집
79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건축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3년	공개모집
8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건강증진과	행복주는 의원	3년	공개모집
81	오산시하수처리수재이용 시설운영	하수과	미래환경기술㈜	3년	공개모집
82	맑음터공원체육시설 운영	공원녹지과	오산시체육회	3년	공개모집

## 2. 내용적 범위

### 1) 민간위탁 이론 및 관계법령 검토

- 민간위탁의 이해
  - 유사 개념의 정의적 차이
  - 민간위탁 사무와 유사개념의 단계적 구분 기준
- 민간위탁 사무의 분류 및 유형
  - 민간위탁 사무의 분류
  -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
- 관련 법규.지침 검토(자치법규 포함)

### 2) 오산시 민간위탁 현황 분석

- 오산시 민간위탁 정책적 방향 검토
- 오산시 민간위탁 대상사무 현황 분석
- 오산시 민간위탁 지침 및 관련 제도 분석

### 3) 민간위탁 사무 사례분석

- 사례조사 기준 및 대상 선정
-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감사제도 우수사례 조사
- 전국 민간위탁 기준 및 현황 검토를 통한 오산시 적용 사례 조사

### 4)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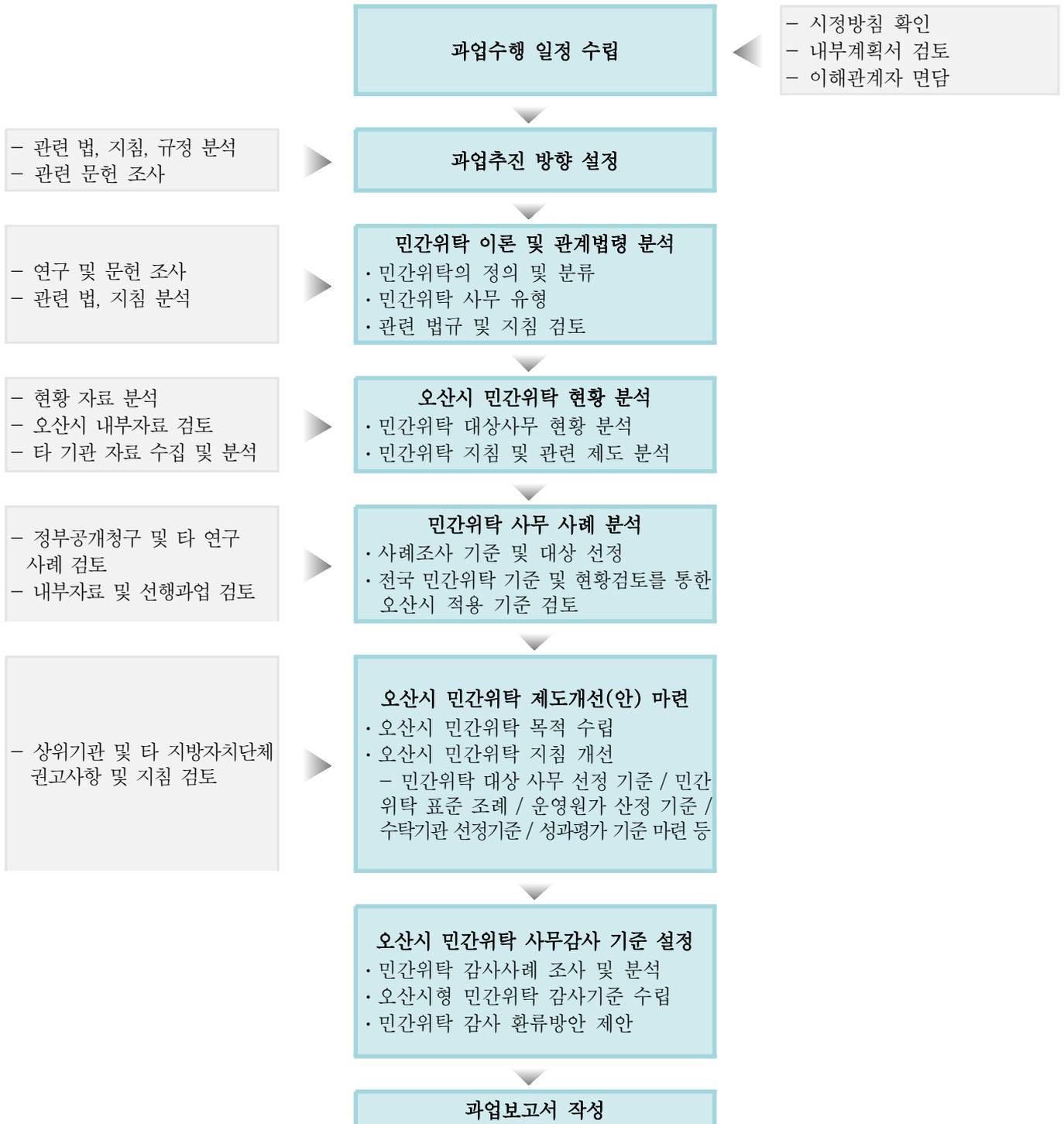
- 오산시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한 민간위탁 목적 수립
-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 개선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기준
  - 민간위탁 표준 조례, 규칙 마련
  -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기준 마련
  -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마련
  - 투명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 계약(안) 마련
  - 자율성 보장에 따른 책임성 있는 성과평가 기준 마련
  - 민간부문과 교류할 수 있는 정보교류 및 환류기준 마련
- 오산시형 민간위탁 지침 의견 수렴
-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안) 제안

### 5) 오산시 민간위탁 사무감사 기준 설정

- 민간위탁 감사사례 조사 및 분석
- 오산시형 민간위탁 감사 기준 수립
- 민간위탁 감사 환류방안 제안

### 3절 과업의 방법

■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및 감사방안 수립 연구의 수행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CHAPTER

II

# 민간위탁 이론 및 관계법령 검토



## 02 | 민간위탁 이론 및 관계법령 검토

### 1절 민간위탁의 의의 및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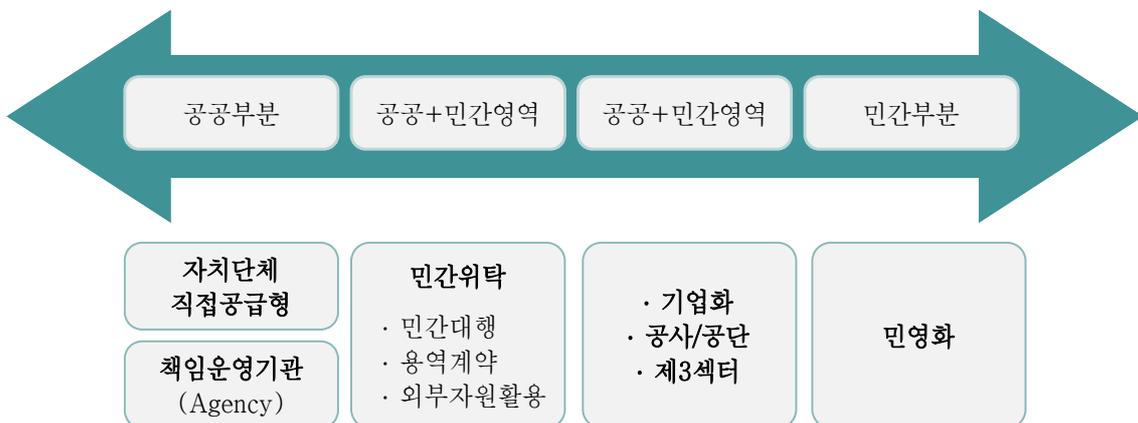
#### 1. 민간위탁의 배경과 의미

##### 1) 민간위탁의 배경

- 20세기 초 세계대전을 치루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가면서 보다 강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가진 행정국가의 원형에 대한 밑그림을 제공하였음.
- 행정국가의 등장과 함께 복지국가가 출현하면서 강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큰 정부(big government)를 지향하게 되었고, 그 후 미국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운동과 여러 선진 각국에서 추구하여 온 복지국가 모형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원동력이 되었음.
- 20세기 말에 전개된 신공공주의적 개혁은 역으로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추구하였고, 예를 들면, 영국,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영연방국들과 미국은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을 주도하면서 정부효율성과 고객만족 등을 위하여 민영화, 분권화, 탈규제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특히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민영화나 민간위탁(contracting out)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규모와 활동 범주 및 기능을 축소하고자 하였음.

##### 2) 민간위탁의 의미

- 민간위탁은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형태를 말함.
-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인 관리와 비용부담에 관한 책임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행정서비스를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sup>1)</sup>



|그림 1|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서 민간위탁의 위치

1) Aktan, 1995; Welch & Bretschneider, 1999

- 정부기능은 민간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은 물론 정부기관이나 하위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단체)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은 정부가 민간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게 특정한 서비스의 생산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됨.
- 따라서 정부는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단체로부터 공공서비스를 구매하지만,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 등에 관한 책임(accountability)은 정부에 귀착된다고 볼 수 있음. (Deakin & Walsh, 1996)
-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민영화(privatization)와 아웃소싱(outsourcing), 민자유치(private finance)와 공동생산(co-production)이 있음.
- 민영화는 공기업 매각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민영화 이후 정부가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지지 않지만 민간위탁은 정부가 위탁 이후에도 수탁기관의 서비스 공급에 대해 관리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아웃소싱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정 서비스의 일부를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민간 위탁은 행정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됨.
- 민자유치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자본의 대부분을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는 대신 민간부문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자산과 시설물을 제공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민간 위탁과 다르며, 공동생산은 공사부문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은 정부가 최종적인 비용 부담 및 관리 책임을 지면서 서비스 생산기능 만을 민간부문에 위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2. 민간위탁의 법·제도적 근거

- 민간위탁 사무의 법적 근거는 민간위탁 사무를 선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것임.
-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그 타당성이 의문시 되는 경우는 비교적 많으나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법령을 근거로 하여 구분한 민간위탁사무 분야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 1) 정부조직법(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정부조직법」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서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필요한 경우 하급 행정기관 또는 타 행정기관, 지자체에 위탁 또는 위임이 가능하며, 특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타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음.

####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 2)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제151조 사무의 위탁)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 운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 관계를 규정한 법이며, 본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사무 위임 허용 여부와 위임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1)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본 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법인·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 (2) 제151조(사무의 위탁)

- 제151조(사무의 위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제151조(사무의 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안전행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 제2장. 민간위탁 이론 및 관계법령 검토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상위법 : 지방자치법 제151조(사무의위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구 조직의 운영과 에 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정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기구를 설치할 때 사무의 위탁가능성을 고려하여, 타기관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관한 기구는 설치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존재함.

#### 제5조(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사용·수익허가,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20조(사용·수익 허가)

-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지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 또한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 제2장. 민간위탁 이론 및 관계법령 검토

###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상위법 : 정부조직법(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법은 행정사무의 위임 및 위탁사무 정의와 기준, 선정방법, 계약체결 방법과 지휘·감독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1) 제2조(정의)

- 본 법규 제2조(정의)에서는 위임과 위탁에 관한 정의와 민간위탁의 정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

#### 제2조(정의)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 (2)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본 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필요한 사무,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사무임을 규정하고 있음.

####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 형식으로 준공한 이후 사업추진방식과 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서는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음.

##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④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 2절 민간위탁 대상과 사무유형

### 1. 민간위탁의 대상

#### 1) 이론적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은 다양한 공공서비스이며, 이는 각 특성에 따라 범주화 할 수 있는데 특정 서비스는 민간위탁 방식을 사용하기 용이하고 성과가 높은 반면 일부 서비스는 그렇지 않음.
- 이에 따라 여기서는 공공서비스의 분류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민간위탁 방식이 유용한 서비스의 특징을 분석하였음.
- Lucy et al.(1977)은 사회적 기능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일상적 서비스(routine service), 보호적 서비스(protective service), 발전적 서비스(developmental service), 사회적 최저수준보장 서비스(social minimum service)로 분류하고 있음.
- 사회적 기능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범위가 달라지며, 일상적 서비스와 보호적 서비스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로 폭넓은 층에 그 혜택이 돌아가지만, 발전적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의 선호나 선택에 의해 제공되며, 사회적 최저수준보장 서비스는 특정 계층집단에게만 제공되는 차이가 존재함.
- Savas(1987)는 민간위탁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보다 유용한 분류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공서비스를 경성서비스(hard service)와 연성서비스(soft service)로 구분하였으며, 경성서비스는 쓰레기수거, 거리보수, 상수도 등과 같이 물리적이고 상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과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서비스라고 분류하였고, 연성서비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치안, 의료, 교육, 문화 등이 해당되며 성과기준이나 계약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음.
- O'Looney(1998)에 따르면, 첫째는 거래에 기반을 둔 서비스(services that are transaction based)로, 정부와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함께 지불한다는 의미로 급식이나 교통 서비스가 해당되며 정부는 서비스의 가격과 질을 함께 관리하고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둘째, 계약의 성과를 평가하기 용이한 서비스(services that can be reviewed for adequacy)로 시설물 유지보수, 거리청소서비스, 쓰레기수거서비스 등이 해당되며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기가 쉬워 계약 및 관리가 용이하고 민간위탁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로 판단하고 있음.
- 셋째, 전문적인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로 건설관련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로 그 외에 기술분야, 기획, 프로젝트 관리, 위험관리, 법고문과 같은 컨설팅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다른 유형과 달리, 전문가 자격증이나 수탁기관 자체에서 전문성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정부의 감시 부담은 적은 편임.
- 넷째, 주문형 서비스(customized services and products)로 정보체계분야의 서비스가 해당되며 이 유형의 민간위탁은 가급적 피하도록 권장되고 있음.

표 1 |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분류

학자	분류기준	서비스 유형	특성
Savas 1987	성과기준 설정의 용이성 여부	경성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상업적 서비스</li> <li>■ 쓰레기수거, 가로등 관리, 상수도 등</li> </ul>

		연성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련·인적 대상 서비스</li> <li>■ 치안, 소방, 국방, 보건, 교육, 문화 등</li> </ul>
O'Looney 1998	민간위탁 전환의 가능성	거래기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소비자가 대가 지불</li> <li>■ 수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 가능성</li> <li>■ 급식서비스, 교통서비스</li> </ul>
		결과에 대한 평가가 용이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의 성과를 조사하기 매우 쉬움</li> <li>■ 민간위탁이 가장 용이한 서비스</li> <li>■ 시설물 유지보수, 거리청소, 쓰레기수거</li> </ul>
		전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대상 서비스</li> <li>■ 서비스 질을 파악하기 어려움</li> <li>■ 건설 관련</li> </ul>
		주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이 가장 어려움</li> <li>■ 정보체계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등</li> </ul>
Johnston & Romzek 1999	계약관리의 복잡성	전통적서비스/지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관리가 쉬움 (쓰레기 수거 등)</li> </ul>
		사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관리가 어려움 (공공의료, 복지 서비스 등)</li> </ul>
Lucy et al. 1977	사회적기능	일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li> <li>■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등</li> </ul>
		보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재산 보호, 공공질서 유지</li> <li>■ 경찰, 소방, 재난통제 등</li> </ul>
		발전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육체적, 지적, 정신적 잠재력 향상</li> <li>■ 교육, 도서관, 공원, 위락시설 등</li> </ul>
		사회적 최저수준 보장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최저생활 여건 보장</li> <li>■ 공적부조, 직업훈련, 공공주택 등</li> </ul>
Sharp 1990	서비스 활동의 목적	배분적(distributive) 서비스	
		규제적(regulatory) 서비스	
ICMA 1989	지방정부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목공사 / 교통 및 설비시설 / 공공안전 / 보건 및 인적서비스 /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 지원 기능</li> </ul>
한인섭 외 2009	지방정부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 교육 / 문화예술 / 민원행정 / 복지 / 수자원 / 우편 / 의료 / 일반관리 / 재해관리 / 전자정부 / 정보기술 / 주택 / 철도 / 청소 / 통신</li> </ul>

- 이러한 유형화 외에도 김준기(1998), 이근주(2009), 김정훈 외(2009) 등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출물 측정이 간단하고, 경쟁 및 경합 가능성이 크고, 감시·감독·평가가 용이한 업무들이 민간위탁에 적합하다고 분류하고 있음.
- Brown & Potoski(2001)는 자산특화성(asset specificity)과 측정용이성(service measurability)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를 분류하고 있으며, 자산특화성은 해당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특별한 투자가 요구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체로 처음 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이 차후에도 재계약, 독점화 가능성이 높음.
- 측정용이성은 서비스의 산출물이 명확할수록 측정이 용이하고, 이에 따라 수탁기관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잘 관리·감시할 수 있으며, 측정이 어려울 경우 서비스의 질과 양을 낮춰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제2장. 민간위탁 이론 및 관계법령 검토

- 한편, 송근원·강대창(2002)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민간위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가지 - 경쟁성, 저항성, 전문성, 측정 가능성, 기관장의 추진 의지, 비용 효율성, 행정 체계의 적절성, 서비스 중단 시 파급효과 - 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유형화하고자 하였음.

표 2 | 민간위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설명	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쟁성	■ 위탁에 응찰한 경쟁 업체의 수, 업체의 참여지역 제한, 부정적 수탁자의 신속한 교체 정도	+
비용 절감 가능성	■ 위탁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의 절감 정도	+
성과 측정 가능성	■ 서비스의 위탁 성과를 구체적·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정도	+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 위탁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시민의 불만 제기와 언론 등의 여론화 정도	+
생산의 전문 기술적 복잡성	■ 서비스 생산에 장기간 측정된 경험과 기술적 전문성, 서비스 전달 과정의 단계적 절차 정도	-
조직 내외의 저항성	■ 기존 직원, 관련 단체, 기존 업체의 반대 정도	+
기관장의 의지	■ 기관장의 민간 위탁 추진 의지, 실천력	+
행정 체계의 적절성	■ 위탁 비용의 계산 체계, 지도·감독 및 성과 평가 체계의 구비 정도	+

자료 : 송근원 외, 2003.

- 해당 연구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의 내용이 같더라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여건에 따라 위탁 여부가 달라져야 함.
- 이에 따라 위탁여건이 가장 좋은 경우는 경쟁성은 높고 조직 내외의 저항성은 낮으며, 측정 가능성 및 전문 기술성, 서비스 중단 시 파급효과, 기관장의 위탁 의지, 비용 효율성이 모두 높게 평가되고, 행정 지원 체제의 지도감독 역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로서 이론상 가장 이상적으로 민간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공공 서비스로 볼 수 있음.
- 한편 지자체 민간위탁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는 환경관련 서비스와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가 대체적으로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관련 서비스의 여건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검토되었음.

2) 법·제도적 검토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위탁사무에 대한 계약관리 및 성과점검 등 사후관리의 소홀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박중훈, 2000; 황혜신, 2005)
- 위탁에 있어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공익과 관련되는 독자적인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제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는 단순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민간에 맡겨 처리하더라도 객관성이 확보되는 경제적 능률성이 중시되는 사무, 그리고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 사무,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등을 의미함.
- 즉, 우리나라 민간위탁의 기본법령에 따르면 위탁 대상이 되는 공공 서비스를 기능 및 편익의 속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한인섭(2007)은 중앙부처의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평가/공시, 정보관리, 검사/승인, 시험관리, 보상/지원, 신고/등록, 심의/추천, 제작/공급, 확인/조사, 교육/훈련 등 10가지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다시 편익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면 현재 우리나라 중앙부처에서 법령에 따라 위탁되고 있는 사무의 유형과 성격을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

표 3 | 편익의 속성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 분류

편익의 속성	유형별 위탁 사무
<b>공공성   효율성</b> (정부에 귀속된 특성화된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용역/시설 등에 대한 사용/성능/규제/품질/성과 등의 검사, 검정, 인증 및 승인업무</li> <li>■ 사업체/사무소/시설업/자격면허/경력 등에 대한 신고수리와 사무소 등의 개설, 지정, 변경, 취소 및 등록업무</li> <li>■ 중소기업/국가유공자/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고용촉진/재활사업/개발사업의 보상 및 지원업무</li> <li>■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공공적 성격의 기금을 조성/운영/관리업무</li> </ul>
<b>전문성</b>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실적/물질/시설/기술/통계 등의 사실 확인 및 조사업무</li> <li>■ 연구사업/시공기술능력/사업능력의 평가 및 공시업무</li> <li>■ 수출입/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와 추천기능</li> </ul>
<b>공공성   효율성</b> (민간의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 내부 또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시설물 관리/사업관리/물품/용역 서비스의 제작 및 공급업무</li> <li>■ 각종 자격/면허시험의 대행업무</li> <li>■ 각종 보수교육/실무수습/연수 등 교육훈련 업무</li> <li>■ 통계/정보관리에 필요한 H/W와 S/W의 관리업무</li> </ul>

자료 : 한인섭, 2007.

### 3) 유사개념과 구분

-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정의는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민간위탁이 시행되기 전에 정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법률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민간위탁과 비슷한 법률적 용어들과 의미상 혼동을 줄 수 있음.
- 민간위탁과 관련된 용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용어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위탁

- 위탁(委託, Contract out)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하부행정기관 등 하위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기관에게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행정사무를 수탁자의 명의로 책임 하에 수행하고, 법률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자에 귀속됨.
- 이러한 점에서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이 수반되는 권력적 사무 또는 재량적인 가치판단을 요하는 사무 등은 위탁의 대상으로 선정하기 곤란하며, 보다 세부적으로 위탁과 민간위탁을 구분하자면 전자는 수탁기관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고 후자는 사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2021.1) 민간위탁금과 민간대행사업비의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가. 민간위탁금(307-05)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 성격의 사업비로써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을 말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이며, 그리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도 민간위탁금에 포함됨.

#### 나. 민간대행사업비(402-03)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의 민간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를 말함.
- 단,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만 해당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 기관에 지급하는 교부금도 이에 해당됨.

#### (2) 보조사업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하는 사업을 말함.<sup>2)</sup>

2)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오산시가 시행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과의 협약을 통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말함.

(3) 용역

-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함.
- 용역이 주로 단순 지원사무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임.
- 또한 민간위탁은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이거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반면에 용역은 단순 지원사무이거나 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체 과정이나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민간위탁이 적절하고,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의 부수적인 사무(일부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용역방식이 적절함.
-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급의 파급효과가 크고 공익성이 큰 경우에는 용역보다는 민간위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4)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익활동을 수행하는 것(「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말함.
- 민간위탁도 시설운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와 유사하나,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를 받은 민간이 사적재를 공급하는 것에 비해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함.

(5) 대행

-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 권한을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되 권한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경우와 대행기관이 그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음.
- 대행은 권한대행과 같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방식에 관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과 행정기관의 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며 「지방공기업법」 제71조<sup>3)</sup>와 개별법령에서 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민간대행은 민간위탁<sup>4)</sup>과는 개념상의 책임 소재 여부에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리·운영 체계가 유사한 경우에는 민간위탁과 구분 실익은 크지 않음.

3)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한다.

(6) 공공위탁

-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공공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는 공공위탁(제2항)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민간위탁(제3항)을 구분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경쟁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면 민간위탁이, 경쟁원리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공공성이 매우 커서 경쟁 원리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위탁이 적절함.
- 다만, 양 자는 권한부여 및 책임소재가 동일하고 현실적으로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관리운영체계가 유사한 경우에는 구분 실익은 크지 않음.

(7) 위임

- 위임(委任, Mandate)은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며, 행정 권한이 위임되면 그 권한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사실상 이관됨.
- 상기에서 언급한 위탁과 위임의 의미적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이를 비교한 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 | 위임과 위탁의 비교

유사점	차이점	
	위임	위탁
행정권한을 본래의 권한자에게 그대로 유보한 상태에서 수양수탁 받은 자가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	하부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을 대상 (주로 상하관계 간에서 형성)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사인을 대상 (주로 수평관계에서 형성)

자료: 행정안전부(2003).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행정안전부, p.5.

(8) 대부계약

-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는 차이가 있음.

(9) 사무의 전결 및 대결

- 전결(專決)은 행정기관의 장이 사무의 중요도에 따라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위임하여 사실상 대리행사 하는 경우임.
- 대결(代決)은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일시 부재시에 보조기관이 그에 갈음하여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결재하는 것이며, 즉, 두 가지 경우 모두 공문서의 대외적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표시됨.<sup>5)</sup>

5) 전결과 대결은 행정관청의 권한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 위탁과 구별된다.

## (10) 이양

- 위임 및 위탁이 권한을 본래의 권한자에게 유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에 비하여 이양(移讓, Transfer)은 권한 자체가 제3자에게 변경되는 것을 말함.
- 예를 들면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해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권한을 이관하는 경우가 있음.

## (11) 아웃소싱(외부조달 또는 외부자원 활용)

- 아웃소싱(Outsourcing)은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무를 행정기관이 수행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수요자적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임.
- 원래 아웃소싱 개념은 민간분야에서 사용되던 개념으로 특정기관 또는 조직이 내부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충당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수요자적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형태는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조달물품에 대한 구입을 들 수 있음.

## (12) 민영화

-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민영화(民營化, Privatization)의 개념은 민영화를 매우 폭넓게 정의하는 경우임.
- 광의의 의미에서 민영화는 재화,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모든 활동을 총칭하고 있음.
-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민영화는 국가의 정치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 특정되는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등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민간기업이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며,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국유재산의 매각이 협의의 민영화로 이해되고 있고, 정부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미국에서는 민간위탁이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
- 민영화의 필요성은 정부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어 작은 정부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과 민간부분의 자본이나 인력이 유입되어 민간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 정부의 비용 절감으로 효율성이 강화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에 반해 정부와 민간업체 사이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고 민간 업체의 독점화, 가격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 국내 민영화가 된 대표적 기업으로는 포스코(포항제철), KT(한국전기통신공사), KT&G(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이 있음.

4) 위탁 여부의 결정 - 적정성 분석

- 특정 사무(공공서비스)가 민간위탁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개별적 분석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앞서 살펴본 유사 제도, 개념과 해당 사무를 단계적으로 비교하여 보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함.

표 5 | 민간위탁 사무와 유사개념의 단계적 구분기준

단계	판단기준	분석	구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장의 사무인가?</li> <li>■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활동지원 → 보조사업</li> <li>■ 기관장 사무 → ② 검토</li> </ul>	보조사업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의 사적재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인가? 행정/ 공공기관의 공공재 공급을 위한 것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재 공급허가 → 사용수익허가</li> <li>■ 공공재 공급 → ③ 검토</li> </ul>	사용수익허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의 전문성이 요청되는 사무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 → 용역</li> <li>■ YES → ④ 검토</li> </ul>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공급 과정의 전체적 사무인가? 부수적 사무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수적 사무 → 용역</li> <li>■ 전체적 사무 → ④ 검토</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한 행사의 법률적 효과가 행정/ 공공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는가? 위탁기관에 귀속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기관 귀속 → ⑤ 검토</li> <li>■ 행정기관 귀속 → 대행, 위탁</li> </ul>	관리 대행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기관 선정시 경쟁 원리가 적용 가능한가? (위탁기관이 공공단체 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원리 적용 → 민간위탁(계약위탁)</li> <li>■ 경쟁불가(공공단체, 비영리기관) → 공공위탁 → 법정위탁, 지정, 고시위탁</li> </ul>	민간위탁 공공위탁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이 지속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무인지? 관계 법령상 공공기관 고유사무로 규정되었는지? 공공기관이 사무수행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ES → 고유사무</li> <li>■ NO → 공공위탁</li> </ul>	고유사무 공공위탁

자료 : 서울연구원, 2014.

- 송근원·강대창(2002) 등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민간위탁방식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용이하고 성과도 높은 여건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그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측면에서는 운영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이 기준이 됨.
- 민간위탁을 통하여 행정/공공기관의 독점 서비스에 경쟁이 도입됨으로써 생산측면에서 인력과 자원 등

비효율성이 감소할 것을 기대하는 것임.

- 시민 측면에서는 공공성의 기준, 즉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를 다원화함으로써 선택권이 확대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게 됨.

표 6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기준

구 분		분 석
공공성	공공서비스 특성	① 서비스 중요성 ② 서비스 수혜대상 ③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④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효율성	민간위탁 효과	⑤ 민간의 전문성 활용 ⑥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 조건	⑦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⑧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 여건 ⑨ 관리운영의 투명성 (지대추구 방지)

자료 : 서울연구원, 2014.

## 2. 민간위탁 사무 유형

### 1) 서비스 유형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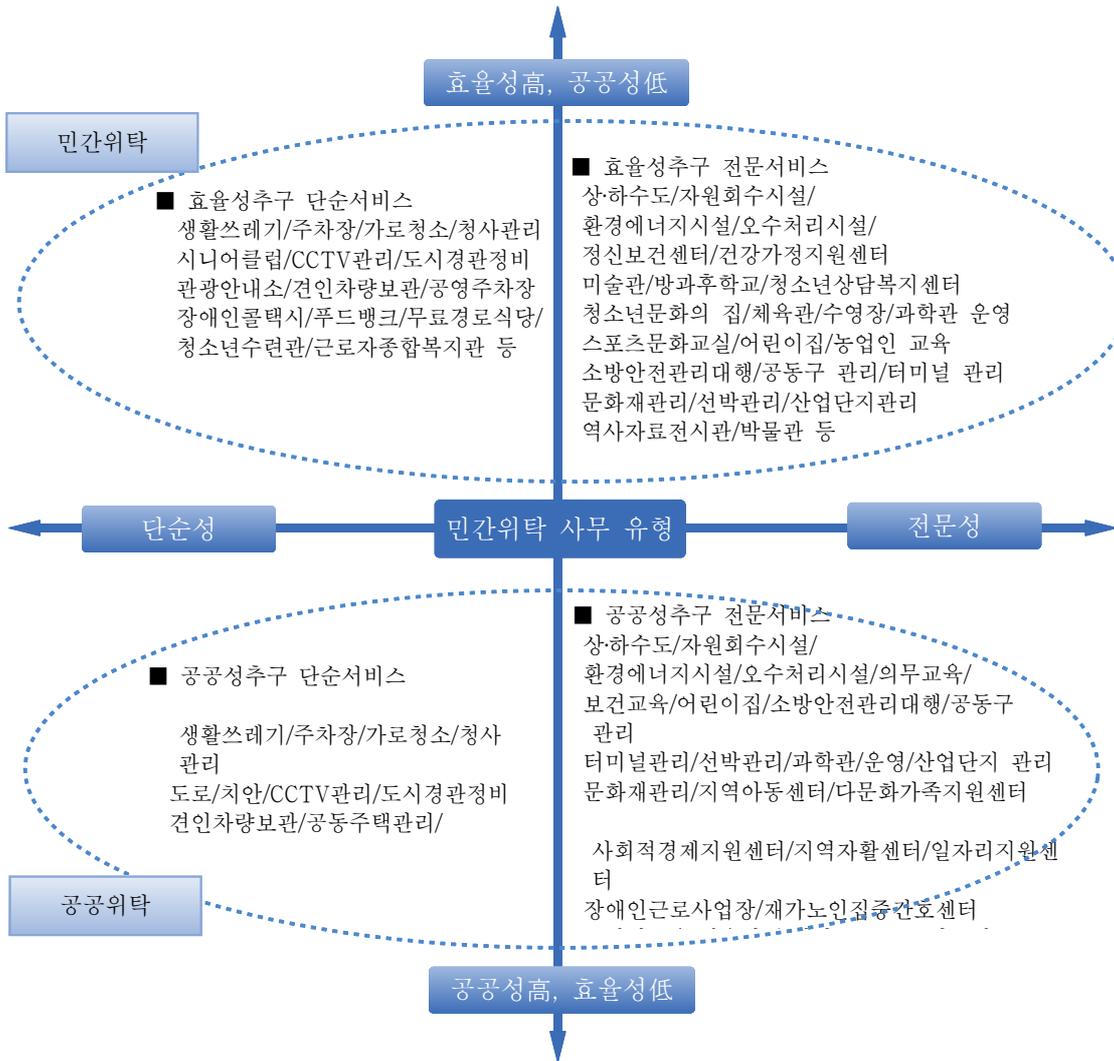
-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 증대되는 공공서비스 주민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즉, 효율성이 요구되면서 공공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민간위탁으로, 효율성도 요구되나 공공성측면이 강한 서비스는 공공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을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는 연구자에 따라 또는 정책 입안자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임.
-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 및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밑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떤 공공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분석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조사한「2019년 전국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과 「2020년 민간위탁 현황분석 I 전국지방자치단체」자료를 기준으로 민간위탁 사무유형의 분류를 시도하였음.
- 이러한 민간위탁 사무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효율성과 공공성, 단순성과 전문성 기준으로 효율성추구 단순서비스, 효율성추구 전문서비스, 공공성추구 단순서비스, 공공성추구 전문서비스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이런 네 가지 서비스유형으로 구분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성과 공공성의 차원에서 구분하였음.
  - 송근원·강대창(2002) 등 선행 연구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그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처럼 공공성과 효율성의 문제는 민간위탁 사무에서 시장 경쟁 논리의 효율성이나, 공익적 가치의 공공성이나에 대한 가치에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효율성은 민간위탁 사무를 결정할 때에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경쟁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의 제고가 최우선 가치이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측면에서는 운영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과 수익성 제고가 기준이 되는 것임.
  - 즉, 민간위탁을 통하여 행정/공공기관의 독점 서비스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측면에서 인력과 자원 등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 공공성은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상 공급의 필요성, 중요성, 수혜대상, 지속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시장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사회적 가치를 강화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말함.
- 둘째, 공공서비스를 단순성과 전문성의 차원에서 구분하였다.
  - 공공서비스를 단순성과 전문성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투입 인력의 전문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투입 인력의 전문성'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음.

표 71 공공서비스 전문성 판단 기준

순번	전문성 판단 기준	비고
1	■ 공공기관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격 기준 및 등급	
2	■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수준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수준의 학위 수준	

- ①의 기준인 공공기관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격 기준 및 등급은 예를 들어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기술인력 기술자격기준의 사례와 같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한 경우임.
- ②의 기준인 해당 분야 관련 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공공서비스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수준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
- 상기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공공서비스사무는 단순성으로 분류하여 판단하였음.

■ 상기 기준에 따라 검토된 민간위탁 유형은 다음과 같음.



|그림 2| 민간위탁 사무 유형 분류표

- 이러한 민간위탁 사무 중 1)효율성추구 단순서비스, 2)효율성추구 전문서비스는 대부분 효율성을 강조한 '민간위탁' 사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3)공공성추구 단순서비스, 4)공공성추구 전문서비스는 공공성을 강조한 업무로 공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민간위탁 사무는 해당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및 운영방침 또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민간위탁 또는 공공위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4개 영역에 중복 운영되고 있음.

2) 위탁 형태에 따른 분류

(1) 예산지원형

가. 시설형 위탁

■ 오산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예) 청소년수련관, 각종 센터 등

■ 오산시에 위탁한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 수입으로 하는 협약체결이 가능함.(인센티브 지급)

나. 사무형 위탁

■ 시설의 운영이 아닌 일반사무를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예)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영 등

(2) 수익창출형

■ 오산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오산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함.

- 기능보강과 같이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

- 메르스 사태, 일본 원전사고,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 근거 확보 시 지원 가능

■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시설위탁이 수반되므로 인센티브 지급과 근거법령 등은 시설형 위탁과 동일하게 적용됨.

3) 법령 및 연구문헌에 따른 분류

(1) 법적 근거

- 각 지자체는 지자체별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아래와 같이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범위, 사무 유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서울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 서울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도서관,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예술(산업)·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공원시설등주민편의시설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제5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노인·장애인·노숙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산업지원, 교통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국제회의시설, 문화·예술·영상·관광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근로자복지, 직업훈련,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의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9. 그 밖에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무명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 2) 민간위탁 유형별 분류

- 민간위탁 사무 유형화와 관련해서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들이 있는데, 전자는 '민간위탁 사무 유형별 분류'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법령상 사무 분류'에 관한 것임.
- 두 연구 모두 나름 큰 기여를 하는 것들이었지만, 더 나은 민간위탁 사무유형화를 위해서 이들을 발전적으로 종합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는 2009년 연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종적으로 제안했던 '지방자치단체 사무분류'를 각각 '대분류, 중분류'로 활용하였으며, 2008년 연구에서 제안했던 '민간위탁 사무유형들'은 '소분류'를 만드는 데 단지 참고만 하였음.
- '소분류'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 목록을 바탕으로 출판한 「2019년 전국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을 통하여 내용상 공통점을 중심으로 묶어주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준을 바탕으로, 2020년 통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보완하여 진행하였다.
- 이때 선행연구들이 제시해온 민간위탁 사무분류의 중요한 시준점들 즉, 시설-용역(시설적 사무인가, 용역적 사무인가), 복잡-단순(복합/전문적 사무인가, 단순/비전문적 사무인가), 규제-비규제(규제/권력적 사무인가, 비규제/비권력적 사무인가), 상시-일시(상시적 사무인가, 일시적 사무인가) 등을 중요한 분류 기준으로 염두에 두었음.

표 8 | 지방행정 민간위탁 유형별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일반공공행정	입법/선거, 지방행정/재정 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건물(청사 등 유지 관리)
		민원 및 콜센터 운영
		유기동물관리
		미디어 관련 제작
		CCTV 및 무인시스템 관련 운영
		기타
2.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법무	재난방재
		법무
3. 교육	유아/초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평생학습 시설 운영
		평생학습 사업
		기술교육(직업훈련)
		교육 관련 기관 운영
		청소년 학습시설 운영
		기타
4.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관광일반	문화재 관리
		문화예술시설관리
		체육시설관리
		체육진흥사업
		관광진흥사업
		향토사 편찬 사업
		기타
5. 환경보호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	상하수도 시설 운영
		하수처리 시설 운영
		매립 시설 운영
		자원회수 시설 운영
		폐기물 처리, 자동집하시설 운영
		재활용품 운반 및 처리
		환경 관련 시설 운영
		환경보호 사업
		기타

제2장. 민간위탁 이론 및 관계법령 검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6.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노인 시설 운영 장애인 시설 운영 보육시설 운영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여성 복지시설 운영 보훈시설 운영 다문화 복지시설 운영 일반 사회복지 시설 운영 공원시설 운영 노인 복지 사업 장애인 복지 사업 보육 복지 사업 청소년 복지 사업 여성 복지 사업 다문화 복지 사업 일반 복지 사업 종합 사회복지센터 운영
7.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신체 진료시설 운영 정신 진료시설 운영 예방시설 운영 보건 교육 사업 건강조사 신체 진료 사업 운영 기타 산모 신생아 건강 관련 정신 진료 사업 운영
8.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텃밭 보급 도시농업 교육 기타
9. 수송, 교통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	주차장 관리 도로(국도)유지 보수 관리 터미널 관리 선박 관리 차량 관리 공동구 기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0. 국토 지역개발	수자원, 지역/도시, 산업단지	설계, 감리
		산업단지 관리
		공공시설 설비 공사
		공동주택 관리
		지역활성화 사업
		도시 미관 개선 사업
		기타
11. 과학기술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에너지 공급사업(재생에너지)
		과학기술 관련 기관 운영
		기타
12. 산업, 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투자유치, 상업진흥/고도화, 상업/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시설운영
		사회적 경제 시설 운영
		창업 관련 센터운영
		기타
13. 외교, 국방, 통일	외교, 국방, 통일	해외교류
		기타

주: 대분류와 중분류는 2009년 지방행정연구원이 제안한 공공사무를 근간으로 구성하고, 소분류는 2008년 지방행정연구원의 사무분류를 2020년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전국 민간위탁 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보완 후 재구성함



CHAPTER

III

# 민간위탁 현황 분석



## 03 | 민간위탁 현황 분석

### 1절 민간위탁 운영 현황 분석

#### 1. 민간위탁 운영 현황 분석 개요

-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 대한 전국단위 조사를 위하여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시행하였음.
- 전국 245개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남 창원시가 227개로 가장 많은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청북도가 198개, 경기 성남시가 157개로 조사되었음.
- 단, 전국단위 조사 및 정보공개청구 응답에 한계성으로 인하여, 유효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산출하였음.
- 사업별 평균예산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의 경우 63억 753만원으로 가장 크고, 그 뒤를 이어 경상남도가 45억 2529만원, 전북 순창군이 32억 336만원으로 조사되었음.
-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함에 따른 위탁 근거를 묻는 질문에 3,240건(32%)는 법률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고, 2,438건(25%)은 조례에 직접 규정, 1,750건(18%)가 국고보조 재원, 2194건(23%)는 용도 지정 기부금, 기타 등 복수의 근거에 의한다고 응답하였음.
- 가장 많이 사용한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기타로 3,755건(39%)의 사업이 여러 기타방법으로 선정되었고,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경우가 3,140건(33%)으로, 전체 계약의 절반 이상이 기타의 방법과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음으로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원가산정의 방법을 묻는 질문에 5,129건(53%)은 원가산정을 내부에서 한다고 대답하였고, 1,683건(17%)은 외부용역에 맡긴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원가정산의 방법은 5,888건(61%)이 내부에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915건(9%)이 외부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답하였음.
-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성과 평가 유무에 대한 물음은 4,052건(42%)은 성과 평가를 한다고 대답하였고, 3,486건(36%)이 성과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1,570건(16%)은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고 답하였음.

## 2. 전국요약값

- 전국의 민간위탁 사업 수는 총 9,652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국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은 5조 426억, 사업별 평균예산은 5억 2천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은 시단위가 1조 6,56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광역시가 2,180억원으로 가장 적었음.
- 사업별 평균 예산액은 도단위가 15억 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단위가 2억 8600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 민간위탁 사업 수행의 법적근거는 법적기준이 3,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례에 직접 규정이 2,438건, 국가보조 재원이 1,750건으로 조사되었음.
- 세부적인 전국통계 요약은 다음과 같음.

표 9 | 전국 민간위탁 현황 요약

단위: 백만원, 건

구분	A. 사업 수	B. 사업 총예산	C. 사업별 평균예산	D. 민간위탁 법적근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국	9,652	5,042,669	522	32,40	1,833	16	2,648	258	1,926	30
특·광역시	289	213,799	739	109	26	2	114	5	21	12
도	716	1,106,407	1,545	126	60	1	255	21	248	5
시	3,161	1,656,963	524	1,132	604	1	912	80	723	9
군	2,442	695,486	290	700	619	8	696	56	362	-
자치구	3,044	1,342,511	441	1,173	524	4	671	96	572	4

주. A : 구분 별 총 민간위탁 사업 수를 의미함

B : 구분 별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을 의미함

C : 민간위탁 사업 당 평균 예산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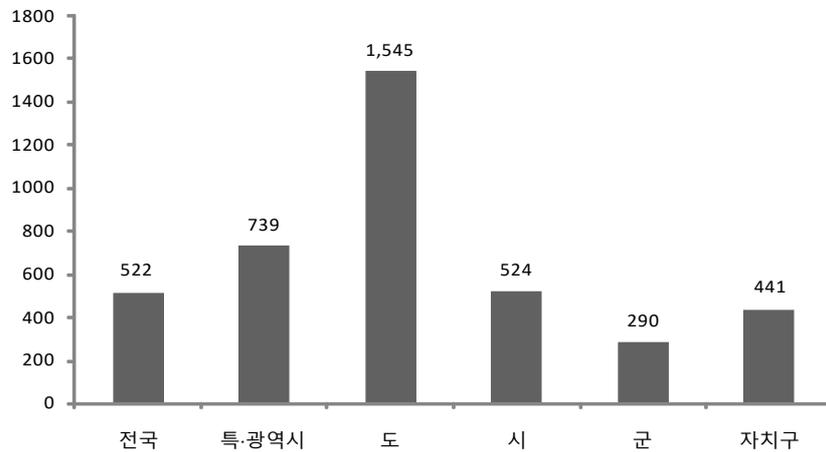
D : 민간위탁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번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① 법적기준 ② 국가보조 ③ 용도 지정 기부금 ④ 조례에 규정 ⑤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⑥ 기타 ⑦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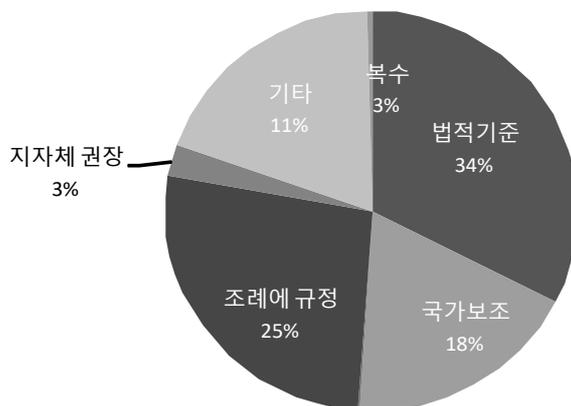
주. 무응답과 해당없음은 기타에 포함하여 합산함

그림 3 | 전국 민간위탁 사업수(전국, 건)

|그림 4| 전국 민간위탁 사업예산(전국, 백만원)



|그림 5| 전국 민간위탁 사업별 평균 사업비(전국, 백만원)



|그림 6| 전국 민간위탁 사업 수행의 법적근거(전국,%)

### 제3장. 민간위탁 현황 분석

- 민간위탁 사업의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전국적으로 기타가 3,7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계약 3,140건, 협상에 의한 계약은 620건으로 나타났다.
- 그 외, 적격심사 낙찰제는 1044건, 최저가 낙찰제는 291건, 2단계 입찰은 42건, 규격가격분리입찰은 4건이었으며 무응답을 포함한 해당되지 않은 답변은 747건으로 나타났다..

표 10 | 전국 민간위탁 낙찰자 선정방법

단위: 건

구분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	협상계약	최저가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입찰	수의계약	기타	무응답
전국	1,044	620	291	42	4	3,140	3,755	747
특·광역시	27	25	3	-	-	38	190	6
도	40	52	14	-	-	175	217	217
시	452	225	127	13	2	1,046	1,148	145
군	167	180	56	10	2	731	1,074	219
자치구	358	138	91	19	-	1,149	1,126	160

주. 해당없음은 무응답에 포함하여 합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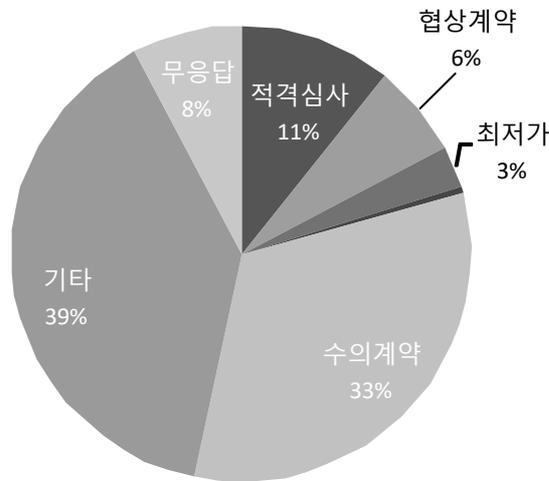


그림 7 | 전국 민간위탁 낙찰자 선정방법(전국, 건)

-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에 대하여 내부산정은 전국 5,129건으로 나타났고, 1,683건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있다고 답하였음.
- 다음으로 민간위탁사업의 원가정산의 방법은 내부정산이 5,888건이고, 외부정산이 915건이었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성과평가 실시여부 대한 질문에는 4,052건이 실시한다고 답했고, 3,486건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1,570건은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고 답하였음.

표 11 | 전국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기준 및 서비스 평가 실시 여부

단위: 건

구분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민간위탁 원가정산 방법				성과 평가 실시 여부		
	내부	외부	내외부	없음	내부	외부	내외부	없음	실시	미실시	향후 추진
전국	5,129	1,683	1,449	1,391	5,888	915	1,737	1,111	4,052	3,486	2,113
특광역시	115	14	29	131	118	10	40	121	193	61	35
도	405	28	52	230	440	12	60	203	235	145	335
시	1,748	575	443	395	2,126	279	519	237	1,435	1,116	610
군	1,244	526	338	334	1,426	346	404	265	884	854	704
자치구	1,616	540	587	301	1,777	268	714	285	1,305	1,309	429

주. 원가산정/원가정산 방법의 무응답은 없음으로 포함하여 합산함

주. 성과 평가 실시 여부의 무응답, 없음은 향후 추진에 포함하여 합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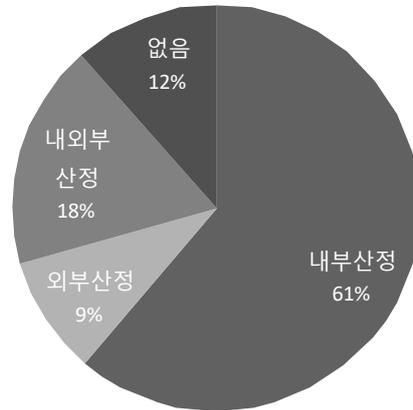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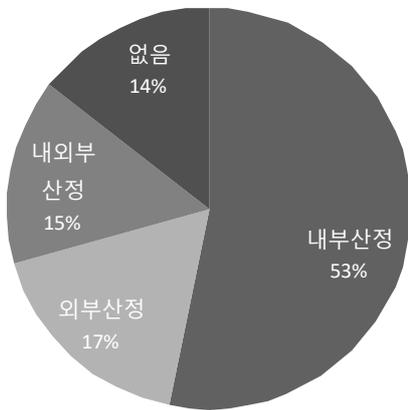


그림 8 |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전국, %) | 그림 9 | 민간위탁 원가정산 방법(전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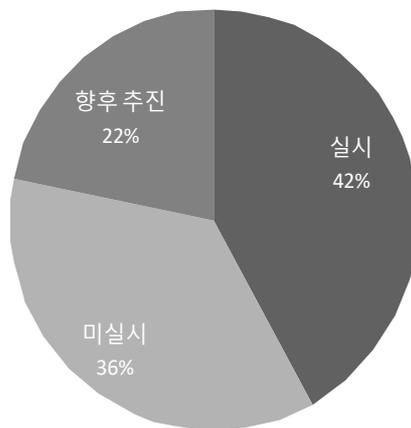


그림 10 | 서비스(성과) 평가 실시 여부(전국, %)

3. 특·광역시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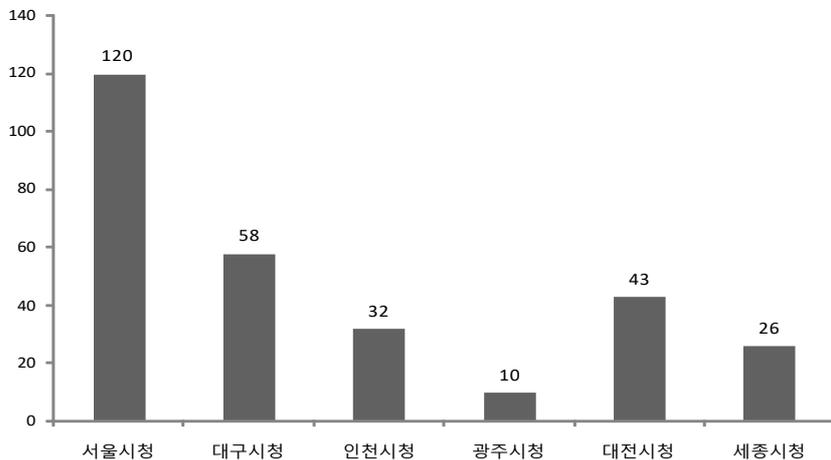
- 특·광역시의 민간위탁 사업 수는 총 289개로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은 2,137억원, 사업별 평균예산은 7억 3천9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은 인천광역시청이 741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광역시가 33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사업별 평균 예산액 또한 인천광역시청이 23억 1,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광역시가 3억 3천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 민간위탁 사업 수행의 법적근거는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적기준 109건으로 나타났음.
- 세부적인 특·광역시 통계 요약은 다음과 같음.

[표 12] 특·광역시 민간위탁 현황(사업수, 예산,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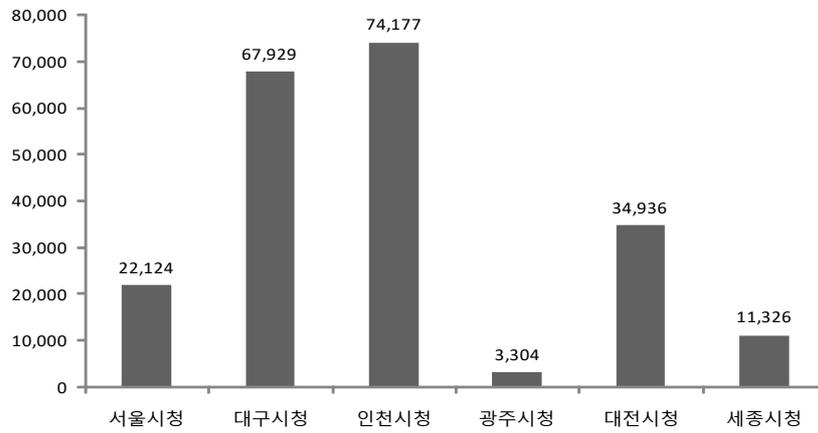
단위: 건, 백만원

구분	A. 사업 수	B. 사업 총예산	C. 사업별 평균예산	D. 민간위탁 법적근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289	213,799	739	109	26	2	114	5	21	12
서울특별시청	120	22,124	184	82	-	-	38	-	-	-
부산광역시청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대구광역시청	58	67,929	1,171	25	8	-	28	-	11	4
인천광역시청	32	74,177	2,318	-	5	-	12	3	4	2
광주광역시청	10	3,304	330	-	3	-	5	-	1	1
대전광역시청	43	34,936	812	-	7	2	18	2	1	1
울산광역시청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세종특별자치시청	26	11,326	435	2	3	-	13	-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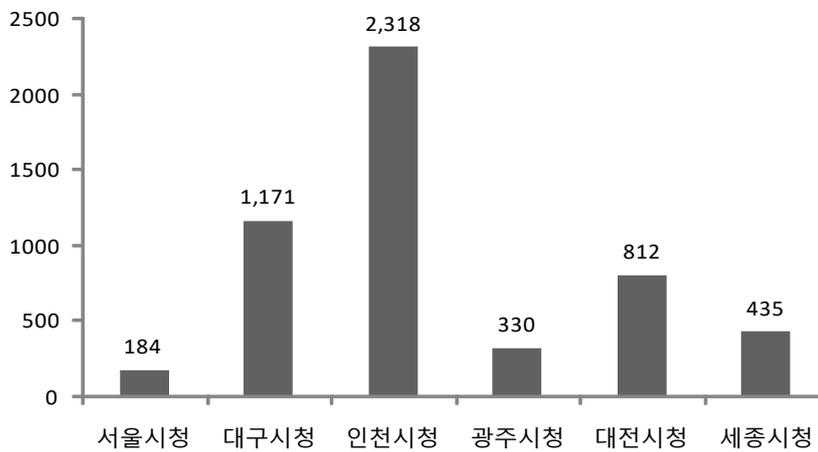
주. A : 구분 별 총 민간위탁 사업 수를 의미함  
 B : 구분 별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을 의미함  
 C : 민간위탁 사업 당 평균 예산을 의미함  
 D : 민간위탁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번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① 법적기준 ② 국가보조 ③ 용도 지정 기부금 ④ 조례에 규정 ⑤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⑥ 기타 ⑦ 복수응답  
 주. 무응답과 해당없음은 기타에 포함하여 합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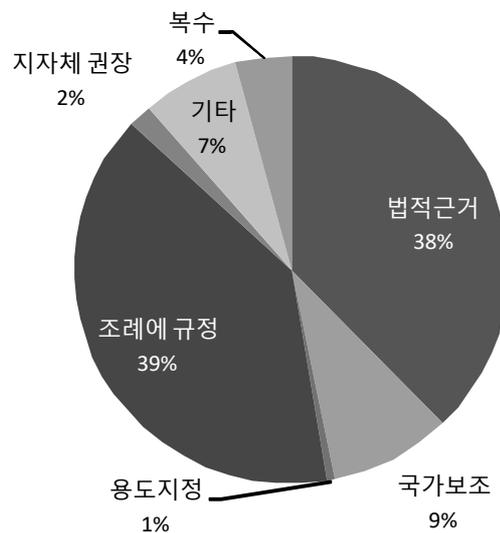
[그림 11] 민간위탁 사업수(특·광역시, 건)



[그림 12] 사업별 총사업비(특·광역시,백만원)



[그림 13] 민간위탁 평균 민간위탁 사업비(특·광역시,백만원)



[그림 14] 민간위탁 사업수행 법적근거(특·광역시,%)

### 제3장. 민간위탁 현황 분석

- 특·광역시의 민간위탁 사업의 낙찰자 선정방법은 기타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계약 38건, 협상에 의한 계약은 25건으로 나타났음.
- 그 외, 적격심사는 8건이었으며, 최저가낙찰제는 3건, 해당없음을 포함한 무응답은 6건으로 나타났음.

표 13 | 특·광역시 민간위탁 낙찰자 선정방법

단위: 건

구분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	협상계약	최저가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입찰	수의계약	기타	무응답
합계	27	25	3	-	-	38	190	6
서울특별시청	3	4	-	-	-	-	113	-
부산광역시청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대구광역시청	12	2	-	-	-	15	24	5
인천광역시청	2	7	2	-	-	4	16	1
광주광역시청	1	2	-	-	-	4	3	-
대전광역시청	6	7	1	-	-	4	30	-
울산광역시청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세종특별자치시청	3	8	-	-	-	11	4	-

주. 해당없음은 무응답에 포함하여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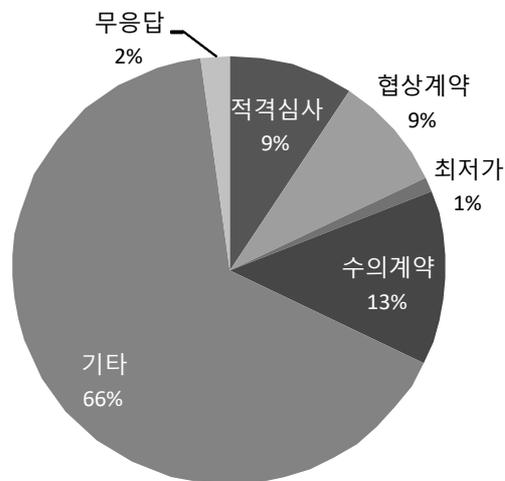


그림 15 | 낙찰자 선정방법(특·광역시,%)

- 특·광역시는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에 대하여 438건이 내부 산정이라 답하였고, 123건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있다고 답하였음.
- 다음으로 민간위탁사업의 원가산정의 기준이 있다고 답한 사업은 420건이고, 기준이 없다고 답한 사업은 562건이었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성과평가 실시여부 대한 질문에는 325건이 실시한다고 답했고, 577건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80건은 향후 평가 추진계획이 있다고 답했음.

표 14 | 특·광역시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기준 및 서비스 평가 실시 여부

단위: 건

구분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민간위탁 원가정산 방법				성과 평가 실시 여부		
	내부	외부	내외부	없음	내부	외부	내외부	없음	실시	미실시	향후 추진
합계	115	14	29	131	118	10	40	121	193	61	35
서울특별시청	-	-	-	120	-	-	-	120	120	-	-
부산광역시청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대구광역시청	40	5	12	1	42	3	12	1	28	26	4
인천광역시청	29	1	-	2	28	1	3	-	17	8	7
광주광역시청	5	1	4	-	5	4	1	-	3	3	4
대전광역시청	29	0	7	7	21	2	20	-	19	18	6
울산광역시청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세종특별자치시청	12	7	6	1	22	-	4	-	6	6	14

주. 원가산정/원가정산 방법의 무응답은 없음으로 포함하여 합산함

주. 성과 평가 실시 여부의 무응답, 없음은 향후 추진에 포함하여 합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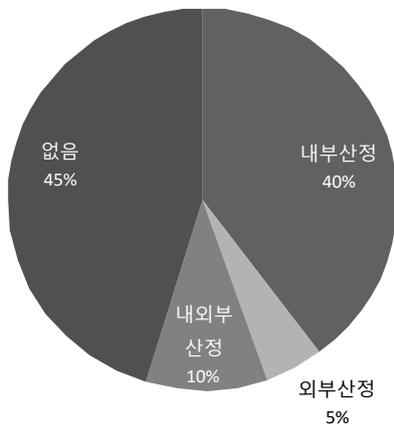


그림 16 | 원가산정 방법(특·광역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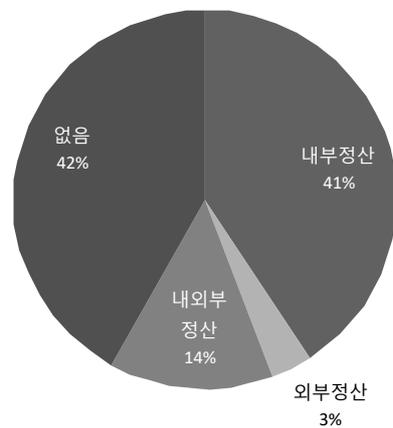


그림 17 | 원가정산 방법(특·광역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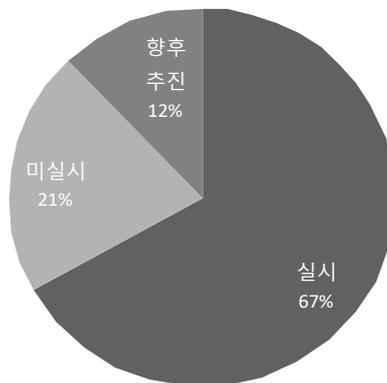


그림 18 | 서비스(성과)평가 실시 여부(특·광역시, %)

4. 도 단위

- 도단위의 민간위탁 사업 수는 총 716개로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은 1조 1064억원, 사업별 평균예산은 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은 경상남도청이 495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북도청이 252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사업별 평균 예산액은 경상북도청이 63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북도청이 1억 2,700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 민간위탁 사업 수행의 법적근거는 조례에 직접규정이 2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248건, 법적기준이 126건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인 도 단위 통계 요약은 다음과 같음.

표 15 | 도단위 민간위탁 현황(사업수, 예산, 법적근거)

단위: 건, 백만원

구분	A. 사업 수	B. 사업 총예산	C. 사업별 평균예산	D. 민간위탁 법적근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716	1,106,407	1,545	126	60	1	255	21	248	5
경기도청	114	49,384	433	41	8	1	47	4	9	4
강원도청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충청북도	198	25,288	127	-	-	-	-	-	-	-
충청남도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전라북도	42	28,872	687	10	3	-	26	3	-	-
전라남도	53	19,009	358	-	-	-	53	-	-	-
경상북도	74	467,547	6,318	17	4	-	28	5	19	1
경상남도	110	495,693	4,506	28	30	-	43	7	2	-
제주도청	124	32,041	258	30	15	-	58	2	20	-

주. A : 구분 별 총 민간위탁 사업 수를 의미함  
 B : 구분 별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을 의미함  
 C : 민간위탁 사업 당 평균 예산을 의미함  
 D : 민간위탁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번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① 법적기준 ② 국가보조 ③ 용도 지정 기부금 ④ 조례에 규정 ⑤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⑥ 기타 ⑦ 복수응답  
 주. 무응답과 해당없음은 기타에 포함하여 합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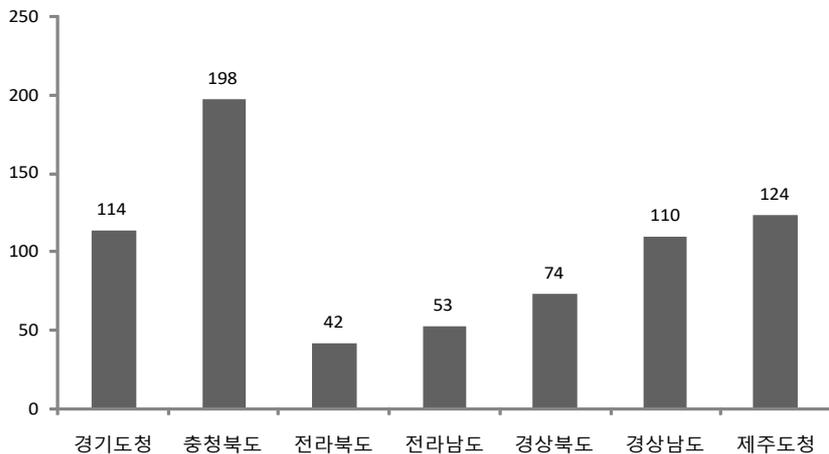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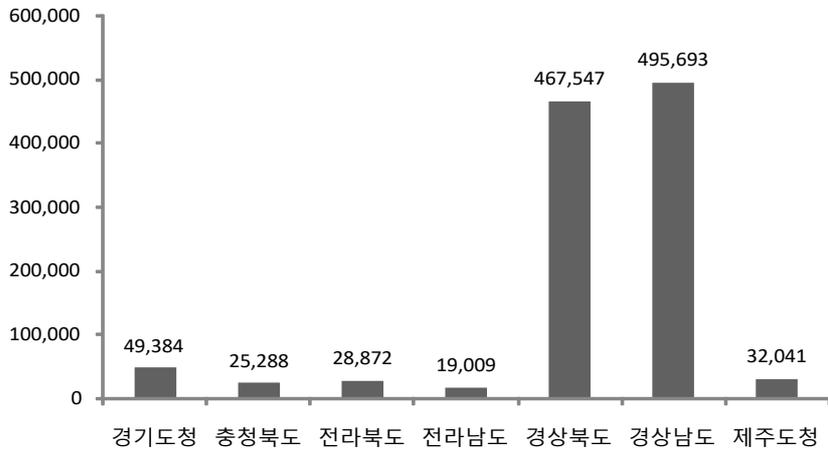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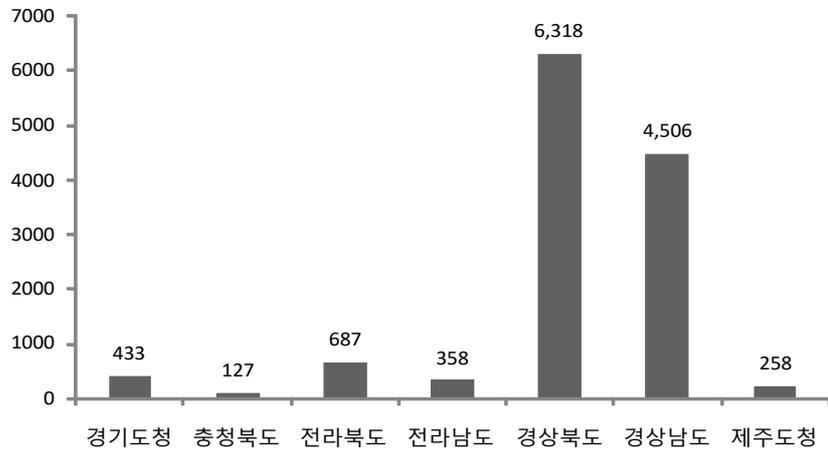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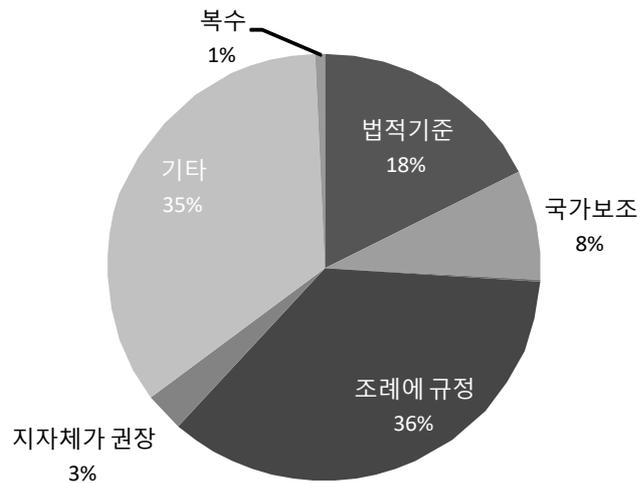
그림 19 | 민간위탁 사업수(도, 천)



[그림 20] 민간위탁 총 사업비(도단위, 백만원)



[그림 21] 사업별평균 민간위탁 사업비(도단위, 백만원)



[그림 22] 민간위탁 사업수행 법적근거(도단위,%)

### 제3장. 민간위탁 현황 분석

- 도단위의 민간위탁 사업의 낙찰자 선정방법은 기타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계약 175건, 협상계약 52건으로 나타났다.
- 그 외, 적격심사 40건, 최저가 낙찰제 14건, 해당없음을 포함한 무응답 217건으로 나타났다.

표 16 | 도단위 민간위탁 낙찰자 선정방법

단위: 건

구분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	협상계약	최저가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입찰	수의계약	기타	무응답
합계	40	52	14	-	-	175	217	217
경기도청	17	15	1	-	-	26	54	
강원도청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충청북도청	-	-	-	-	-	-	-	198
충청남도청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전라북도청	4	5	1	-	-	7	25	-
전라남도청	-	-	-	-	-	-	53	-
경상북도청	8	8	7	-	-	33	12	6
경상남도청	2	13	2	-	-	30	50	13
제주도청	9	11	3	-	-	79	23	

주. 해당없음은 무응답에 포함하여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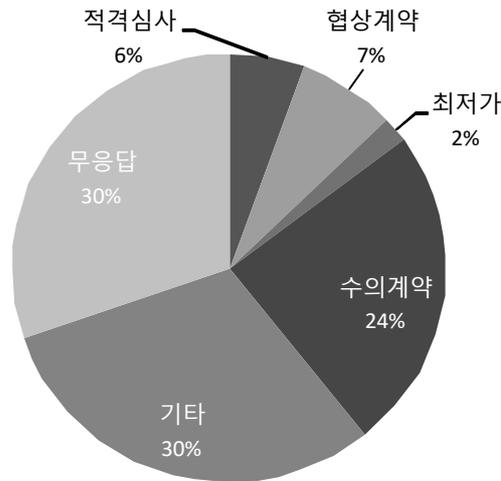


그림 23 | 낙찰자 선정방법(도단위,%)

- 도단위는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에 대하여 349건이 내부 산정이라 답하였고, 112건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있다고 답하였음.
- 다음으로 민간위탁사업의 원가산정의 기준이 있다고 답한 사업은 336건이고, 기준이 없다고 답한 사업은 178건이었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성과평가 실시여부 대한 질문에는 159건이 실시한다고 답했고, 205건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150건은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고 답했음.

표 17 | 도단위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기준 및 서비스 평가 실시 여부

단위: 건

구분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민간위탁 원가정산 방법				성과 평가 실시 여부		
	내부	외부	내외부	없음	내부	외부	내외부	없음	실시	미실시	향후 추진
합계	405	28	52	230	440	12	60	203	235	145	335
경기도청	96	3	12	2	96	2	13	2	49	27	37
강원도청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충청북도	-	-	-	198	-	-	-	198	-	-	198
충청남도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전라북도	32	2	5	3	35	1	6	-	37	3	2
전라남도	53	-	-	-	53	-	-	-	-	53	-
경상북도	37	18	8	11	63	4	4	3	19	25	30
경상남도	89	2	4	15	101	4	5	-	82	13	15
제주도청	98	3	23	1	92	1	32	-	48	24	53

주. 원가산정/원가정산 방법의 무응답은 없음으로 포함하여 합산함

주. 성과 평가 실시 여부의 무응답, 없음은 향후 추진에 포함하여 합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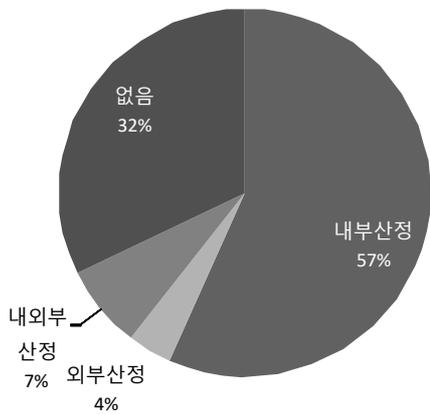


그림 24 | 원가산정 방법(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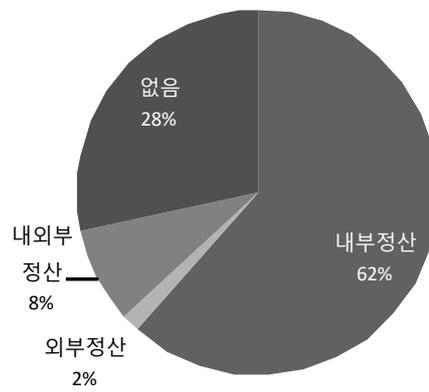


그림 25 | 원가정산 방법(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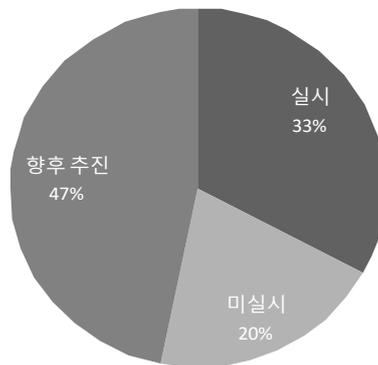


그림 26 | 서비스(성과)평가 실시 여부(도단위, %)

## 5. 시 단위

- 시단위의 민간위탁 사업 수는 총 3,161개로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은 1조 6569억원, 사업별 평균예산은 5억 2천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은 경기 성남시가 1,41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속초시가 7천백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사업별 평균 예산액은 경기 고양시가 17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속초시가 2,300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 민간위탁 사업 수행의 법적근거는 법적기준이 1,1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례에 직접 규정이 912건, 국가보조 재원이 604건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인 시 단위 통계 요약은 다음과 같음.

표 18 | 시단위 민간위탁 현황(사업수, 예산, 법적근거)

단위: 건, 백만원

구분	A. 사업 수	B. 사업 총예산	C. 사업별 평균예산	D. 민간위탁 법적근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3,161	1,656,963	524	1,132	604	1	912	80	423	9
경기 수원시	44	49,781	1,131	10	6	-	26	1	1	-
경기 성남시	157	141,782	903	30	40	-	71	4	12	-
경기 의정부시	55	12,974	235	33	8	-	11	-	3	-
경기 안양시	108	36,102	334	38	21	-	40	9	-	-
경기 부천시	101	123,454	1,222	27	10	-	34	1	29	-
경기 광명시	14	16,929	1,058	2	1	-	9	-	2	2
경기 평택시	31	21,601	696	12	4	-	5	1	9	-
경기 동두천시	11	7,961	723	5	1	-	3	-	2	-
경기 안산시	-	-	-	-	-	-	-	-	-	-
경기 고양시	47	83,151	1,769	20	18	-	6	1	2	-
경기 과천시	12	4,326	360	3	4	-	3	-	2	-
경기 구리시	46	11,154	242	17	3	-	19	4	3	-
경기 남양주시	72	60,958	846	33	22	-	16	-	1	-
경기 오산시	16	6,751	421	9	7	-	-	-	-	-
경기 시흥시	60	11,766	196	26	13	-	18	1	2	-
경기 군포시	8	4,300	537	-	-	-	8	-	-	-
경기 의왕시	52	16,418	315	39	1	-	5	-	7	-
경기 하남시	54	4,242	78	49	-	-	5	-	-	-
경기 용인시	37	51,932	1,403	20	2	-	12	-	3	-
경기 파주시	54	57,071	1,056	22	4	-	19	2	7	-
경기 이천시	34	39,931	1,174	21	3	-	10	-	-	-
경기 안성시	1	1,646	1,646	1	-	-	-	-	-	-
경기 김포시	21	19,762	941	13	2	-	3	2	1	-
경기 화성시	-	-	-	-	-	-	-	-	-	-

구분	A. 사업 수	B. 사업 총예산	C. 사업별 평균예산	D. 민간위탁 법적근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경기 광주시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경기 양주시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경기 포천시	35	23,643	675	11	11	-	8	-	5	-
경기 여주시	21	5,332	253	4	9	-	4	1	3	-
강원 춘천시	28	31,508	1,125	16	6	-	6	-	-	-
강원 원주시	-	-	-	-	-	-	-	-	-	-
강원 강릉시	35	16,118	460	10	8	-	10	-	7	-
강원 동해시	16	5,056	316	11	1	-	4	-	-	-
강원 태백시	9	3,744	416	7	-	-	2	-	-	-
강원 속초시	3	71	23	-	-	-	3	-	-	-
강원 삼척시	14	5,732	409	5	1	1	5	-	2	-
충북 충주시	82	28,815	351	11	32	-	24	1	14	-
충북 제천시	79	32,751	414	15	21	-	32	2	9	-
충북 청주시	60	6,508	108	13	11	-	24	2	10	-
충남 천안시	63	52,929	840	19	10	-	23	-	11	-
충남 공주시	27	15,497	573	16	1	-	7	-	3	-
충남 보령시	12	9,755	312	4	-	-	2	-	6	-
충남 아산시	103	43,094	418	50	10	-	31	2	10	-
충남 서산시	22	7,819	355	8	7	-	6	1	-	-
충남 논산시	19	13,875	730	7	10	-	1	-	1	-
충남 계룡시	15	1,088	72	4	7	-	3	1	-	-
충남 당진시	19	10,267	540	4	3	-	8	-	4	-
전북 전주시	41	30,898	753	8	1	-	22	4	6	-
전북 군산시	23	24,218	1,052	11	4	-	7	1	-	-
전북 익산시	97	59,791	610	35	35	-	19	7	1	1
전북 정읍시	74	22,204	300	13	28	-	29	2	2	-
전북 남원시	53	4,432	83	26	11	-	5	-	11	-
전북 김제시	51	19,943	391	21	15	-	1	4	10	-
전남 목포시	19	7,079	372	6	4	-	6	-	3	-
전남 여수시	23	4,247	184	8	7	-	6	-	2	-
전남 순천시	38	15,055	396	10	13	-	13	1	1	-
전남 나주시	17	2,938	172	2	2	-	10	-	3	-
전남 광양시	28	4,328	154	10	4	-	6	-	8	-
경북 포항시	23	31,406	1,365	8	1	-	13	-	1	-
경북 경주시	62	18,786	303	17	23	-	18	1	3	-
경북 김천시	10	1,061	106	5	1	-	4	-	-	-
경북 안동시	24	8,768	365	3	3	-	7	3	8	-
경북 구미시	-	-	-	-	-	-	-	-	-	-

### 제3장. 민간위탁 현황 분석

구분	A. 사업 수	B. 사업 총예산	C. 사업별 평균예산	D. 민간위탁 법적근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경북 영주시	42	12,700	302	24	5	-	5	2	6	-
경북 영천시	31	4,628	149	4	-	-	12	-	15	-
경북 상주시	61	12,853	194	16	13	-	27	1	4	5
경북 문경시	59	17,206	291	17	18	-	17	2	5	-
경북 경산시	80	44,900	561	32	13	-	19	4	12	-
경남 창원시	227	69,289	305	67	6	-	68	3	83	-
경남 진주시	33	7,469	226	14	10	-	2	-	7	-
경남 통영시	70	31,470	449	24	9	-	13	3	21	-
경남 사천시	54	15,611	289	26	18	-	8	-	2	-
경남 김해시	80	47,172	589	25	12	-	25	1	17	-
경남 밀양시	47	16,321	347	22	13	-	7	2	3	-
경남 거제시	68	28,520	413	28	17	-	12	3	8	1
경남 양산시	20	23,751	1,187	5	-	-	5	-	10	-

주. A : 구분 별 총 민간위탁 사업 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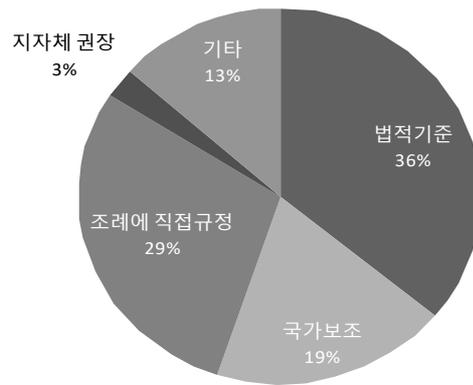
B : 구분 별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을 의미함

C : 민간위탁 사업 당 평균 예산을 의미함

D : 민간위탁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번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① 법적기준 ② 국가보조 ③ 용도 지정 기부금 ④ 조례에 규정 ⑤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⑥ 기타 ⑦ 복수응답

주. 무응답과 해당없음은 기타에 포함하여 합산함



[그림 27] 민간위탁 사업수행 법적근거(시단위, %)

- 시단위의 민간위탁 사업의 낙찰자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 1,0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적격심사 452건, 협상에 의한 계약은 225건으로 나타났음.
- 그 외, 최저가는 124건, 기타응답은 1,148건, 해당없음을 포함한 무응답은 145건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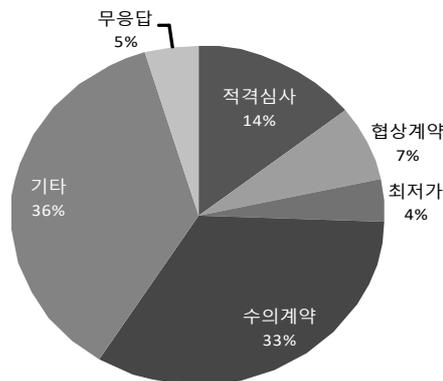
표 19 | 시단위 민간위탁 낙찰자 선정방법

단위: 건

구분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	협상계약	최저가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입찰	수의계약	기타	무응답
합계	452	225	127	13	2	1046	1148	145
경기 수원시	12	7	-	-	-	16	9	-
경기 성남시	57	21	-	-	-	37	41	1
경기 의정부시	13	-	-	-	1	26	9	6
경기 안양시	18	9	-	-	-	33	48	-
경기 부천시	17	7	1	-	-	48	26	2
경기 광명시	4	2	-	-	-	1	9	-
경기 평택시	4	10	-	-	-	12	5	-
경기 동두천시	1	-	-	-	-	5	4	-
경기 안산시	-	-	-	-	-	-	-	-
경기 고양시	10	-	3	1	-	27	6	-
경기 과천시	3	-	1	1	-	3	4	-
경기 구리시	6	3	-	-	-	24	13	-
경기 남양주시	1	4	-	-	-	21	46	-
경기 오산시	-	-	-	-	-	9	7	-
경기 시흥시	17	1	-	-	-	10	32	-
경기 군포시	-	-	-	-	-	-	8	-
경기 의왕시	9	8	-	-	-	2	33	-
경기 하남시	-	-	-	-	-	1	29	24
경기 용인시	6	3	-	1	-	10	17	-
경기 파주시	14	5	-	-	-	15	20	-
경기 이천시	4	4	2	-	-	13	11	-
경기 안성시	-	-	-	-	-	-	1	-
경기 김포시	1	1	-	-	-	8	6	5
경기 화성시	-	-	-	-	-	-	-	-
경기 광주시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경기 양주시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경기 포천시	4	4	-	-	-	8	19	-
경기 여주시	5	4	2	-	-	3	6	1
강원 춘천시	-	-	-	-	-	-	-	28
강원 원주시	-	-	-	-	-	-	-	-
강원 강릉시	2	-	1	-	-	11	18	3
강원 동해시	3	3	-	-	-	10	-	-
강원 태백시	4	-	2	-	-	2	1	-
강원 속초시	-	-	-	-	-	-	-	3
강원 삼척시	6	3	-	-	-	4	1	-
충북 충주시	2	13	5	-	1	22	38	-
충북 제천시	5	3	3	-	-	46	20	2
충북 청주시	15	1	4	-	-	19	21	-
충남 천안시	21	7	-	-	-	14	21	-
충남 공주시	1	3	-	1	-	6	14	2
충남 보령시	2	5	1	-	-	4	-	-
충남 아산시	20	11	13	-	-	11	47	1

제3장. 민간위탁 현황 분석

충남 서산시	1	-	-	-	-	4	17	-
충남 논산시	5	-	1	-	-	4	9	-
충남 계룡시	-	-	-	-	-	3	12	-
충남 당진시	2	2	-	-	-	6	9	-
전북 전주시	3	3	4	-	-	10	21	-
전북 군산시	5	2	1	-	-	5	10	-
전북 익산시	16	11	4	-	-	6	61	-
전북 정읍시	4	2	-	-	-	28	29	11
전북 남원시	3	2	3	-	-	21	24	3
전북 김제시	1	5	-	-	-	20	22	-
전남 목포시	3	1	-	-	-	8	6	1
전남 여수시	1	1	-	-	-	12	5	4
전남 순천시	1	6	-	-	-	26	5	-
전남 나주시	6	2	-	-	-	4	4	1
전남 광양시	3	2	1	-	-	16	6	-
경북 포항시	2	-	-	-	-	1	20	-
경북 경주시	-	-	1	-	-	23	38	-
경북 김천시	1	1	-	-	-	3	5	-
경북 안동시	2	-	1	-	-	4	9	8
경북 구미시	-	-	-	-	-	-	-	-
경북 영주시	5	1	1	1	-	4	10	20
경북 영천시	3	5	3	-	-	8	12	-
경북 상주시	3	2	2	-	-	16	42	1
경북 문경시	4	4	-	-	-	37	14	-
경북 경산시	5	3	3	1	-	34	21	13
경남 창원시	50	7	41	6	-	95	25	3
경남 진주시	-	1	1	-	-	22	9	-
경남 통영시	4	4	3	1	-	29	29	-
경남 사천시	2	5	4	-	-	15	28	-
경남 김해시	14	6	7	-	-	40	12	1
경남 밀양시	2	-	1	-	-	24	18	1
경남 거제시	12	5	7	-	-	35	10	-
경남 양산시	2	-	-	-	-	2	16	-



|그림 28| 낙찰자 선정방법(시단위, %)

- 시단위는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에 대하여 1,748건이 내부 산정이라 답하였고, 575건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있다고 답하였음.
- 다음으로 민간위탁사업의 원가정산 방법의 2,126건은 내부 정산이고 279건은 외부정산으로 이루어진다고 답했으며,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성과평가 실시여부 대한 질문에는 1,435건이 실시한다고 답했고, 1,116건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또한 610건은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고 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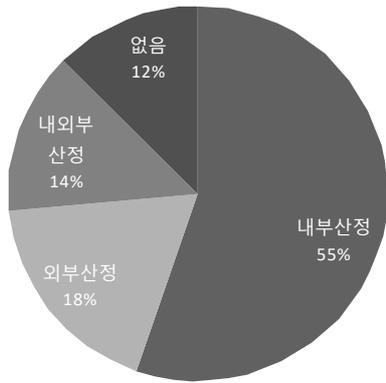
표 20 | 시단위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기준 및 서비스 평가 실시 여부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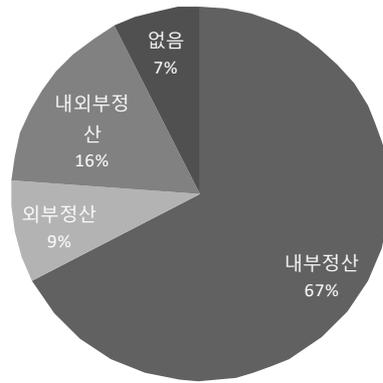
구분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민간위탁 원가정산 방법				성과 평가 실시 여부		
	내부	외부	내외부	없음	내부	외부	내외부	없음	실시	미실시	향후 추진
합계	1748	575	443	395	2126	279	519	237	1435	1116	610
경기 수원시	32	4	5	3	37	-	6	1	22	10	12
경기 성남시	68	26	39	24	82	11	47	17	92	20	45
경기 의정부시	28	11	14	2	36	11	8	-	34	21	-
경기 안양시	80	11	12	5	87	-	20	1	51	40	17
경기 부천시	62	7	16	16	79	4	9	9	68	12	21
경기 광명시	6	8	1	1	9	5	1	1	5	4	7
경기 평택시	19	6	3	3	24	2	2	3	23	6	2
경기 동두천시	5	6	-	-	3	2	-	6	7	3	1
경기 안산시	-	-	-	-	-	-	-	-	-	-	-
경기 고양시	11	8	25	3	21	1	24	1	38	7	2
경기 과천시	11	-	1	-	10	2	-	-	12	-	-
경기 구리시	28	2	1	15	44	-	1	1	34	10	2
경기 남양주시	23	9	32	8	28	1	43	-	47	21	4
경기 오산시	16	-	-	-	16	-	-	-	9	-	7
경기 시흥시	28	21	11	-	30	1	29	-	24	24	12
경기 군포시	8	-	-	-	8	-	-	-	8	-	-
경기 의왕시	47	4	1	-	45	-	7	-	23	29	-
경기 하남시	28	-	1	25	30	-	-	24	1	2	51
경기 용인시	18	10	6	3	29	2	6	-	22	9	6
경기 파주시	23	24	5	2	29	14	10	1	31	13	10
경기 이천시	23	10	-	1	28	2	4	-	10	19	5
경기 안성시	-	1	-	-	1	-	-	-	-	1	-
경기 김포시	15	3	2	1	15	-	5	1	5	13	3
경기 화성시	-	-	-	-	-	-	-	-	-	-	-
경기 광주시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경기 양주시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경기 포천시	16	3	16	-	19	-	16	-	25	10	-
경기 여주시	17	2	1	1	20	-	1	-	8	11	2
강원 춘천시	-	-	-	28	-	-	-	28	9	19	-
강원 원주시	-	-	-	-	-	-	-	-	-	-	-
강원 강릉시	24	6	1	4	28	-	-	7	14	14	7
강원 동해시	6	10	-	-	16	-	-	-	5	10	1
강원 태백시	4	2	3	-	5	-	4	-	5	4	-
강원 속초시	3	-	-	-	3	-	-	-	-	3	-
강원 삼척시	6	3	5	-	9	2	3	-	8	2	4

제3장. 민간위탁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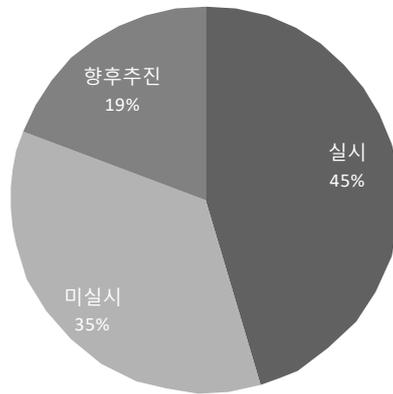
충북 충주시	60	11	9	2	68	3	9	2	38	24	20
충북 제천시	43	12	12	12	50	5	18	6	43	20	16
충북 청주시	37	12	7	4	47	2	5	6	25	25	10
충남 천안시	32	17	9	5	42	4	14	3	37	22	4
충남 공주시	6	7	3	11	15	3	5	4	17	6	4
충남 보령시	8	-	2	2	6	4	2	-	4	-	8
충남 아산시	55	12	25	11	78	5	14	6	76	22	5
충남 서산시	13	3	2	4	4	17	1	-	18	1	3
충남 논산시	9	8	-	2	14	2	3	-	13	5	1
충남 계룡시	4	2	-	9	11	1	-	3	2	11	2
충남 당진시	7	6	5	1	15	2	-	2	10	4	5
전북 전주시	23	2	16	-	25	2	14	-	19	14	8
전북 군산시	9	7	6	1	13	8	2	-	5	14	4
전북 익산시	35	24	6	33	42	21	28	7	35	60	3
전북 정읍시	68	5	1	-	60	5	9	-	-	23	51
전북 남원시	6	20	8	19	16	14	4	19	12	38	3
전북 김제시	23	9	1	18	28	13	5	5	29	20	2
전남 목포시	14	2	2	1	13	3	3	-	14	1	4
전남 여수시	15	5	3	-	16	4	3	-	15	6	2
전남 순천시	25	11	2	-	31	3	3	1	5	7	26
전남 나주시	11	2	3	1	12	-	4	1	8	9	-
전남 광양시	20	2	2	4	19	-	2	7	11	16	1
경북 포항시	12	4	4	3	19	2	2	-	5	11	7
경북 경주시	54	1	6	1	52	3	7	-	32	27	3
경북 김천시	7	1	-	2	9	1	-	-	4	4	2
경북 안동시	18	6	-	-	17	7	-	-	10	10	4
경북 구미시	-	-	-	-	-	-	-	-	-	-	-
경북 영주시	22	4	4	12	26	6	5	5	20	16	6
경북 영천시	24	1	1	5	25	1	-	5	3	7	21
경북 상주시	28	23	13	2	46	11	4	5	20	32	14
경북 문경시	45	5	6	3	48	3	6	2	13	40	6
경북 경산시	45	5	9	21	62	4	5	9	52	18	10
경남 창원시	117	62	36	12	167	11	35	14	67	149	11
경남 진주시	24	1	8	-	24	-	8	1	25	6	2
경남 통영시	49	7	11	3	54	3	11	2	21	34	15
경남 사천시	24	16	9	5	41	3	8	2	1	-	53
경남 김해시	27	26	5	22	38	13	21	8	39	35	6
경남 밀양시	19	12	4	12	16	18	11	2	14	3	30
경남 거제시	45	21	2	1	46	12	2	9	16	36	17
경남 양산시	10	4	-	6	20	-	-	-	17	3	-



|그림 29| 원가산정 방법(시단위,%)



|그림 30| 원가정산 방법(시단위,%)



|그림 31| 서비스(성과)평가 실시 여부(시단위,%)

## 6. 군 단위

- 군단위의 민간위탁 사업 수는 총 2,442개로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은 6,954억원, 사업별 평균예산은 2억 9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은 전북 순창군이 99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청양군이 1억 4천8백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사업별 평균 예산액은 전북 순창군이 3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청양군이 4천 8백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 민간위탁 사업 수행의 법적근거는 법적기준이 7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례로 직접규정이 696건 국고보조 재원이 619건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인 군단위 통계 요약은 다음과 같음.

표 21 | 군단위 민간위탁 현황(사업수, 예산, 법적근거)

단위: 건,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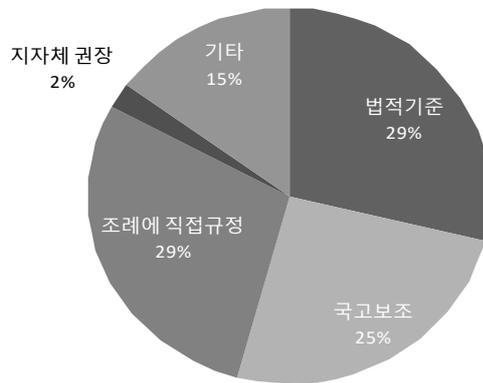
구분	A. 사업 수	B. 사업 총예산	C. 사업별 평균예산	D. 민간위탁 법적근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2,442	695,486	290	700	619	8	696	56	362	-
부산 기장군	45	24,507	544	17	8	-	8	1	11	-
대구 달성군	45	22,595	502	10	11	-	23	1	-	-
인천 강화군	4	1,637	409	1	2	-	1	-	-	-
인천 옹진군	19	2,793	147	4	10	-	5	-	-	-
울산 울주군	61	43,507	713	27	13	-	18	1	2	-
경기 연천군	38	18,218	479	20	2	-	6	1	9	-
경기 가평군	51	11,526	226	7	20	-	20	3	1	-
경기 양평군	58	9,501	163	19	5	-	23	-	11	-
강원 홍천군	37	17,778	480	11	3	-	12	-	11	-
강원 횡성군	80	13,965	174	43	11	-	22	-	4	-
강원 영월군	45	5,163	114	12	18	-	10	-	4	1
강원 평창군	5	1,163	232	1	-	-	2	-	2	-
강원 정선군	69	7,963	115	17	12	-	32	3	5	-
강원 철원군	17	3,111	183	3	5	-	7	1	1	-
강원 화천군	31	3,968	128	2	18	-	10	-	1	-
강원 양구군	29	1,633	56	3	20	-	4	-	2	-
강원 인제군	7	646	92	-	2	-	1	2	2	-
강원 고성군	14	4,201	300	4	2	-	4	-	4	-
강원 양양군	30	1,750	58	5	10	-	4	2	9	-
충북 보은군	86	19,794	230	7	33	-	44	1	1	-
충북 옥천군	56	17,430	311	15	24	-	12	-	5	-
충북 영동군	35	13,575	387	23	2	-	6	1	3	-
충북 진천군	68	22,690	333	-	-	-	-	-	68	-
충북 괴산군	58	6,368	109	19	16	-	7	3	13	-
충북 음성군	27	8,262	306	8	5	-	11	-	3	-
충북 단양군	35	4,179	119	14	5	-	4	1	11	-
충북 증평군	9	3,208	356	1	-	-	8	-	-	-
충남 금산군	22	4,913	223	5	5	-	6	-	6	-
충남 부여군	20	10,326	516	10	-	-	3	2	5	-

구분	A. 사업 수	B. 사업 총예산	C. 사업별 평균예산	D. 민간위탁 법적근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충남 서천군	48	13,712	285	4	18	-	23	-	3	-
충남 청양군	3	148	49	-	2	-	-	-	1	-
충남 홍성군	56	9,524	170	18	25	-	2	10	1	-
충남 예산군	16	9,770	610	4	4	-	8	-	-	-
충남 태안군	61	16,544	271	-	27	-	34	-	-	-
전북 완주군	77	23,906	310	30	25	-	17	-	5	-
전북 진안군	77	9,628	125	29	18	-	21	-	9	-
전북 무주군	32	8,549	267	12	2	-	5	-	13	-
전북 장수군	21	4,664	222	14	-	-	1	-	6	-
전북 임실군	5	343	68	1	-	-	3	-	1	-
전북 순창군	31	99,304	3,203	7	7	-	14	1	2	-
전북 고창군	0	-	-	-	-	-	-	-	-	-
전북 부안군	37	6,900	186	16	17	-	2	1	1	-
전남 담양군	27	5,446	201	5	15	-	5	2	-	-
전남 곡성군	9	2,206	245	2	2	-	3	-	2	-
전남 구례군	6	1,160	193	1	1	-	4	-	-	-
전남 고흥군	29	6,630	228	3	15	-	6	-	5	-
전남 보성군	27	11,379	421	16	3	1	7	-	-	-
전남 화순군	28	3,599	128	15	5	-	2	1	5	-
전남 장흥군	88	9,143	103	11	23	6	30	4	14	-
전남 강진군	11	2,319	210	6	1	-	3	1	-	-
전남 해남군	16	5,543	346	14	1	-	1	-	-	-
전남 영암군	18	5,094	283	5	6	-	3	-	4	-
전남 무안군	3	1,366	455	3	-	-	-	-	-	-
전남 함평군	41	4,975	121	12	15	-	8	-	6	-
전남 영광군	29	5,338	184	13	10	-	3	2	1	-
전남 장성군	34	7,804	229	18	7	-	7	-	2	-
전남 완도군	24	3,205	133	6	10	-	5	2	1	-
전남 진도군	24	3,754	156	5	16	-	1	-	2	-
전남 신안군	19	2,769	145	11	2	-	-	1	5	-
경북 군위군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경북 의성군	6	4,241	706	1	2	-	3	-	-	-
경북 청송군	4	1,322	330	1	-	-	2	-	1	-
경북 영양군	47	2,546	54	-	-	-	-	-	47	-
경북 영덕군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경북 청도군	39	6,198	158	16	9	-	14	-	-	-
경북 고령군	13	1,295	99	5	-	-	8	-	-	-
경북 성주군	23	2,404	104	6	6	-	9	-	2	-
경북 칠곡군	67	21,759	324	23	11	-	26	4	3	-
경북 예천군	35	12,428	355	17	9	-	9	-	-	-
경북 봉화군	8	1,098	137	3	3	-	1	-	1	-
경북 울진군	49	10,140	206	-	-	-	49	-	-	-
경북 울릉군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경남 의령군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미회신
경남 함안군	15	7,415	494	5	6	-	4	-	-	-
경남 창녕군	16	6,979	436	6	1	-	3	-	6	-

### 제3장. 민간위탁 현황 분석

구분	A. 사업 수	B. 사업 총예산	C. 사업별 평균예산	D. 민간위탁 법적근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경남 고성군	9	2,660	295	2	1	-	4	-	2	-
경남 남해군	26	5,477	210	8	4	1	6	2	5	-
경남 하동군	8	872	109	-	4	-	2	-	2	-
경남 산청군	21	2,827	134	3	6	-	8	-	4	-
경남 함양군	6	632	105	4	-	-	2	-	-	-
경남 거창군	25	6,854	274	2	2	-	13	2	6	-
경남 합천군	27	7,213	267	9	16	-	2	-	-	-

주. A : 구분 별 총 민간위탁 사업 수를 의미함  
 B : 구분 별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을 의미함  
 C : 민간위탁 사업 당 평균 예산을 의미함  
 D : 민간위탁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번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① 법적기준 ② 국가보조 ③ 용도 지정 기부금 ④ 조례에 규정 ⑤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⑥ 기타 ⑦ 복수응답  
 주. 무응답과 해당없음은 기타에 포함하여 합산함



|그림 32| 민간위탁 사업수행 법적근거(군단위, %)

- 군단위의 민간위탁 사업의 낙찰자 선정방법은 적격심사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계약이 415건, 협상에 의한 계약은 113건으로 나타났음.
- 그 외, 최저가 44건, 무응답을 포함한 기타응답은 567건으로 나타났음.

|표 22| 군단위 민간위탁 낙찰자 선정방법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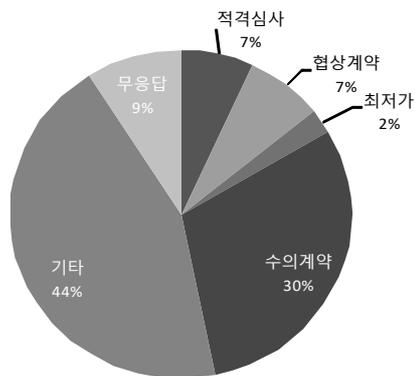
구분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	협상계약	최저가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입찰	수의계약	기타	무응답
합계	167	180	56	10	2	731	1,074	219
부산 기장군	7	8	11	-	-	4	14	1
대구 달성군	4	5	1	-	1	24	10	-
인천 강화군	-	1	-	-	-	-	3	-
인천 옹진군	2	1	-	-	-	-	16	-
울산 울주군	6	6	2	-	-	21	26	-
경기 연천군	1	16	1	-	-	11	9	-

경기 가평군	5	-	-	-	-	16	30	-
경기 양평군	3	2	1	2	-	27	23	-
강원 홍천군	4	5	2	-	-	17	9	-
강원 횡성군	-	3	-	-	-	20	57	-
강원 영월군	-	2	1	-	-	8	34	-
강원 평창군	2	-	-	-	-	1	2	-
강원 정선군	-	6	3	2	-	20	35	3
강원 철원군	1	-	-	-	-	7	8	-
강원 화천군	1	3	-	-	-	11	16	-
강원 양구군	1	-	-	-	-	5	23	-
강원 인제군	-	1	-	-	-	3	3	-
강원 고성군	1	1	3	-	-	4	5	-
강원 양양군	1	3	4	-	-	17	3	2
충북 보은군	7	5	1	-	-	20	53	-
충북 옥천군	1	2	-	-	-	11	42	-
충북 영동군	2	14	1	-	-	9	9	-
충북 진천군	-	-	-	-	-	-	-	68
충북 괴산군	5	4	1	-	-	26	18	3
충북 음성군	2	3	-	1	-	9	12	-
충북 단양군	3	2	-	-	-	2	12	16
충북 증평군	2	1	-	-	-	2	1	3
충남 금산군	7	-	-	-	-	5	10	-
충남 부여군	1	3	-	-	-	4	7	5
충남 서천군	5	2	-	-	-	6	15	20
충남 청양군	-	-	-	-	-	-	3	-
충남 홍성군	1	1	-	-	-	23	31	-
충남 예산군	1	1	7	-	-	-	7	-
충남 태안군	-	-	-	-	-	-	61	-
전북 완주군	2	6	1	-	-	22	46	-
전북 진안군	9	1	-	-	-	21	45	1
전북 무주군	9	1	1	-	-	3	18	-
전북 장수군	-	1	1	-	-	13	6	-
전북 임실군	-	-	-	-	-	1	4	-
전북 순창군	4	3	-	-	1	5	17	1
전북 고창군	-	-	-	-	-	-	-	-
전북 부안군	2	-	-	-	-	17	18	-
전남 담양군	-	1	-	-	-	5	6	15
전남 곡성군	-	1	-	-	-	3	4	1
전남 구례군	1	-	-	-	-	-	5	-
전남 고흥군	-	3	-	-	-	4	21	1
전남 보성군	-	4	-	3	-	1	19	-
전남 화순군	2	2	1	-	-	7	16	-
전남 장흥군	18	2	2	-	-	38	22	6
전남 강진군	1	2	2	-	-	6	-	-
전남 해남군	-	-	-	-	-	12	4	-
전남 영암군	-	2	-	-	-	1	15	-
전남 무안군	3	-	-	-	-	-	-	-
전남 함평군	-	4	-	-	-	17	20	-

제3장. 민간위탁 현황 분석

전남 영광군	1	-	-	-	-	11	17	-
전남 장성군	1	7	-	-	-	15	11	-
전남 완도군	5	2	-	-	-	6	11	-
전남 진도군	1	4	1	-	-	5	13	-
전남 신안군	1	3	2	2	-	1	10	-
경북 군위군	미회신							
경북 의성군	2	-	-	-	-	1	3	-
경북 청송군	-	-	1	-	-	2	1	-
경북 영양군	-	-	-	-	-	-	-	47
경북 영덕군	미회신							
경북 청도군	7	3	-	-	-	11	2	16
경북 고령군	-	-	-	-	-	-	5	8
경북 성주군	-	-	-	-	-	19	4	-
경북 칠곡군	5	12	-	-	-	35	15	-
경북 예천군	3	2	2	-	-	15	13	-
경북 봉화군	1	-	-	-	-	1	5	1
경북 울진군	-	-	-	-	-	49	-	-
경북 울릉군	미회신							
경남 의령군	미회신							
경남 함안군	1	-	1	-	-	10	3	-
경남 창녕군	2	2	-	-	-	8	3	-
경남 고성군	1	1	1	-	-	1	5	-
경남 남해군	1	3	1	-	-	9	12	-
경남 하동군	4	-	-	-	-	3	1	-
경남 산청군	1	1	-	-	-	3	15	1
경남 함양군	-	1	-	-	-	2	3	-
경남 거창군	1	3	-	-	-	7	14	-
경남 합천군	2	2	-	-	-	8	15	-

주. 무응답은 기타로 포함하여 합산함



|그림 33| 낙찰자 선정방법(군단위,%)

- 군단위는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에 대하여 1244건이 내부 산정이라 답하였고, 526건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있다고 답하였음.
- 다음으로 민간위탁사업의 원가정산 방법은 내부 산정이 1,426건, 외부 산정이 346건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성과평가 실시여부 대한 질문에는 884건이 실시한다고 답했고, 854건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704건은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고 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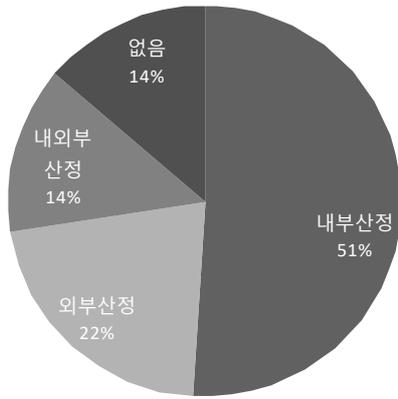
표 23 | 군단위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기준 및 서비스 평가 실시 여부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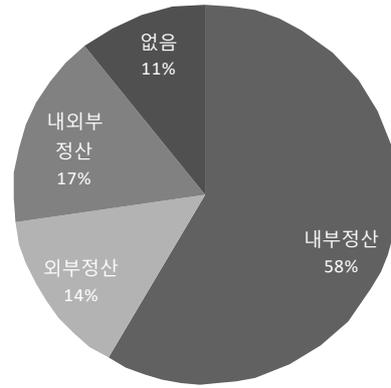
구분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민간위탁 원가정산 방법				성과 평가 실시 여부		
	내부	외부	내외부	없음	내부	외부	내외부	없음	실시	미실시	향후 추진
합계	1,244	526	338	334	1,426	346	404	265	884	854	704
부산 기장군	13	13	15	4	19	13	9	4	17	20	8
대구 달성군	26	8	11	-	27	6	12	-	25	6	14
인천 강화군	2	-	2	-	3	-	1	-	-	2	2
인천 옹진군	16	-	3	-	17	-	2	-	3	11	5
울산 울주군	35	23	3	-	41	16	2	2	25	34	2
경기 연천군	25	9	4	-	19	5	14	-	18	17	3
경기 가평군	24	14	1	12	32	11	5	3	51	-	-
경기 양평군	36	8	6	8	35	2	15	6	31	18	9
강원 홍천군	21	-	15	1	26	-	11	-	-	10	27
강원 횡성군	54	21	2	3	71	6	3	-	2	78	-
강원 영월군	26	18	1	-	27	14	3	1	25	12	8
강원 평창군	3	2	-	-	4	-	-	1	2	1	2
강원 정선군	30	29	8	2	40	6	18	5	8	2	59
강원 철원군	14	1	2	-	15	-	1	1	6	6	5
강원 화천군	17	10	-	4	21	7	3	-	1	28	2
강원 양구군	7	13	2	7	8	21	-	-	5	23	1
강원 인제군	4	2	1	-	4	2	1	-	2	5	-
강원 고성군	5	2	5	2	10	1	3	-	7	5	2
강원 양양군	24	4	1	1	14	5	10	1	10	17	3
충북 보은군	60	12	14	-	80	3	-	3	45	28	13
충북 옥천군	7	32	17	-	19	15	20	2	3	16	37
충북 영동군	28	3	4	-	30	1	4	-	14	6	15
충북 진천군	-	-	-	68	-	-	-	68	-	-	68
충북 괴산군	44	5	2	7	46	3	1	7	16	37	5
충북 음성군	9	4	14	-	21	-	4	2	8	18	1
충북 단양군	8	6	18	3	7	4	21	3	19	3	13
충북 증평군	2	3	4	-	2	3	4	-	4	1	4
충남 금산군	13	6	-	3	16	3	3	-	12	8	2
충남 부여군	12	5	-	3	16	1	-	3	12	-	8
충남 서천군	9	9	28	2	20	3	22	3	23	13	12
충남 청양군	-	-	1	2	-	3	-	-	1	1	1
충남 홍성군	42	8	5	1	42	6	8	-	17	26	13
충남 예산군	6	9	-	1	15	1	-	-	11	4	1
충남 태안군	-	-	-	61	-	-	-	61	-	-	61
전북 완주군	38	29	9	1	34	21	20	2	-	-	77

제3장. 민간위탁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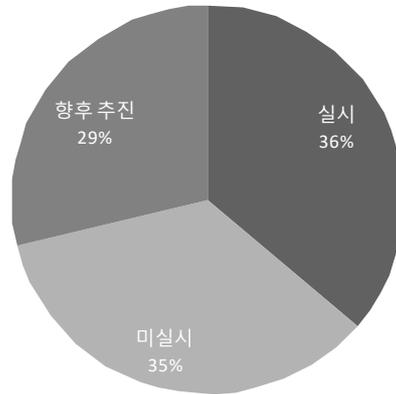
전북 진안군	71	4	1	1	73	3	1	-	60	16	1
전북 무주군	23	-	9	-	20	-	12	-	20	11	1
전북 장수군	10	3	1	7	13	7	-	1	12	7	2
전북 임실군	4	1	-	-	4	1	-	-	3	2	-
전북 순창군	15	10	4	2	19	11	1	-	22	8	1
전북 고창군	-	-	-	-	-	-	-	-	-	-	-
전북 부안군	30	5	2	-	22	13	2	-	11	23	3
전남 담양군	6	10	7	4	6	6	15	-	17	5	5
전남 곡성군	4	1	4	-	1	1	7	-	6	2	1
전남 구례군	5	1	-	-	5	1	-	-	6	-	-
전남 고흥군	9	18	1	1	9	7	12	1	14	14	1
전남 보성군	20	7	-	-	26	-	1	-	1	-	26
전남 화순군	11	12	1	4	14	12	-	2	9	19	-
전남 장흥군	44	10	21	13	53	9	19	7	45	21	22
전남 강진군	8	2	1	-	7	1	1	2	5	3	3
전남 해남군	5	-	11	-	4	-	12	-	13	2	1
전남 영암군	15	3	-	-	18	-	-	-	7	3	8
전남 무안군	3	-	-	-	3	-	-	-	1	-	2
전남 함평군	27	12	2	-	32	6	2	1	10	16	15
전남 영광군	17	-	8	4	14	1	14	-	21	4	4
전남 장성군	18	10	5	1	21	7	6	-	16	14	4
전남 완도군	5	5	8	6	12	-	12	-	1	-	23
전남 진도군	7	12	3	2	7	7	7	3	13	8	3
전남 신안군	3	11	4	1	9	4	6	-	-	19	-
경북 군위군	미회신										
경북 의성군	1	5	-	-	5	1	-	-	2	3	1
경북 청송군	3	-	-	1	4	-	-	-	1	1	2
경북 영양군	-	-	-	47	-	-	-	47	-	-	47
경북 영덕군	미회신										
경북 청도군	33	3	3	-	19	14	6	-	13	16	10
경북 고령군	-	-	-	13	-	-	-	13	8	5	-
경북 성주군	10	1	3	9	13	4	6	-	3	13	7
경북 칠곡군	36	8	18	5	42	9	15	1	28	37	2
경북 예천군	22	3	3	7	21	6	5	3	24	7	4
경북 봉화군	5	3	-	-	4	1	3	-	-	7	1
경북 울진군	39	10	-	-	49	-	-	-	-	49	-
경북 울릉군	미회신										
경남 의령군	미회신										
경남 함안군	9	5	1	-	11	3	1	-	13	1	1
경남 창녕군	6	2	5	3	9	4	2	1	6	9	1
경남 고성군	2	3	2	2	5	1	2	1	1	6	2
경남 남해군	21	3	2	-	20	-	5	1	12	12	2
경남 하동군	1	6	1	-	1	6	1	-	2	2	4
경남 산청군	11	7	1	2	16	3	1	1	11	7	3
경남 함양군	1	4	1	-	1	4	1	-	1	5	-
경남 거창군	10	7	5	3	19	-	4	2	15	7	3
경남 합천군	14	11	2	-	14	11	2	-	8	14	5



|그림 34| 원가산정 방법(군단위, %)



|그림 35| 원가정산 방법(군단위, %)



|그림 36| 서비스(성과)평가 실시 여부(군단위, %)

## 7. 자치구 단위

- 자치구 단위의 민간위탁 사업 수는 총 3,044개로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은 1조 3,425억원, 사업별 평균 예산은 4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은 서울 강남구가 1,17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유성구가 22억 5천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민간위탁 사업 수행의 법적근거는 법적기준이 1,1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례에 직접 규정이 572건 국고보조 재원이 524건으로 나타났음.
- 세부적인 자치구 단위 통계 요약은 다음과 같음.

표 24 | 자치구단위 민간위탁 현황(사업수, 예산, 법적근거)

단위: 건, 백만원

구분	A. 사업 수	B. 사업 총예산	C. 사업별 평균예산	D. 민간위탁 법적근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3,044	1,342,511	441	1,173	524	4	671	96	572	4
서울 종로구	73	22,563	309	36	11	-	11	3	12	-
서울 중구	44	27,988	636	23	2	-	14	3	2	-
서울 용산구	45	22,450	498	16	4	-	17	1	7	-
서울 성동구	39	14,914	382	6	5	-	13	6	9	-
서울 광진구	13	2,555	196	7	1	-	4	-	1	-
서울 동대문구	26	18,528	712	6	-	-	9	1	10	-
서울 중랑구	33	21,208	642	3	5	-	13	-	12	-
서울 성북구	39	17,838	457	5	1	-	15	12	6	-
서울 강북구	70	22,682	324	26	13	2	10	4	15	-
서울 도봉구	32	5,047	157	13	1	-	11	2	5	-
서울 노원구	41	26,316	641	7	4	-	17	6	5	2
서울 오산시	47	28,121	598	26	2	-	11	3	5	-
서울 서대문구	43	14,526	337	17	-	-	11	-	15	-
서울 마포구	41	9,419	229	12	6	-	14	-	9	-
서울 양천구	43	25,566	594	18	2	-	14	1	8	-
서울 강서구	71	44,888	632	23	5	-	23	3	17	-
서울 구로구	80	28,585	357	24	7	-	34	7	8	-
서울 금천구	34	14,591	429	11	6	-	6	4	7	-
서울 영등포구	13	4,618	355	4	-	-	9	-	-	-
서울 동작구	61	26,364	432	19	16	-	6	5	15	-
서울 관악구	40	11,350	283	10	5	-	15	5	5	-
서울 서초구	70	43,419	620	29	11	-	15	3	12	-
서울 강남구	81	117,710	1,453	38	7	1	24	1	10	-
서울 송파구	72	40,926	568	32	9	-	10	-	21	-
서울 강동구	51	16,802	329	17	5	-	19	1	9	-
부산 중구	27	6,331	234	9	1	-	13	3	1	-
부산 서구	15	7,713	514	10	4	-	-	-	1	-
부산 동구	26	9,582	368	15	5	-	1	-	5	-
부산 영도구	10	8,452	845	1	1	-	1	-	7	-
부산 부산진구	56	27,185	485	43	9	-	1	-	3	-
부산 동래구	63	14,953	237	30	5	-	18	-	10	-

구분	A. 사업 수	B. 사업 총예산	C. 사업별 평균예산	D. 민간위탁 법적근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산 남구	83	25,005	301	16	21	-	35	2	9	-
부산 북구	44	23,360	530	15	9	-	5	-	15	-
부산 해운대구	34	20,629	606	14	5	-	6	2	7	-
부산 사하구	81	38,926	480	36	29	-	2	-	14	-
부산 금정구	44	14,214	323	22	14	-	4	1	3	-
부산 강서구	47	13,114	279	22	15	-	6	-	4	-
부산 연제구	10	7,870	787	7	-	-	1	1	1	-
부산 수영구	65	14,935	229	28	16	-	3	5	13	-
부산 사상구	47	17,770	378	30	8	-	5	2	2	-
대구 중구	39	4,340	111	19	6	-	8	-	6	-
대구 동구	-	-	-	-	-	-	-	-	-	-
대구 서구	30	7,845	261	8	12	-	5	-	5	-
대구 남구	67	12,443	185	21	34	-	8	-	4	-
대구 북구	117	28,145	240	34	12	-	7	1	63	-
대구 수성구	71	31,867	448	-	-	-	-	-	71	-
대구 달서구	61	30,248	495	38	10	-	7	1	5	-
인천 중구	42	10,272	244	19	8	-	11	1	3	-
인천 동구	46	9,902	215	14	11	-	14	-	7	-
인천 남구	19	2,494	131	11	-	-	5	1	2	-
인천 연수구	39	16,061	411	29	-	-	1	-	9	-
인천 남동구	60	33,975	566	32	4	-	1	2	21	-
인천 부평구	77	40,171	521	46	9	-	17	-	5	-
인천 계양구	62	30,451	491	22	19	-	9	2	10	-
인천 서구	63	27,350	434	29	19	-	10	-	5	-
광주 동구	16	3,665	229	2	8	-	3	-	1	2
광주 서구	26	17,434	670	11	3	-	10	-	2	-
광주 남구	-	-	-	-	-	-	-	-	-	-
광주 북구	26	42,793	1,645	10	8	-	5	-	3	-
광주 광산구	23	14,925	648	14	2	-	1	-	6	-
대전 동구	9	3,844	427	1	4	-	1	-	3	-
대전 중구	11	4,384	398	5	-	-	6	-	-	-
대전 서구	26	19,554	752	17	1	-	6	-	2	-
대전 유성구	19	2,251	118	1	-	-	11	-	7	-
대전 대덕구	12	9,347	778	10	2	-	-	-	-	-
울산 중구	54	12,277	227	19	15	1	16	-	3	-
울산 남구	63	17,877	283	14	19	-	25	-	5	-
울산 동구	50	10,720	214	8	19	-	22	1	-	-
울산 북구	62	18,828	303	13	29	-	16	-	4	-

주. A : 구분 별 총 민간위탁 사업 수를 의미함

B : 구분 별 민간위탁 사업 총 예산을 의미함

C : 민간위탁 사업 당 평균 예산을 의미함

D : 민간위탁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번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① 법적기준 ② 국가보조 ③ 용도 지정 기부금 ④ 조례에 규정 ⑤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⑥ 기타 ⑦ 복수응답

주. 무응답과 해당없음은 기타에 포함하여 합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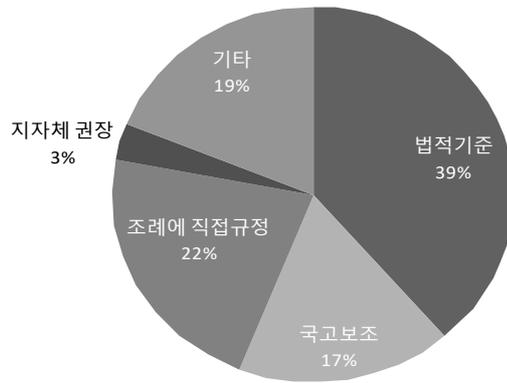


그림 37 민간위탁 사업수행 법적근거(구단위, %)

- 구단위의 민간위탁 사업의 낙찰자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 1,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적격심사가 358건, 협상에 의한 계약 138건으로 나타났다.
- 그 외, 최저가는 91건, 기타 1126건, 해당없음을 포함한 무응답은 160건으로 나타났다.

표 25 | 자치구구단위 민간위탁 낙찰자 선정방법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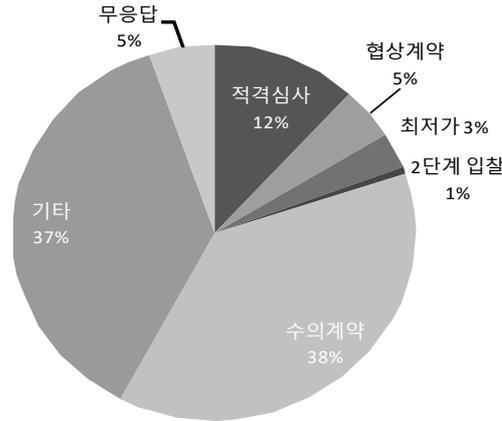
구분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	협상계약	최저가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입찰	수의계약	기타	무응답
합계	358	138	91	19	-	1,149	1,126	160
서울 종로구	11	8	1	-	-	31	22	-
서울 중구	6	2	1	-	-	11	23	-
서울 용산구	3	6	-	-	-	15	16	5
서울 성동구	8	-	1	-	-	16	14	-
서울 광진구	2	-	1	-	-	1	7	-
서울 동대문구	2	3	2	-	-	8	11	-
서울 중랑구	1	4	-	-	-	18	10	-
서울 성북구	3	2	-	-	-	20	13	1
서울 강북구	11	1	1	-	-	36	21	-
서울 도봉구	-	-	1	-	-	9	22	-
서울 노원구	9	8	-	1	-	18	5	-
서울 오산시	4	4	-	-	-	10	28	1
서울 서대문구	5	-	4	-	-	19	9	6
서울 마포구	8	3	-	-	-	2	25	3
서울 양천구	3	3	1	-	-	14	22	-
서울 강서구	20	1	5	1	-	16	28	-
서울 구로구	4	10	-	-	-	25	35	6
서울 금천구	-	9	-	-	-	14	10	1
서울 영등포구	3	3	-	-	-	5	2	-

서울 동작구	7	2	2	-	-	34	15	1
서울 관악구	1	6	-	-	-	20	10	3
서울 서초구	19	1	4	-	-	28	16	2
서울 강남구	19	4	6	1	-	11	38	2
서울 송파구	13	7	1	-	-	26	25	-
서울 강동구	5	7	6	-	-	12	21	-
부산 중구	-	-	-	-	-	10	15	2
부산 서구	2	-	-	-	-	6	4	3
부산 동구	2	2	-	2	-	4	13	3
부산 영도구	-	1	-	-	-	4	1	4
부산 부산진구	8	1	-	-	-	6	20	21
부산 동래구	2	1	4	4	-	37	15	-
부산 남구	4	2	-	-	-	55	22	-
부산 북구	7	1	-	-	-	8	28	-
부산 해운대구	11	-	-	-	-	14	8	1
부산 사하구	3	-	7	-	-	45	26	-
부산 금정구	-	3	3	-	-	16	22	-
부산 강서구	3	-	5	-	-	27	9	3
부산 연제구	1	-	-	-	-	8	1	-
부산 수영구	6	4	-	-	-	22	33	-
부산 사상구	4	-	1	-	-	21	21	-
대구 중구	11	-	-	-	-	10	18	-
대구 동구	-	-	-	-	-	-	-	-
대구 서구	2	-	-	-	-	12	14	2
대구 남구	15	3	-	-	-	26	22	1
대구 북구	4	5	-	-	-	78	30	-
대구 수성구	-	-	-	-	-	-	-	71
대구 달서구	8	4	-	-	-	28	16	5
인천 중구	1	-	-	-	-	11	30	-
인천 동구	5	-	3	-	-	20	12	6
인천 남구	-	1	5	-	-	10	3	-
인천 연수구	16	1	2	2	-	12	6	-
인천 남동구	14	-	4	-	-	30	12	-
인천 부평구	7	-	1	-	-	32	37	-
인천 계양구	5	1	3	-	-	28	23	2
인천 서구	15	1	2	1	-	14	27	3
광주 동구	-	-	-	-	-	3	12	1
광주 서구	-	-	-	-	-	5	21	-
광주 남구	-	-	-	-	-	-	-	-
광주 북구	5	2	-	-	-	8	11	-
광주 광산구	5	-	-	-	-	7	10	1
대전 동구	3	-	-	1	-	2	3	-
대전 중구	4	-	2	-	-	3	2	-
대전 서구	1	-	6	2	-	13	4	-
대전 유성구	-	1	2	4	-	8	4	-
대전 대덕구	-	2	1	-	-	5	4	-
울산 중구	5	-	2	-	-	18	29	-
울산 남구	9	2	1	-	-	11	40	-

제3장. 민간위탁 현황 분석

울산 동구	-	4	-	-	-	23	23	-
울산 북구	3	2	-	-	-	30	27	-

주. 해당없음은 무응답으로 포함하여 합산



[그림 38] 낙찰자 선정방법(구단위,%)

- 자치구단위는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에 대하여 1,616건이 내부 산정이라 답하였고, 540건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있다고 답하였음.
- 다음으로 민간위탁사업의 원가정산 방법이 내부정산은 1,777건, 외부정산은 268건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성과평가 실시여부 대한 질문에는 1,305건이 실시한다고 답했고, 1,309건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429건은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고 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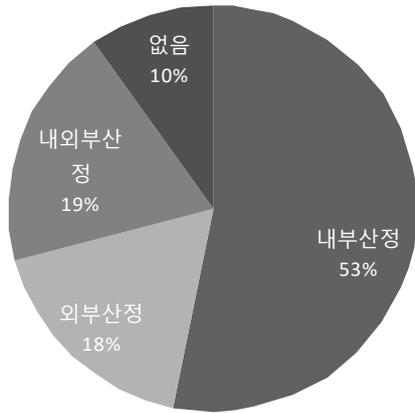
[표 26] 자치구단위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기준 및 서비스 평가 실시 여부

구분	민간위탁 원가산정 방법				민간위탁 원가정산 방법				성과 평가 실시 여부		
	내부	외부	내외부	없음	내부	외부	내외부	없음	실시	미실시	향후 추진
합계	1,616	540	587	301	1,777	268	714	285	1,305	1,309	429
서울 종로구	47	7	12	7	59	1	10	3	42	28	3
서울 중구	25	6	8	5	30	-	9	5	17	25	1
서울 용산구	29	6	9	1	26	8	10	1	15	29	1
서울 성동구	20	6	13	-	25	1	13	-	21	16	2
서울 광진구	8	3	2	-	11	-	2	-	8	-	5
서울 동대문구	21	2	3	-	17	6	3	-	11	11	4
서울 중랑구	26	5	-	2	26	2	5	-	11	19	3
서울 성북구	20	5	13	1	20	5	14	-	17	14	8
서울 강북구	45	3	21	1	46	1	23	-	50	17	3
서울 도봉구	26	2	1	3	20	2	5	5	20	9	3
서울 노원구	23	2	15	1	23	2	13	3	22	12	7
서울 오산시	21	10	14	2	26	5	15	1	30	15	2
서울 서대문구	32	3	3	5	33	1	4	5	17	7	19
서울 마포구	20	-	21	-	23	1	17	-	32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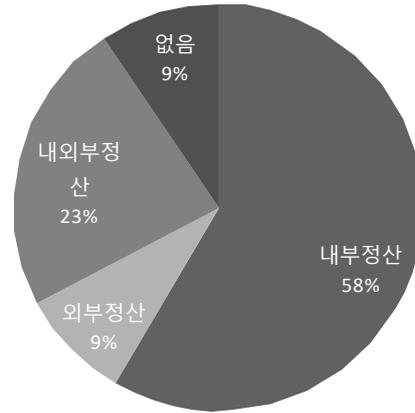
서울 양천구	33	-	8	2	32	-	11	-	15	27	1
서울 강서구	50	-	9	12	58	2	11	-	34	27	10
서울 구로구	47	19	9	5	52	3	20	5	35	28	17
서울 금천구	9	9	14	2	12	1	17	4	21	9	4
서울 영등포구	8	1	3	1	8	-	4	1	11	1	1
서울 동작구	29	7	18	7	31	4	22	4	40	17	4
서울 관악구	20	7	10	3	23	5	9	3	18	19	3
서울 서초구	38	9	20	3	38	7	22	3	31	25	14
서울 강남구	48	4	20	9	47	7	24	3	54	24	3
서울 송파구	43	8	19	2	36	3	32	1	40	23	9
서울 강동구	35	7	9	-	19	8	23	1	6	43	2
부산 중구	10	10	2	5	18	6	2	1	12	15	-
부산 서구	2	1	9	3	4	-	8	3	9	2	4
부산 동구	11	10	-	5	16	4	-	6	8	18	-
부산 영도구	5	1	3	1	5	1	3	1	2	4	4
부산 부산진구	19	20	8	9	24	19	8	5	16	31	9
부산 동래구	33	22	4	4	29	5	3	26	5	52	6
부산 남구	57	12	12	2	50	5	25	3	54	28	1
부산 북구	26	5	12	1	28	1	10	5	25	18	1
부산 해운대구	19	3	10	2	24	2	7	1	25	8	1
부산 사하구	52	14	8	7	61	3	2	15	41	37	3
부산 금정구	11	16	11	6	18	1	19	6	22	21	1
부산 강서구	18	10	13	6	19	5	18	5	19	23	5
부산 연제구	3	4	-	3	3	2	-	5	2	8	-
부산 수영구	28	13	6	18	26	7	10	22	29	35	1
부산 사상구	9	10	22	6	13	8	23	3	22	15	10
대구 중구	9	9	17	4	14	2	23	-	22	14	3
대구 동구	-	-	-	-	-	-	-	-	-	-	-
대구 서구	8	12	4	6	20	2	5	3	7	21	2
대구 남구	39	16	11	1	49	9	8	1	36	12	19
대구 북구	81	24	8	4	81	20	10	6	2	115	-
대구 수성구	-	-	-	71	-	-	-	71	-	-	71
대구 달서구	39	8	14	-	41	-	20	-	46	12	3
인천 중구	10	-	14	18	23	-	2	17	15	11	16
인천 동구	36	1	8	1	37	1	8	-	23	18	5
인천 남구	5	9	5	-	7	5	5	2	7	11	1
인천 연수구	18	3	15	3	28	1	9	1	12	21	6
인천 남동구	36	14	4	6	43	1	9	7	9	40	11
인천 부평구	25	27	18	7	36	14	24	3	22	49	6
인천 계양구	44	11	4	3	48	5	7	2	20	38	4
인천 서구	45	6	7	5	42	3	15	3	24	35	4
광주 동구	7	-	9	-	6	-	10	-	11	3	2
광주 서구	19	5	2	-	17	4	5	-	9	15	2
광주 남구	-	-	-	-	-	-	-	-	-	-	-
광주 북구	15	6	5	-	16	1	9	-	12	12	2
광주 광산구	4	9	4	6	11	8	3	1	12	9	2
대전 동구	4	5	-	-	4	5	-	-	1	8	-
대전 중구	2	2	5	2	6	-	4	1	3	8	-

제3장. 민간위탁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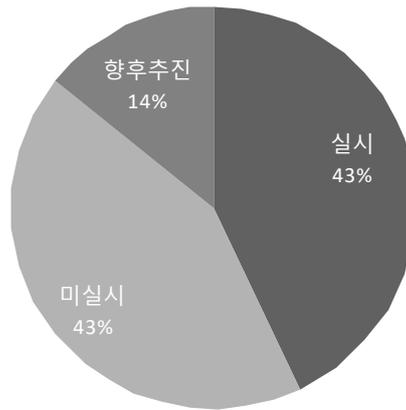
대전 서구	17	4	5	-	15	-	6	5	14	11	1
대전 유성구	12	7	-	-	9	3	7	-	-	1	18
대전 대덕구	4	5	-	3	4	5	3	-	9	3	-
울산 중구	33	16	3	2	44	3	4	3	21	30	3
울산 남구	28	20	12	3	32	11	17	3	36	25	2
울산 동구	29	17	2	2	31	12	7	-	-	-	50
울산 북구	21	22	17	2	34	9	18	1	23	22	17



|그림 39| 원가산정 방법(구단위, %)



|그림 40| 원가정산 방법(구단위, %)



|그림 41| 서비스(성과)평가실시 여부(구단위, %)

## 2절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제도 현황 분석

- 전국단위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중 가장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놓은 곳이 서울특별시임.
- 서울특별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관리지침 / 민간위탁 인사·노무·회계 등에 관한 지침 등 구체적인 제도가 구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제도 현황 분석으로 사례검토를 대체하였음.

### 1. 제도적 현황

#### 1) 민간위탁의 근거

- 현재 서울시의 민간위탁제도는 상위 법률이 없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제도가 운용됨.
- 서울시는 1999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는 민간위탁 사무의 구분기준과 내용, 민간위탁을 위한 일련의 절차와 방법,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등 개별 조례에서도 관련 시설과 서비스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음.

표 27 | 개별 조례상 민간위탁 관련 근거

구 분	내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3조 (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서울시는 또한 민간위탁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주요 운영규정을 담은 「민간위탁 회계기준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을 운용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민간위탁 개념,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유형, 민간위탁 추진절차 등을 포괄하고 있고, 「민간위탁 회계기준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에서는 예산·회계 기본 원칙, 예산 편성·집행·전용, 수입·지출, 세무, 회계처리기준, 계약, 물품관리, 노동, 임금지침 등을 구체화하고 있음.

2) 민간위탁의 개념 및 대상사무

- 민간위탁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공급하던 행정서비스를 정부를 대신해 민간주체가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 개념을 명시함.

표 28 |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개념

법규		개념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이러한 법률적 개념에 의거해 「민간위탁 조례」와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규정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복지시설 운영사무 등 8가지 사무를 대상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도 민간의 전문성을 높이는 사무 등 다양한 사무를 위탁사무로 예시함.

표 29 | 민간위탁 관련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예시

구분	내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①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②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③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④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⑤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⑥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⑦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⑧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⑨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① 물재생시설,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민간 주체의 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 ②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비영리 사회단체를 통해서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무 ③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민간이 운영할 경우 보다 활성화되는 사무 ④ 교량안전점검, 공사감리 등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검사 및 조사 등과 관련된 사무

- 민간위탁과 여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사무 수행방법들과 개념적 차이가 있으나, 실무적인 사무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는 못함.
- 외견상 유사해보이는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 여부에서 차이가 존재함. 사용수익허가와 민간위탁의 차이는 시적재의 공급인지, 공공서비스의 공급인지 여부임.

표 30 | 민간위탁과 유사개념의 차이점

유사개념	구분기준
보조사업	-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 지원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과의 협약을 통해서 위탁 운영
사용수익허가	-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를 받은 민간이 사적재를 공급함 -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공공서비스를 공급함
대행	- 대행은 명목과 책임이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됨 - 민간위탁은 명목과 책임이 수탁기관에 귀속됨
용역	- 용역은 주로 단순지원사무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함 -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함

자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018년 1월) 재구성

### 3) 민간위탁의 유형

- 민간위탁의 유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크게 예산지원형과 수익창출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예산지원형의 경우 다시 시설형 위탁과 사무형 위탁으로 구분함.

표 31 | 시설형 위탁과 사무형 위탁

구분	내용
시설형 위탁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임 -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에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하는 협약 체결 등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함 - 시설형 위탁의 운영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동시에 적용함
사무형 위탁	- 시설의 운영이 아닌 사무만을 민간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위탁 유형을 의미함 - 사무형 위탁 사무의 대표적인 예로는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영 등이 있음
수익창출형 위탁	- 시의 예산지원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 -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기는 하나 시설의 유지보수,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함 - 수익창출에는 대부분 시설의 위탁이 수반되므로, 인센티브의 지급과 근거법령 등은 시설형 위탁과 동일하게 적용함

4) 민간위탁 추진절차

- 민간위탁 추진절차는 신규 대(對) 재위탁·재계약 등 위탁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임. 신규 민간위탁(공모 방식)의 경우에는 사전조사에서 사후관리까지의 절차에 입각해 추진됨.



그림 42 | 민간위탁 추진절차 : 신규 민간위탁사업(공모방식)

- 다만, 수의계약에 의한 신규위탁은 별도의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구성 없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시행사무 및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함께 심의함.
- 재위탁·재계약 추진절차는 신규위탁의 추진절차와 대부분의 측면에서 일치하나,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함. 공모 방식에 의한 재위탁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절차가 없으며, 수탁 적격자 선정심의를 절차만 이행함. 재계약의 경우에는 먼저 재계약 적격자 심의를 거친 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와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를 이행함.

표 32 | 민간위탁 추진절차

구분	신규위탁(공모)	신규위탁(수의)	재위탁(공모)	재위탁(수의)	재계약
사전조사 (주관부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운영사례, 수탁가능업체 등 사전조사		민간위탁의 지속 필요성, 공개경쟁 가능성, 수탁가능업체, 재계약 가능여부 등 사전조사		
추진계획 (주관부서)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재계약 적격자 심의 (주관부서)					적격자 심의위원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시행사무와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의회 동의 (주관부서)	시의회 동의		상임위 보고		
			의회 동의 후 7년 경과마다 동의		
예산편성 (주관부서)	시의회 의결				

수탁기관 선정 (주관부서)	적격자 심의위원회		적격자 심의위원회	
비용심사 등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비용심사(계약심사과) 협약서심사(법률지원담당관)			
협약체결 (주관부서)	위탁협약 체결			
사후관리 등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소통공유방,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등록,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			

자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018.01)

### 5) 민간위탁 심의체계

- 민간위탁 심의체계는 크게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심의회와 수탁기관 선정심의로 구분됨.
-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심의회는 선정심의회 의뢰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 심의결과 통보의 순으로 진행함. 주관부서는 심의 의뢰 사무의 민간위탁 필요성, 위탁 내용 및 추진계획 등이 담긴 심의 의뢰서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의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위탁의 법적 개념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함.
- 심의결과는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보류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통보함.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된 경우, 주관부서는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건 미이행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함.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하였으나 위원회의 별도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검토 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 시행 사무의 선정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규정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현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7인(행정학 4인, 법조인 2인, 복지 1인), 시의원 1인, 공무원 4인, 시민단체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됨.

표 33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관련 조례

구 분	내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 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신규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사전 심의,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 적정성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표 34 | 연도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현황

연도	차수	심의건수			
		소계	신규	재위탁	재계약
2018년	제1차	4	1	0	3
	제2차	16	2	0	14
	제3차	3	0	0	3
	제4차	7	0	0	7
	제5차	11	7	0	4
	소계	0 (100%)	0 (24.4%)	0 (0.0%)	0 (75.6%)
2019년	제2차	12	5	1	6
	제4차	20	14	0	6
	제5차	16	1	0	15
	제6차	22	13	0	9
	제7차	40	11	0	29
	소계	0 (100%)	0 (40.0%)	0 (0.9%)	0 (59.1%)
2020년	제1차	12	3	6	3
	제6차	11	3	4	4
	제9차	3	0	0	3
	소계	0 (100%)	0 (23.0%)	0 (38.5%)	0 (38.5%)
총계		584 (100%)	208 (35.6%)	13 (2.2%)	363 (62.2%)

자료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서울시 공개자료)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의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신규위탁이나 재위탁 심의보다는 재계약 심의를 주로 수행함. 매년 2~9회 정도 심의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심의안건은 2020년이 26건으로 가장 적고, 2019년이 110건으로 가장 많음. 세부적인 심의안건을 살펴보면 신규위탁 208건(35.6%), 재위탁 13건(2.2%), 재계약 363건(62.2%)으로 나타남.
- 시행사무 선정 시 심의방법으로는 제출된 심의의뢰서의 내용을 토대로 민간위탁의 법적 개념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함.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해 위원과 주관 부서 담당자의 토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함. 심의 결과는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보류로 결정되는데 대부분 적정 혹은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민간위탁 심의체계의 다른 한 축인 '수탁적격자 선정심의'는 해당사무의 담당부서 주관하에 개별 위탁사무별로 운영됨. 현재 수탁적격자 선정심의는 공개모집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선정심의를 절차는 공개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등의 과정으로 진행됨.
- 이와 같은 수탁적격자 선정심의를 위해 서울시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적격자 선정심의를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산 기준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이 회의를 참관함.
-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사업 주관부서의 재량사항으로 부서마다 위원의 선정방법과 평가기준에 차이가 있음.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련 중앙부처, 직능단체, 대학 등에 추천을 요청하거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풀을 활용하여 구성함.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평가 기준은 조례와 지침에서 제시된 예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 대상 사업별로 적합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평가함.

[표 35] 서울시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항목 예시

구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 (실적) 경영상태 (재정부담 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공신력, 책임능력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정성적 평가분야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가치 기여도 종사자 고용안정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0
가격평가			20
계			100

자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018.01)

- 수탁적격자 심의는 크게 '기술적 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대별되며, 이 가운데 기술능력은 다시 정량적·정성적 평가로 구분됨. 정량적 평가는 주관부서의 담당자가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공신력, 책임능력) 등을 계량화하여 평가함. 정성적 평가는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대상 기관의 전문성, 사업수행계획,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가함.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며,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적격자 선정을 위한 별도 평가지표를 활용함.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제 선정 공통기준」(2016.12)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표체계를 마련함. 신청법인의 공신력, 법인의 재정능력, 법인의 사업능력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심의항목별 세부 평가지침도 함께 운영 중임.

[표 3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적격자 심의지표

심의기준	심의항목	배점
신청 법인의 공신력 (30점)	-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 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정도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수준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30점
법인의 재정능력 (20점)	-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수입재원 확보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20점
법인의 사업능력 (50점)	-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수준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50점

### 제3장. 민간위탁 현황 분석

■ 자치구의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유사하나, 몇 가지 규정에서 차이를 보임. 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자치구 민간위탁 조례나 별도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됨. 이에 따라 수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또한 자치구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공무원인 위원 수의 제한 규정을 전체의 1/2 이내로 적용하고 있는 자치구가 15곳(60.0%)으로 가장 많고,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4곳(16.0%) 존재함.

표 37 | 자치구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도

자치구	위원 수	위원장 선정방식	공무원 위원 수 제한	관련 근거 조례
강남구	9명 이내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제한규정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 준용”을 명시
강동구	9명 이내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제한규정 없음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강서구	9명 이내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제한규정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관악구	5~9명	위원회에서 선출	제한규정 없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광진구	9~13명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	1/4 이내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노원구	6~9명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	1/4 이내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도봉구	9명 이내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1/3 이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9명 이내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제한규정 없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작구	9명 이내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제한규정 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초구	9명 이내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1/2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 준용
성동구	9명 이내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제한규정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성북구	9명 이내	부구청장	1/2 이내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송파구	9명 이내	전체 위원 중 호선	2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양천구	9명 이내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2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7~9명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1/3 이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오산시	7~9명	외부위원 중 호선	제한규정 없음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중랑구	7~9명	전체 위원 중	제한규정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격자 평가지표는 서울시가 작성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제 선정 공통기준」(2016.12)의 평가항목을 거의 준용하여 운영 중임. 평가항목 구성 시 자치구별로 약간의 수정·변경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표 38|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적격자 심의지표

심의기준	심의항목	배점
신청 법인의 공신력 (30점)	-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 사업 내용이 해당 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정도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수준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30점
법인의 재정능력 (20점)	-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수입재원 확보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20점
법인의 사업능력 (50점)	-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수준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50점

- 마지막으로 수탁적격자 선정 심의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 주관부서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와 선정 결과를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협약의 체결 관련)함.

## 6) 민간위탁 평가체계

- 현재 민간위탁 평가체계는 매년 실시하는 지도·점검과 계약기간 내에 실시하는 종합성과평가의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함.
- 지도·점검은 모든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사업의 주관부서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함. 지도·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방식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일반운영' 분야와 '성과점검'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함. '일반운영' 분야는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운영성과' 분야는 협약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 대비 달성률로 평가함. 공통지표는 주로 회계관리 및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중심을 이루고, 개별지표는 시민과 전문기술 관련 점검항목으로 구성됨.

|표 39| 지도·점검

구분	평가항목		세부지표
일반운영분야	공통	회계관리	민간위탁금 관리, 수입금 관리, 후원금 관리 등
		고용	인사관리, 복무관리, 급여관리 등
	개별	시민	시민만족도 조사, 정보공개, 의사소통 등
		전문기술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등

제3장. 민간위탁 현황 분석

운영성과분야	투입	인력	인력의 적정성, 적정 인력 투입
		자원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설/기자재 활용의 적절성 등
	과정	준수성	사업계획 이행 여부, 서비스 및 업무 과정 기록의 충실성 등
		노력성	지역사회 내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연계 등
	산출	사업성과 달성	사업별 성과 달성률
		미달 시 조치	사업성과 미달(60% 미만), 사업의 조치절차 관련
활용	피드백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지난 평가 수정사항 반영 여부 등	

자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018.01)

- 지도·점검 평가결과는 위탁부서에 의한 수탁기관 지도에 활용하며, 이행 여부를 종합성과평가에서도 활용함.
- 종합성과평가는 지도·점검과 연계하여 운영하되,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를 대상으로 위탁기간 내에 1회 실시함. 종합성과평가는 조직담당관(민간위탁팀)이 주관하며, 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 이를 위해 민간위탁 팀은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함.

2018년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내실있는 평가를 추진할 목적으로 해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함.
- 「2018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2018.02)의 내용은 크게 추진개요, 과거의 추진결과, 2018년 추진계획, 세부 운영계획, 행정사항으로 구성됨. 2018년 종합성과평가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 47개 사무에 대하여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에 걸쳐서 실시함.

구분	1차	2차	3차
사무 수	11개	28개	8개
위탁만료일	2018.11.30.	2019.02.28.	2019.05.31.

- 2018년 종합성과평가의 주요개선사항으로는 협약체결 시 성과목표·지표 사전 설정, 현장성을 고려한 실무 전문가의 평가참여, 평가지표 중 일부 수탁기관에 국한된 불합리한 지표의 개선 등이 있음.

- 종합성과평가에 활용되는 평가체계는 크게 공통분야(35점), 개별분야(50점), 사용자만족도평가(15점)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공통분야'는 조직 및 인력의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계획 집행수준 등 수탁기관에 공통으로 부여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함. '개별분야'는 사업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지도점검 이행노력 등 사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를 평가함. '사용자 만족도 평가'는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수탁기관의 만족도 제고 노력 등을 전화조사 방식으로 평가함.
- 종합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도 조례와 규정의 지침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 현재 서울시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있음. 공개대상 정보에는 평가의 기간·대상·내용 등의 평가개요와 평가결과, 평가대상 사무의 주요 성과 및 개선과제 등을 포함함. 2017년 제2차 종합성과평가부터 기존의 개별 사무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대상 사무들의 평균 점수만을 공개함.

표 40 | 조례와 지침에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공개 관련 규정

구 분	내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종합성과평가)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① 수탁적격자 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에 활용하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와 재계약 심의 절차 등에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공 기준으로 활용함.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며,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불량(전체 배점의 60% 미만)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해 재계약 절차에서 배제됨.

표 41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유형별 평가영역 및 지표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사무형	시설형	중간지원 조직형
공통 사무 (35)	사업인프라	조직 및 인력 운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	○	○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	○	○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	○	○
			의사소통 노력도			○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재정적인 부담능력	○	○	
			민간위탁금 관리의 투명성			○
			경제적 효율성	○	○	○
		자원운영 및 사회적가치 기여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	○	○
			물품구매 시 지역가치 기여노력	○		○
			시설 및 기자재 활용		○	
			지역 민간전문가 활용노력	○		
		사업활동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	○	○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	○	○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도	○	○	○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	○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사업 연계			○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	○	○
개별 사무 (50)	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		공통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사무별 업무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성과목표의 적정성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사용자 만족도 (15)	만족도 제고노력	CS조사결과 점수 (면접 및 전화조사)
		CS시스템, 시민만족도 제고노력

자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서울특별시(2016)

## 2. 서울시 민간위탁제 민간위탁 기초현황 및 추세

### 1) 서울시 민간위탁제도 경과

- 2013년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내에 '민간위탁팀'이 설치된 이래 본격적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2014년 「민간위탁 종합개선계획」을 추진하여 민간위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서울형 민간위탁의 기준을 수립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기준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 위탁사무의 구분기준을 마련함.
- 위탁기간 연장(3년→5년)을 통한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종사자 근로여건과 처우개선 평가 등을 통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모색하였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민간위탁 참여 확대를 위해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실적기준을 완화하고 가산점을 부여함.
- 이 시기에 정보공개,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민간위탁 평가·관리체계도 도입함. 민간위탁 공고와 수탁자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대외 공개함.
- 기존의 수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 종합성과평가로 대체하고, 표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성과중심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시 페널티를 적용함. 이외에도 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운영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모색함.
- 2015년에 들어서는 '회계감사'를 도입하는 한편 '종합성과평가'도 처음으로 실시함. 위탁 사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무에 대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부서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 36개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사무 개선에 활용하고 재계약 적정성 심의에도 반영함.
- 2016년에는 「민간위탁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위탁 종합개선계획」 추진 이후의 민간위탁제도 운영상의 한계점을 보완함. 수탁기관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해 고용유지·승계 의무를 명시하는 등 수탁기관 종사자의 권리를 강화함. 장기수탁(10년 이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에서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함.
- 2017년에는 「민간위탁 제도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위탁 혁신계획」시행 이후 시의회 감사 등 각종 감사 지적사항과 민간위탁 거버넌스 등 의견청취 사항을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한 세부 개선방안을 모색함.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과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기준 마련 등 민간위탁의 불합리한 운영기준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수탁기관 종사자 상근의무 및 겸직제한 신설 등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방안도 모색함. 수탁기관 근로자 보호 지침 마련과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시정 핵심가치의 확산을 추진함.
- 2018년 6월에는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개정계획」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지침과 현행 민간위탁 상위법령 및 기준의 정합성 확보를 도모함.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를 협약체결 단계에서 사전에 확정하도록 개선함. 현행 종합성과평가는 평가지표를 사후(위탁사무 종료 90일 전)에 설정함에 따라 수탁기관이 성과를 달성한 부분에 평가항목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 위탁사무 평가지표를 협약체결 단계에서 사전에

확정하도록 개선하여 합리적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토록 보완함. 실무에서 고용 계약 시 법인격이 없는 센터 등의 명의로 종사자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잘못된 경우가 있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와 위·수탁 협약서상 수탁자의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지침에 명확히 규정함. 민간위탁 재계약 시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를 거친 후,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위원회 운영절차와 기능을 일원화함.

## 2) 민간위탁사무 규모 및 추세

-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건수 및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건수는 368건, 예산은 8천 5백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임. 사업건수는 2013년 대비 2018년 10% 증가하였고, 예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늘어나 1조원을 상회하다가 2017년 6천억원대로 줄었음.

|표 42| 민간위탁사업 사업건수 및 예산

구분	연도						평균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사업건수	345	361	358	360	380	406	368
예산	100,730	100,901	103,604	64,176	75,256	61,956	84,437

자료 : 서울시 민간위탁현황자료

- 민간위탁사업 위탁횟수는 1회가 24.2%로 가장 많았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사업건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반면, 7회 이상 장기 민간위탁은 16%(61건)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표 43| 민간위탁사업 위탁횟수 현황

구분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이상
사업건수	380 (100%)	92 (24.2%)	59 (15.5%)	51 (13.4%)	40 (10.5%)	45 (11.8%)	32 (8.4%)	24 (6.3%)	13 (3.4%)	13 (3.4%)	5 (1.3%)	6 (1.6%)

- 민간위탁 위탁기간은 5년에서 15년 미만이 전체의 절반 정도(43.7%)를 차지함. 특히, 15년 이상의 위탁은 전체의 29.5%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위탁의 비중도 상당부분 존재함을 확인함.

|표 44| 민간위탁사업 위탁기간 현황

구분	계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25년 미만	25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 35년 미만	35년 이상 ~ 40년 미만	40년 이상
사업건수	380 (100%)	52 (13.7%)	50 (13.2%)	89 (23.4%)	77 (20.3%)	49 (12.9%)	30 (7.9%)	14 (3.7%)	13 (3.4%)	3 (0.8%)	3 (0.8%)

### 제3장. 민간위탁 현황 분석

■ 민간위탁사업의 위탁형태는 재계약이 42.1%로 가장 많고, 다음은 재위탁(38.4%), 신규위탁(19.5%)순으로 나타나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모방식이 91.8%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45 |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방법 현황

구분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		계
	공모	수익	공모	수익	공모	수익	
위탁형태	74 (19.5%)		146 (38.4%)		160 (42.1%)		380 (100%)
수행방식	59 (15.5%)	15 (3.9%)	132 (34.7%)	14 (3.7%)	158 (41.6%)	2 (0.5%)	

■ 서울시 민간위탁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사업건수를 기준으로 예산지원형이 사업건수의 92.6%(352건), 예산의 99.0%를 차지함. 수익창출형은 사업건수의 7.4%, 예산의 1.0%를 차지함. 예산지원형 중에서는 사업건수 기준으로 시설이 58.7%, 사무가 31.3%, 시설/사무가 2.6%를 차지하고, 예산 기준으로 시설이 75.5%, 사무가 21.4%, 시설/사무가 2.1%를 차지함.

표 46 | 민간위탁사업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계
	시설	사무	시설/사무	소계		
건수	223 (58.7%)	119 (31.3%)	10 (2.6%)	352 (92.6%)	28 (7.4%)	380 (100%)
예산	56,796 (75.5%)	16,133 (21.4%)	1,572 (2.1%)	74,505 (99.0%)	751 (1.0%)	75,256 (100%)

■ 민간위탁 분야별 현황을 보면, 2018년 사업건수를 기준으로 가족교육, 보건복지의 사회복지 분야가 각각 32.9%, 2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예산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24.7%), 환경수자원(21.9%), 가족교육(16.8%)순으로 나타남.

표 47 | 민간위탁사업 분야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가족교육	기획경제	도시교통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행정자치	환경수자원	계
사업건수	125 (32.9%)	58 (15.3%)	35 (9.2%)	21 (5.5%)	109 (28.7%)	7 (1.8%)	25 (6.6%)	380 (100%)
예산	12,667 (16.8%)	12,451 (16.5%)	10,994 (14.6%)	3,288 (4.4%)	18,580 (24.7%)	775 (1.0%)	16,498 (21.9%)	75,256 (100%)

### 3절 오산시 민간위탁 운영 현황

#### 1. 오산시 민간위탁 총 현황

■ 오산시 기 민간위탁 사무는 14개 부서 82개 사무이며, 위탁 예정 사무는 3개 부서 3개 사무(노인장애인 과 2개 / 농축산정책과 1개)로 현재 위탁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48 | 오산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현황 - 2021. 6. 기준

연번	위탁사무/시설명	소관부서	수탁기관	계약기간	위탁방식
1	오산시청 어린이집 운영	자치행정과	개인	3년	공개모집
2	오산종합사회복지관	희망복지과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3년	공개모집
3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희망복지과	사단법인 오산예일	5년	공개모집
4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희망복지과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	5년	공개모집
5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노인장애인과	오산대하교 산학협력단	4년 7개월	공개모집
6	오산남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노인장애인과	사단법인 오산예일	5년	공개모집
7	오산은빛사랑채 운영	노인장애인과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4년 6개월	공개모집
8	오산남부은빛사랑채 운영	노인장애인과	사단법인 오산예일	5년	공개모집
9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	5년	공개모집
10	우산세교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	5년	공개모집
11	오산노인종합복지관 및 실버케어센터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	5년	공개모집
12	오산세교은빛사랑채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	5년	공개모집
13	오산시보조기기수리센터	노인장애인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오산시지회	2년	공개모집
14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가족보육과	오산대하교 산학협력단	5년	공개모집
15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가족보육과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5년	공개모집
16	시립금바위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금바위 사회적협동조합	4년 2개월	공개모집
17	시립꽃다리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3년	공개모집
18	시립나리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2개월	공개모집
19	시립남부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20	시립매홀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2개월	공개모집
21	시립미래클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2년 2개월	공개모집
22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사단법인 아이길벗	4년 2개월	공개모집
23	시립비둘기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2개월	공개모집
24	시립삼미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2개월	공개모집
25	시립세교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세교꿈터사회적협동조합	4년 2개월	공개모집
26	시립세마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2개월	공개모집
27	시립수청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4년 2개월	공개모집
28	시립가온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29	시립예일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대한예수교장로회오산장로교회	4년 2개월	공개모집
30	시립오산숲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5년	공개모집

제3장. 민간위탁 현황 분석

연번	위탁사무/시설명	소관부서	수탁기관	계약기간	위탁방식
31	시립오산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원불교 오산교당	4년 2개월	공개모집
32	시립오산자이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7개월	공개모집
33	시립은빛어린이집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34	시립은여울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2년 2개월	공개모집
35	시립잔다리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2개월	공개모집
36	시립죽미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37	시립청호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2년 2개월	공개모집
38	시립초록별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같이가치 사회적협동조합	4년 2개월	공개모집
39	시립푸른숲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40	시립한신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1년 11개월	지정위탁
41	시립오산세교복지관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3년	공개모집
42	시립세교호반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더키움 사회적협동조합	5년	공개모집
43	시립세교자이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44	시립아이행복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45	시립자연숲파복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46	시립자이꿈미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양일교회	5년	공개모집
47	시립시티자이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아이자람 사회적협동조합	5년	공개모집
48	시립푸르지도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49	시립세교행복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50	시립청호행복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51	시립한아름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52	시립정학행복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5년	공개모집
53	시립파크시티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3개월	공개모집
54	시립운암6단지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2년 1개월	공개모집
55	시립시티자이3단지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2개월	공개모집
56	시립오산대역센터럴시티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3개월	공개모집
57	시립번개뜰어린이집 운영	가족보육과	개인	4년 11개월	공개모집
58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아동청소년과	사단법인 오산예일	5년	공개모집
59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아동청소년과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3년	공개모집
6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아동청소년과	오산청년회의소	3년	공개모집
61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운영(국가위임사무)	아동청소년과	행복한이주민센터	5년	공개모집
62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운영	아동청소년과	법무부법사랑위원 오산지구협의회	3년	공개모집
63	오산시함께자람센터1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유림사회적협동조합	4년 4개월	공개모집
64	오산시함께자람센터2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유림사회적협동조합	4년 4개월	공개모집
65	오산시함께자람센터3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자람사회적협동조합	4년 9개월	공개모집
66	오산시함께자람센터4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글로벌사회적협동조합	4년 9개월	공개모집
67	오산시함께자람센터5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자람사회적협동조합	4년 9개월	공개모집
68	오산시함께자람센터6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유림사회적협동조합	4년 6개월	공개모집
69	오산시함께자람센터7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유림사회적협동조합	4년 6개월	지정위탁

연번	위탁사무/시설명	소관부서	수탁기관	계약기간	위탁방식
70	오산시함께자람센터8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유림사회적협동조합	4년 11개월	지정위탁
71	오산시함께자람센터9호점 운영	아동청소년과	유림사회적협동조합	4년 9개월	지정위탁
72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일자리정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오산지역본부	3년	공개모집
73	오산오색시장고객지원센터 운영	지역경제과	사)오산오색시장상인회	3년	공개모집
74	유엔군초전기념관 운영	문화예술과	대한민국상이군경오산지회	2년	공개모집
75	체력인증센터 운영(국가위임사무)	체육관광과	사)오산스포츠클럽	3년	공개모집
7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위생과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	5년	공개모집
77	현수막게시대 운영	건축과	사)오산시광고협회	3년	공개모집
78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건축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3년	공개모집
79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건축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3년	공개모집
8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건강증진과	행복주는 의원	3년	공개모집
81	오산시하수처리수재이용 시설운영	하수과	미래환경기술(주)	3년	공개모집
82	맑음터공원체육시설 운영	공원녹지과	오산시체육회	3년	공개모집

## 2. 오산시 민간위탁 계약기간

- 오산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4년~5년이 가장 많으며, 이는 대부분 어린이집 운영사무 및 복지관 운영과 같은 사회복지 분야임.

표 49 | 오산시 민간위탁 계약기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합계
계약기간	1	6	16	29	30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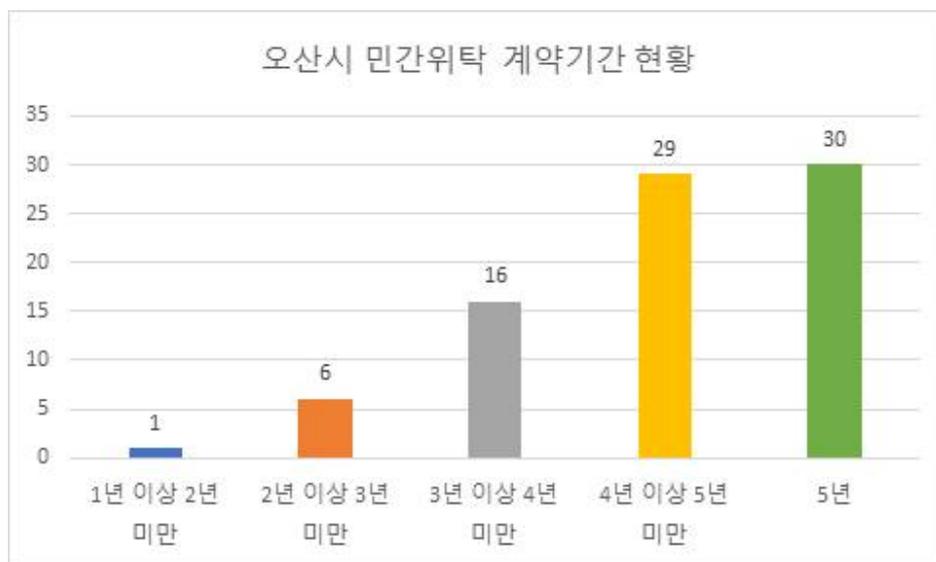


그림 43 | 오산시 민간위탁 계약기간 현황

### 3. 오산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기준

- 오산시는 총 82개의 사무 중 78개 사무에 대해 공개경쟁입찰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 그 외 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표 50| 오산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기준

단위 : 건

구분	공개입찰	지정 및 수의계약	합계	비고
선정기준	78	4	82	



|그림 44| 오산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기준

CHAPTER

IV

#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 04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 1절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검토 기준

### 1.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검토 기준

- 오산시 민간위탁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검토하였음.
- 본 연구소에서 제안하는 협치형 민간위탁 관리모델과 오산시의 의견을 종합하되, 관련 법률과 상위기관 지침에 적합한 방안을 기준으로 하여 제안하였음.

표 51 |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검토 기준

순번	구분	검토 기준	비고
1	관련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li> <li>■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li> <li>■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li> <li>■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li> <li>■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li> </ul>	적법 여부 검토
2	상위 기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li> <li>■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li> <li>■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li> <li>■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li> <li>■ 행정안전부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li> <li>■ 민간위탁 제도개선 방향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19.02)</li> <li>■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li> </ul>	개선사항 도출 및 적법 여부 검토
3	타 연구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제도개선 관련 연구 문헌</li> </ul>	개선사항 도출
4	본 연구소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연구기관 민간위탁 관리 모델</li> </ul>	개선사항 도출

### 2. 주요 지침 내용

#### 1) 행정안전부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는 협치형 민간위탁을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하는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한 후 해당 사무에 대한 운영 지침을 배포하였음.
- 단, 중간지원조직에 한정된 지침으로 타 민간위탁 사무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검토하였음.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표 52 | 행정안전부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순번	항목	권고사항	비고
1	사전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기준은 물론 하단의 협치형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검토 필요</li> <li>- 사무의 주된 기능이 주민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주민 모임 포함)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와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는 등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지원 하는 것에 있는지</li> <li>- 자치단체가 수탁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민간주체들과 협업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무인지</li> </ul>	
2	위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수탁기관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위탁기간(5년)”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장</li> </ul>	
3	위탁비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지방계약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가져다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li> <li>■ 다만,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협치방식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협치형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을 것을 권고</li> </ul>	
4	민간위탁 수행사무 적정성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에 기반한 민간위탁 관리 및 협치형 민간위탁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운영성과 평가제(정기적(매년·격년 등) 또는 재계약시)를 도입할 것을 권고</li> <li>■ 기본조례에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 권장</li> </ul>	
5	지방의회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치형 민간위탁은 민간의 노하우, 전문성,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민간위탁 방식이므로 지역사회 변화 등에 대한 기대효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충실한 안건 설명 필요</li> </ul>	
6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 위탁수수료 및 일반관리비를 민간위탁예산에 포함하여 운영 권장</li> </ul>	
7	수탁기관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우선 고려(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li> <li>■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고려(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li> </ul>	
8	수탁기관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기준 및 배점 등 공개 및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권장</li> </ul>	
9	위수탁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 고용 및 고용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권장</li> <li>■ 위탁기관(사업부서)과 수탁기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작성하고 변경 역시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것을 권장(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한 충분한 협상기한 부여 등)</li> <li>■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함에도 수리비용을 수탁기관에 부담시키는 일부 사례 발생, 법 규정 준수 요망</li> </ul>	
10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치형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은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주민 모임 포함)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와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는 등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에 있으므로 ① 거버넌스 구축도, ② 민간주체에 대한 지원 노력도, ③ 사회문제 해결도 등을 가중해서 평가하는 별도 지표를 개발·활용할 것을 제안</li> </ul>	

2)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음.

표 53 |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순번	항목	권고사항	비고
1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 권고</li> <li>■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위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li> <li>-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li> <li>-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li> </ul> </li> </ul>	
2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제출</li> <li>■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노력 명시</li> <li>■ 평가계획서 등에 수탁기관 선정기준으로 고용 승계, 합리적 임금 수준 지급 등의 항목 명시 등</li> </ul>	
3	계약체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노력 명시</li> <li>■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 기간 설정 명시</li> <li>■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 내용 명시</li> <li>■ 위수탁 기관간 소통 창구 마련 및 운영 내용 명시</li> <li>■ 사업비 지출의 투명성(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등 노무비 지급내역 관련 정보 확인) 내용 명시</li> <li>■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제출 내용 명시</li> <li>■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지도점검에 협조</li> <li>■ 노동3권 제약 내용 금지</li> </ul>	
4	재계약 및 위탁계약 해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한 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명시</li> <li>■ 위탁기관의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명시</li> <li>■ 수탁기관 평가계획서 등에 중대한 계약 사항 불이행 시 감점 내용 명시</li> <li>■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비협조적인 수탁기관 감점</li> </ul>	
5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근로조건 관련 협약 내용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 지도 관리</li> <li>■ 관리감독에 비협조적인 수탁기관에 대해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감점 부여 등의 패널티 명시</li> </ul>	

## 2절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안)

### 1. 사전 적정성 검토

#### 1) 현 오산시 기준

- 현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이 부재함.
- 이에 따라 사전 적정성 검토에 관한 조례 개정과 함께 적정성 검토 기준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 개선(안)

- 2단계에 걸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기준이 적정하다 검토되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추가하여 적정성 검토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표 54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기준 총괄

단계	구분	검토 사항	비고
1단계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 사용수익허가, 보조사업, 대행 등 유사개념과의 구분 검토</li> <li>■ 「오산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8조(개정안)에 의거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행의 '권한' 및 '책임' 소재, '법률효과' 등 민간위탁의 법적 성격에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li> <li>- 사회 및 공익서비스 분야 등 공공성이 강한 사무는 법령의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위탁 추진</li> </ul> </li> </ul>	
2단계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지에 대한 적정성 분석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성 측면 : 대상사무의 중요성, 서비스 수혜대상 범위, 공급서비스의 지속성, 서비스 중단 시 과급효과 등</li> <li>■ 효율성 측면 : 민간의 전문성 정도, 경제적 효율성,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li> </ul>	

#### (1) 1단계 검토

- 1단계 검토의 목적은 유사사무와 구분되는 민간위탁 사무로의 적합성 구분이 목적인.
- 아래의 6개 평가 기준 중 한 개 기준이라도 적정하지 못하면 해당 유사 사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2단계 분석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1단계 분석에서 유사 사무로 분류됨.

표 55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기준 : 1단계

구분		분석 내용
1	오산시 소관사무	-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 ☞ 보조사업 :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지원하는 사업
2	공공·공익성	-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對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단,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바람직함 ) <b>☞ 사용수익허가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기대하여 행정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적재 공급으로서의 수익활동을 하는 것</b>
3	非권리성·의무성	-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일 것
4	능률성·전문성 / 지속성·포괄성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적절 - 행정서비스 공급이 장기·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급서비스의 전체과정이나 핵심적인 부분을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 적절 - 상시지속판단기준 : 연중 9 개월 이상 계속 , 향후 2 년 이상 예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 및 실태조사 설명자료 <b>☞ 용역 : 단순 지원사무이거나 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에 적절</b>
5	경쟁가능성	-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원리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적합 <b>☞ 공공위탁 : 수탁기관 선정시 경쟁원리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공공성이 커서 경쟁원리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적절</b>
6	책임성	- 민간위탁은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b>☞대행 : 행정기관이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실무를 대행기관이 행하게 하고 그 법률 효과는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b>
판단 기준		- 상기 6개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경우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

(2) 2단계 검토

- 1단계 검토의 목적은 민간위탁으로의 추진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분임.
- 1단계에서 부합하다고 판단된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을 실시하며, 공공성 판단(법규정, 서비스 중요성, 서비스 수혜대상,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타당성 판단(기술적, 사례적, 정책적, 서비스 공급 가능성), 효율성 판단(민간의 전문성 활용, 서비스 질 개선, 인력 /조직의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거버넌스 용이성, 성과측정 용이성, 사회적가치 창출성) 등 15개 기준에 의해 분석틀을 구체화하였음.
- 단, 개별사무의 여건과 정책적 방향에 따라 모든 사무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래의 15가지 지표 중 10가지 지표를 선별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
-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 판단 기준은 다음에서 다름.

표 56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기준 : 2단계

구분		분석 내용
공공성 판단	법규정	■ 해당 사무 수행과 관련된 근거 법령 및 지침의 존재
	서비스 중요성	■ 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서비스 수혜대상	■ 공급서비스의 수혜대상이 특정 목적의 한정적인 시민인지, 불특정 지역생활권의 시민인지 또는 전 시민인지 등 서비스 수혜대상 시민의 범위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중단가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 (상시지속판단기준 : 연중 9 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예상)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타당성 판단	기술적 타당성	■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의 효율성 증대 여부 등
	사례적 타당성	■ 국내 민간위탁 수행 사례 존재 유무
	정책적 타당성	■ 정책적 필요성 및 시급성,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및 기여도 등
	서비스 공급 가능성	■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 (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시장이 존재하고, 경쟁업체들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효율성 판단	민간의 전문성 활용	■ 효율적인 사무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술적 (시설, 인력, 보유 기술) 측면에서 전문성 활용 정도 등
	서비스 질 개선	■ 민간부문의 전문성 정도, 민간의 창의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예상효과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가능성 등
	인력 /조직의 효율성	■ 민간부문의 운영관리 고용의 탄력성, 신속한 대응가능성 등
	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 (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 정도 등
	거버넌스 용이성	■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관-시민-의회 등 유관 단체 및 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거버넌스 창출 가능성 등
	성과측정 용이성	■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의 설정과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등 성과가 가시적인 편이어서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적가치 창출성	■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구현 가능성 등
판단 기준		■ 개별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기 15개의 지표 중 10가지 지표를 선별하여 총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의 사무를 민간위탁 적정 사무로 판단

- 직영으로 갈수록 1점을 부여하고, 민간 위탁으로 갈수록 5점을 부여하게 되는 기준임.
- 앞에서 검토된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기준에 따라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모두 감안하며, 항목별 배점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최종 운영형태를 도출하게 됨.
- 본 연구에서는 분석 점수 배점 평가가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의 한계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사례, 해외 사례, 유사 수행 연구 사례 등을 통하여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점 기준을 제안하였음.
- 구체적인 배점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57]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분석 점수 기준표

구분		분석 기준				
		1점	2점	3점	4점	5점
공공성 판단	법규정	해당사무 근거법령 or 지침 無	-	해당사무 근거지침 有	-	해당사무 근거법령 有
	서비스 중요성	공공성 매우 높음 (예: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공공성 다소 높음 (예:재난안전, 근로자복지)	공공성 보통 (예:관광활성화,사 회적경제)	공공성 다소 낮음 (예:자전거대여)	공공성 매우 낮음 (예:교통사고 견인)

	서비스 수혜 대상	특정목적의 한정 도민 (예시:영재교육아동)	특정목적의 전체 도민 (예시:공원주차장이용객)	불특정 목적의 한정 도민 (예시:북한이탈주민)	불특정 목적의 전체 도민 (예시:영유아,장애인등)	충청남도 전체 도민
	서비스공급의 지속성	향후 중단되는 사무	지속가능성 (연중 9개월 미만) 낮은사무	장기 지속적인 사무 (정책에 따라 서비스공급이 불확실한 사무)	장기 지속적인 사무 (서비스공급이 다소 확실한 사무)	장기 지속적인 사무 (서비스공급이 확실한 사무)
타당성 판단	기술적 타당성	기술력 없음 (예:매표소,주차안내)	기술력 낮음 (예:콜센터,계량기검침등)	해당분야 일정 기간 경력을 통한 통한전문기술및노하우	석박사 이상의 전문가,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교수,컨설팅)	기술력 매우 높음 (의료,변호사등전문 자격증요)
	사례적 타당성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무 운영사례가없음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무를 직영/출연법인/대행으로수행	직영/출연법인/대행 vs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사례가 비슷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사례가 다소많은편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무를 대부분민간위탁이 수행
	정책적 타당성	정책적 필요성 및 시급성, 주요정책과의부합성無	기존 정책과 부합하며 정책적필요성및시급성낮음	기존 정책과 부합하며 정책적필요성및시급성보통	기존 정책과 부합하며 정책적필요성및시급성높음	해당 정부의 주요 정책과 부합 (공공기관비정규직 정규직화등)
	서비스공급 가능성	민간에서 서비스 공급 불가능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은 있으나, 일부 기관이 독점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은 있으나,일부기관이 과점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매우 높고, 대체가능한 경쟁기관 有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매우 높고, 대체가능한 경쟁기관 多
효율성 판단	민간의 전문성 활용	기술적 (시설,인력,기술) 측면에서 전문성 활용 매우낮음	기술적 (시설,인력,기술) 측면에서 전문성 활용 다소낮음	기술적 (시설,인력,기술) 측면에서 전문성 적절하게활용	기술적 (시설,인력,기술) 측면에서 전문성 활용 다소높음	기술적 (시설,인력,기술) 측면에서 전문성 활용 매우높음
	서비스 질 개선	민간 위탁을 통한 서비스질하락	민간 위탁을 통한 서비스질 개선효과 없음	민간 위탁을 통해 적정 서비스질 유지	민간 전문성, 창의성 통해 서비스질 향상	우수 서비스 성과 실적 有 (수상,인론보도,등급제고 등)
	인력/조직의 효율성	인력 및 조직 운영을 효율성매우낮음	인력 및 조직 운영을 효율성다소낮음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보통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높음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매우높음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효율성, 비용절감효과 매우 낮음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효율성, 비용절감효과 낮음	경제적 효율성, 비용절감효과 보통, 경제적 효율성 필요성 낮은 사무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비용절감효과 높음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비용절감효과 매우 높음
거버넌스	민/관/도민의 긴밀한	민/관/도민의 거버넌스	민/관/도민과 적극적 교류 통한	민/관/도민과 적극적 교류 통한	민/관/도민과 적극적 교류 통한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용이성	협업필요하지 않음	필요시에 수행	거버넌스 창출 가능	거버넌스 창출 효과성 높은 편	거버넌스 창출 효과성 매우 높음
	성과 측정 용이성	성과평가 및 측정 시행하지 않음	사업시행/ 성과보고서 작성	사업시행후 대상자(교육생, 주민등)만족도 조사실시	중앙부처/ 충청남도 사업성과평가 시행	수탁기관 독자적으로 연간/종합성과평가 시행
	사회적가치 창출성	사회적 가치 창출효과 거의없음	특정목적의 전체 도민을 위한 사회적가치창출	불특정 목적의 한정 도민을 위한 사회적가치창출	불특정 목적의 전체 도민을 위한 사회적가치창출	충청남도 전체 도민을 위한 사회적가치창출

■ 상기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된 사무는 아래의 기준을 통해 운영방식을 결정하게 됨.

■ 본 연구에서는 협의적으로는 4점 이상, 광의적으로는 3점 이상의 업무가 민간위탁에 적합한 형태라 검토하였음. (경기도 세출예산기준에서는 대행과 민간위탁을 동일시 하고 있음.)

| 표 58 |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최종 판단 기준표

운영방식	내용	배점 기준
직영	■ 오산시 직영 형태	2.0점 미만
출연법인	■ 조직이 내부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충당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수요자적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방식	2.0점 이상 ~ 3.0점 미만
대행	■ 기본적으로 지시와 명령의 방법에 의하여 통제하고 감독하지만, 업무의 난이도가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	3.0점 이상 ~ 4.0점 미만
민간위탁	■ 오산시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완전한 의미의 민간위탁임.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위임하며, 오산시는 최소한의 관리 감독을 행함	4.0점 이상

## 2. 추진계획 수립(사업부서)

-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사무의 구체적 범위 및 내용, 위탁기간, 추진일정, 수탁기관의 적정한 기구 및 인력 검토, 위탁비용 산정, 수탁기관 선정방법 결정 등에 관한 사항임.

### 1) 위탁기간

#### (1) 현 오산시 기준

-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내 위탁기간 기준은 아래와 같음.
-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3년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표 59 | 현 오산시 민간위탁 위탁기간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원칙	■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결정	
예외	■ 개별 위탁조례에 기간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예) 사회복지시설 :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2항)	

### 2) 개선(안)

-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위탁계약 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10조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 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탁기관의 긴장감 유지를 위한 사항이 서로 상충하는 가운데 오산시는 기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수탁기관의 동기 유인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의 고득점일 경우 계약기간을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표 60 | 오산시 민간위탁 위탁기간 기준 개선(안)

구분	내용	비고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결정</li> </ul>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위탁조례에 기간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그에 따름</li> <li>- 예) 사회복지시설 :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2항)</li> <li>■ <b>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0점 이상의 고득점 획득 시, 위탁기간을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음.</b></li> </ul>	

2) 위탁비용 산정

(1) 현 오산시 기준

-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는 위탁비용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도록 명시.
- 원칙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유사시설 및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그리고 최근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기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에 따라 산정함.

표 61 | 현 오산시 민간위탁 위탁 비용 산정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자치부), 「2019. 사업예산 편성계획」(기획예산과) 등 관련 법령 및 해당 사무의 관련 지침 등을 기초로 결정</li> </ul>	
산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시설 및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공유재산 사용료 기준 등 참고</li> <li>■ 최근(3년 정도) 결산자료 비교·분석 및 당해연도 예산액 등 고려</li> <li>■ 필요 시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 실시</li> </ul>	

(2) 개선(안)

-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에서는 위탁비용 산정 부분에서는 큰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위탁 비용의 경우 상위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라 큰 변경사항을 주기는 다소 어려움.
- 단, 위탁비용 산정에는 적정 인력 및 조직 구성이 포함되며, 이를 산정할 시에는 기존 수탁기관, 지역 내 업무 수행가능자, 서비스 이용 주 고객 등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표 62 | 오산시 민간위탁 위탁 비용 산정 기준 개선(안)

구분	내용	비고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자치부), 「2019. 사업예산 편성계획」(기획예산과) 등 관련 법령 및 해당 사무의 관련 지침 등을 기초로 결정</li> </ul>	
산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시설 및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공유재산 사용료 기준 등 참고</li> <li>■ 최근(3년 정도) 결산자료 비교·분석 및 당해연도 예산액 등 고려</li> <li>■ <b>기존 수탁기관 및 서비스 주 이용 고객, 지역 내 업무 수행가능자 등의 의견 고려</b></li> <li>■ 필요 시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 실시</li> </ul>	

3) 수탁기관 선정 방법 검토

(1) 현 오산시 기준

-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수탁기관 제한에 관한 사항이 특별한 장치 없이 명시되어 있음.

표 63 | 현 오산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방법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모집 원칙</li> </ul>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적으로 공개모집 외의 방법(제한입찰) 가능</li> </ul>	

(2) 개선(안)

- 행정안전부의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조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3개 항목을 수의계약 부문에 명시함으로써 수의계약 가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고,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를 신설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하였음.

표 64 | 오산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방법 개선(안)

구분	내용	비고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모집 원칙</li> </ul>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적으로 공개모집 외의 방법(수의계약 형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 대상사무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조항</li> <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li> <li>-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li> </ul> </li> <li>■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li> </ul>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4) 위탁수수료

(1) 현 오산시 기준

■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는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서울특별시 적용 기준

■ 서울특별시에서는 다음의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위탁사무가 수익사업을 포함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2% 내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규정이 존재함.

표 65 서울특별시 위탁수수료 반영 방안

구분	내용	비고
수수료 반영	■ 출연기관 또는 위탁사무가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의 수익사업인 경우	
수수료 미반영	■ 위탁사무가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 예산 수립 시 정한 수수료율 산정 방식에 따라서 결산 시 집행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지출액 예산대비 미집행 비율 만큼 수수료도 정산 반납해야 함

■ 위탁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음.

표 66 서울특별시 위탁수수료 요율

구분	내용	비고
5억원 미만	2.00%	■ 민간위탁 주관부서는 수탁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시된 수수료율을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 (총 지출액 2%를 초과할 수는 없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7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45%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1.24%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1.06%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0.91%	
100억원 이상	0.78%	

■ 단, 서울특별시 역시 위탁수수료는 거의 지급되고 있지 않으며, 본 연구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청년청에서 무중력지대 위탁 운영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예정가격 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하한선이 존재하지 않고, 입찰을 통해 낙찰율이 형성됨에 따라 실제로 해당 비용이 거의 유명무실한 경우도 매우 많은 편임.

■ 행정안전부의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서는 위탁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권장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위탁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강제조항이라 보기는 다소 어렵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오산시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과 수탁기관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위탁수수료 지급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제안을 하였음.

표 67 오산시 민간위탁 위탁수수료 개선(안)

구분	내용	비고
원칙	■ 서울특별시 위탁수수료 지급 기준 차용	참고

### 3.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및 적격자 선정위원회

#### 1) 현 오산시 기준

- 오산시는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해당 위원회가 수탁기관 선정, 성과평가, 재계약 등의 모든 업무를 심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표 68 | 현 오산시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 운영 기준

구분	내용	비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전문가가 등 6인 이상 9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li> <li>- 관련분야 전문가</li> <li>- 이용시설 대표자</li> <li>- 사회단체 회원</li> <li>- 기타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li> </ul> </li> <li>■ 수행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의 선정</li> <li>-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li> <li>- 재계약에 관한 사항</li> </ul> </li> </ul>	심의와 적격자선정 위원회 구분

#### 2) 개선(안)

- 행정안전부의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서는 앞서 검토한 적정성 심의와 적격자 선정과 더불어 운영성과평가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단, 이 경우 소요되는 행정력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존재함에 따라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운영성과평가 심의로 확대하는 방안도 존재함.
- 그리고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운영평가 위원회와 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영평가 위원회 / 수탁기관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제안하였음.
- 그리고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요건 역시 상기 지침과 일반적인 민간위탁 위원 구성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음.

표 69 | 오산시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 운영 개선(안)

구분	내용	비고
운영평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 7인 이상 9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공무원</li> <li>- 시의원</li> <li>-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는 자</li> <li>- 민간위탁 관련 교수 및 10년 이상의 경력자</li> <li>-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자</li> <li>-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li> </ul> </li> <li>■ 수행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ul> </li> </ul>	심의와 수탁자선정 위원회 구분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li> <li>- 수탁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li> <li>- 재계약에 관한 사항</li> <li>- 지도·감독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li> <li>- 감사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li> <li>-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li> </ul>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 7인 이상 9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공무원</li> <li>- 시의원</li> <li>-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는 자</li> <li>- 민간위탁 관련 교수 및 10년 이상의 경력자</li> </ul> </li> <li>■ 수행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 선정</li> </ul> </li> </ul>	

4.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

1)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 행정안전부의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사회적가치 지향 및 근로자보호 그리고 수탁기관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표 70 |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

구분	내용	비고
수탁기관 선정기준	일반 적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고려</li> </ul>
	권장 적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우선 고려(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고려(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li> </ul> </li> <li>■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부 공공기관 노사관계과 - 2666 (19.12.5)호 및 2709(12.12)호) 적용</li> </ul>
수탁기관 선정방법	일반 적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공개모집) → 제안서(신청서) 접수 → 수탁기관 선정(적격자 심사위원회 등 심의) → 협약체결</li> <li>■ 수의협약 사유 등에 대한 심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li> </ul>
	권장 적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기준 및 배점 등 공개 및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권장</li> </ul>

2) 개선(안)

- 오산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개선(안)은 아래와 같음
-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음.

표 71 | 현 오산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구분	내용	비고
수탁기관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정도</li> <li>-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li> <li>-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li> <li>-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li> <li>-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li> <li>-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우선 고려</li> <li>- 근로자의 고용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li> </ul> </li> <li>■ 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산점 제도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안) 존재</li> <li>■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 권고사항 모두 포함</li> </ul>
수탁기관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li> <li>■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 공개</li> <li>■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li> <li>■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의신청 제도 존재</li> <li>■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 조항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모두 포함</li> <li>■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 권고사항 모두 포함</li> </ul>

## 5. 운영에 관한 사항

### 1) 위수탁 협약체결

#### (1) 현 오산시 기준

■ 현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는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표 72 | 현 오산시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 운영 기준

구분	내용	비고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사항이 계약에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의 목적</li> <li>-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li> <li>- 위탁사무의 명칭과 내용</li> <li>- 위탁계약기간</li> <li>-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li> <li>- 수탁기관의 의무</li> <li>- 계약의 해지 사유</li> <li>-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li> <li>-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li>-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li> </ul>	공중 의무

#### (2) 개선(안)

■ 본 연구소의 민간위탁 표준 계약서 및 행정안전부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및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사항 검토 기준을 설정하였음.

■ 사업계획서와 운영성과평가 지표는 발주부서와 수탁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수리수선비에 대한 기준 역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73 | 위수탁 계약서 개선 검토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기관(사업부서)과 수탁기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작성하고 변경 역시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것을 권장(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한 충분한 협상기한 부여 등)</li> </ul>	개선 필요
운영성과 지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운영성과 지표 역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충분한 상호 협의를 통해 설정되어야 필요가 있음.</li> <li>■ 사업계획서와 동시에 작성되도록 권장</li> </ul>	개선 필요
대규모 수리수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함에도 수리비용을 수탁기관에 부담시키는 일부 사례 발생</li> <li>■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하여, 수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대규모 수리수선비의 경우 위탁기관(발주부서)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li> <li>■ 통상적으로 500~1,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설정함.</li> </ul>	개선 필요
노동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 고용 및 고용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권장</li> <li>■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및 임금지급 명세서 제출 및 확인에 관한 사항 포함</li> </ul>	개선 필요

정기적인 소통창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 설문 및 인터뷰에 따른 제안사항임</li> <li>■ 위탁기관(발주부서) 담당자와 수탁기관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건의사항 수립 / 그에 대한 발주기관 의견 표명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신뢰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 도모</li> <li>■ 반기에 1회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li> </ul>	개선 필요
--------------	---	-------

■ 상기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위수탁 계약서 개선(안)을 제안함.

표 74 | 오산시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서 개선(안)

연번	조 제목	주요 내용
1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규정함을 목적</li> </ul>
2	위·수탁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수탁사무, 위·수탁재산, 위·수탁사무 조정</li> </ul>
3	위·수탁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조정</li> </ul>
4	수탁재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수탁사무의 용도로 사용 금지, 재산 현황 변경시의 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계약이후 설치·구입 재산을 구의 재산으로 귀속, 지적재산권 취득 시 구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li> <li>■ <u>수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대규모 수리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비용은 위탁기관(발주부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u></li> </ul>
5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승인, 가구·인력 계획, 근로조건 포함, 구체적 성과목표</li> <li>■ <u>사업계획은 위탁기관(발주부서)과 수탁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실현가능하고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u></li> </ul>
6	사업의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 명칭 사용 등 금지</li> </ul>
7	근로약정 이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 관련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고용승계 노력, 노동3권 보장</li> <li>■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및 임금지급명세서 발주부서 제출 사항 명시</li> </ul>
8	관계법령 등의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준수</li> </ul>
9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법 등 준수, 제3자 제공·누설 금지, 위·수탁기간만료 후 파기</li> </ul>
10	사업비 지급 및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구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구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 임명 등</li> </ul>
11	수입금의 징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수수료·비용 징수 및 승인, 이용료 등 사용 및 관리</li> </ul>
12	사업비 정산 및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분기 정산서 제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회계년도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시 잔액 반납,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 전액 변제</li> </ul>
13	정기적인 소통창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매반기 위탁기관(발주부서)과 수탁기관은 상호간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미팅을 정기적으로 유지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차후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u></li> </ul>
14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및 지도점검, 자료제출의무, 외부 회계감사 의무, 위법·부당 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의견진술의 기회, 재계약 시 활용</li> </ul>
15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목표 설정, 평가계획 수립 및 위탁만료 60일 전까지 실시, 인력관리 및 근로여건(배점 10%), 고용승계 또는 정규직 비율 20% 이상 유지, 재계약 시 반영</li> <li>■ <u>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는 위탁기관(발주부서)과 수탁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설정</u></li> <li>■ <u>성과평가 지표는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과 동시에 진행</u></li> </ul>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16	계약이행의 보증	■ 계약보증금(총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납부 또는 보증보험가입
17	보험가입	■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
18	제3자위탁 금지	■ 계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 금지, 제3자에게 다시 위탁 금지
19	민·형사상 책임	■ 사건·사고시 민형사상 책임
20	계약의 해지	■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21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 위탁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22	비밀유지의무	■ 계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3	계약의 해석	■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관할법원
24	계약의 효력 등	■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시 보고

## 2)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추진 (갑질근절)

### (1)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개요

- 민간위탁 입찰단계에서 계약 및 종료에 이르기 까지 오산시청과 수탁기관 계약관계에서 청렴문화가 조성하고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임.
- 아래 입찰 및 계약프로세스 상에서 갑질이 발생할 수 있는 입찰시 자료제출, 낙찰자 선정 및 계약단계에서 계약체결, 서비스제공 준비단계, 서비스 제공·운영·관리단계, 계약종결 및 검사·검수 후 대금청구 계산서 발급 및 수금 단계에서 법령위반 / 사적이익추구 / 부당한 인사 / 비인격적 대우 / 관이기주의 / 업무불이익 / 부당한 민원 응대 / 기타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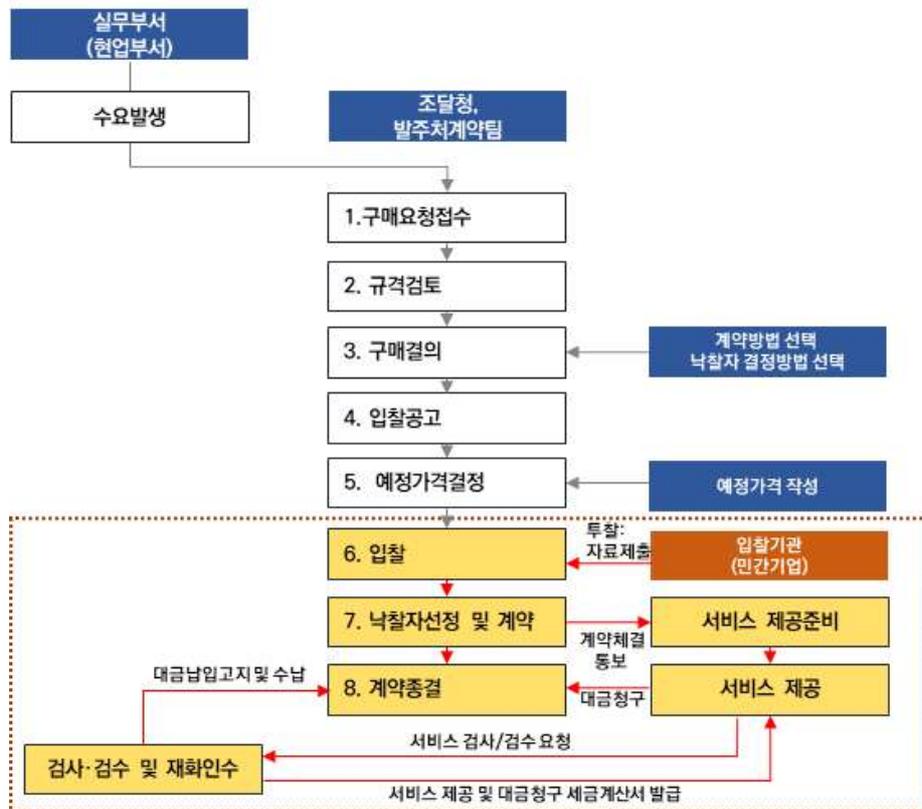


그림 45 | 입찰 및 계약프로세스내 갑질발생 가능 단계

### (2) 추진 배경 및 목적

-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이 지속 발생해왔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계약적 관계에서 갑질'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함.
- 계약관계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인격모독 등이 빈발하고, 지도·감독·조사 등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주로 발생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3) 추진 근거

- 계약관계에 있어 갑질근절에 대한 근거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민간위탁 역시 계약관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하여 갑질근절에 대한 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75 | 갑질근절 추진 근거

순번	추진 근거	비고
1	■ 지방계약법 제6조	
2	■ 甲乙 관계 혁신대책 (서울시 2014)	
3	■ 서울시 산하기관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위한 부당계약 모니터링 시행계획 (서울시 2016)	
4	■ 서울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매뉴얼(2019.4) 부당계약 근절제도 보완	
5	■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4.18. 대통령 지시사항)	
6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2) 발표정부 공공기관별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4) 갑질근절을 위한 체크리스트

- 입찰과 계약 후 운영관리에서 갑질근절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 갑을 관계에서 '갑'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유념해야할 사항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수탁기관과의 동등한 관계 구축을 위한 지침이라 볼 수 있음.

가. 입찰단계에서의 체크리스트

- 입찰단계인 공고 / 평가 / 낙찰에서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76 | 입찰단계에서 갑질 해소를 위한 체크리스트

단계	입찰단계 체크리스트	
입찰 공고	조달을 위한 입찰요청서 공표 시 충분한 수준의 투명성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입찰에 따른 조달의 경우, 평가기준을 포함한 입찰관련정보를 공개하였는가?</li> <li>■ 제한입찰 혹은 협상방식에 따른 조달의 경우, 예비 입찰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였는가?</li> </ul>
	공정한 입찰공고 게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대상 재화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li> <li>■ 명확한 낙찰자 선정기준을 제공하였는가?</li> <li>■ 계약관리와 지급방식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였는가?</li> <li>■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li> </ul>
	입찰제안자(잠재적 협력업체)와 소통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교환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알렸는가? (예: 문의 및 답변을 위한 연락처 제공, 설명회 등)</li> <li>■ 이해관계자의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였는가?</li> <li>■ 외부 모니터링 및 세밀한 사업제안을 받기 위한 정보를 공개하였는가?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등)</li> </ul>
평가	입찰제안서와 관련된 정보의 보안 및 기밀유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서류의 보관과 기밀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li> <li>■ 컴퓨터에 입찰관련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해킹의 가능성에 대비하였는가?</li> </ul>

	<p>입찰평가를 위한 명확한 절차 수립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립된 일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였는가?</li> <li>■ 입찰자의 기본정보를 공개하고 의사록에 기재한 후 입찰을 진행하였는가?</li> <li>■ 입찰내용의 불명확성에 대한 입찰자의 민원(이의제기)에 따라 입찰일정이 변경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였는가?</li> <li>■ 입찰자들이 제안한 제안서가 평가를 위해 접수되었다고 모든 입찰자들에게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보고하였는가?</li> </ul>
	<p>공정하고 기밀이 유지되는 평가절차 수립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입찰평가를 진행하였는가?</li> <li>■ 입찰평가 기준을 체계적, 독립적으로 활용하였는가?</li> <li>■ 입찰평가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가 없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는가?</li> <li>■ 입찰평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고, 이를 입찰평가담당자다 확인하였는가?</li> </ul>
	<p>낙찰 후 협상과정에서 부패 및 부정행위 예방조치 수립 여부(예: 단독입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이 편견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수립된 일정에 따라 체계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li> <li>■ 입찰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고 입찰평가를 진행하였는가?</li> <li>■ 협상과정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기록하였는가?</li> </ul>
낙찰	<p>낙찰결과 공개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찰에 실패한 입찰자에게 입찰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였는가?</li> <li>■ 입찰결과를 공표하고, 매체를 통해 공개하였는가? (예: 인터넷 등)</li> <li>■ 낙찰자 선정의 근거를 공표하는 것을 고려하였는가? (주의: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제외한다)</li> <li>■ 계약체결 전 스탠드스틸(stand-still) 기간을 적용하였는가?</li> </ul>
	<p>요청 시 설명회 개최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자의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였는가?</li> <li>■ 낙찰에 실패한 입찰자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였는가?</li> <li>■ 문서로 설명하는 경우, 조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li> <li>■ 구두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낙찰자의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였는가?</li> </ul>
	<p>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 및 공식적 검토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자(예비 도급계약자)와 분쟁 발생 시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였는가?</li> <li>■ 입찰자에게 조달절차와 관련된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을 제공하였는가?</li> <li>■ 낙찰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장치를 구축하였는가?</li> <li>■ 입찰자의 불만에 신속히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를 고려하였는가?</li> </ul>

나. 낙찰 후 단계에서의 체크리스트

■ 낙찰 후 단계인 계약관리 / 비용지급에서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771 낙찰 후 단계에서 갑질 해소를 위한 체크리스트

단계	낙찰 후 단계 체크리스트	
계약관리	<p>계약관리와 관련된 기대와 역할 및 책무의 명확화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기관(발주처)과 협력업체가 이해상충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규정을 인지하도록 하였는가?</li> <li>■ 협력업체에게 요구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li> <li>■ 계약기관과 협력업체(도급계약자)가 위험(risk)을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약에 포함하였는가?</li> <li>■ 계약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계약에 포함하였는가?</li> <li>■ 계약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할 경우, 협력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을 계약에 포함하였는가?</li> </ul>
	<p>도급계약자(낙찰자)의 성과 및 청렴에 대한 면밀한 감독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업체에게 요구되는 사양에 따라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였는가?</li> <li>■ 승인된 예산 한도 내에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가?</li> <li>■ 작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는가?</li> <li>■ 계약관리와 협력업체에 대한 지급, 부정행위 감시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는가?</li> </ul>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관리를 위한 정밀심사에 제3자를 참여시켰는가? (예: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인 고객 등)</li> <li>■ 재화 혹은 서비스를 고객에 공급하기 전에 실제 환경에서 시험(test)하였는가?</li> </ul>
	계약변경을 위한 절차 수립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수정 혹은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명료하고, 객관적인 수정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는가?</li> <li>■ 계약 변경 혹은 수정과 관련된 내용이 낙찰자를 선정한 (계약)부서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는가?</li> <li>■ 계약 변경 혹은 수정이 합당하고 타당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가?</li> <li>■ 계약 변경 혹은 수정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였는가?</li> </ul>
	조달절차에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및 시민들의 감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였는가?</li> <li>■ 최종고객의 만족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체계를 구축하였는가?</li> <li>■ 계약체결(낙찰) 후 합당한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li> </ul>
지급	도급계약자 성과에 대한 검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업체에 지급하기 전에 성과의 달성여부를 확인하였는가?</li> <li>■ 성과의 달성여부를 최소 2인 이상 직원이 검증하였는가?</li> <li>■ 성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에 조달담당자와 최종고객을 참여시켰는가?</li> </ul>
	조직 내 부서 간 긴밀한 협조에 따른 최종 회계 혹은 감사 절차 수립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업체의 견적서를 확인하는 직원과 지급담당자는 서로 다른 사람인가? (협력업체의 견적서를 확인하는 직원은 지급담당자와 달라야 한다)</li> <li>■ 지급을 교차검증 하였는가?</li> </ul>
	계약요건에 따른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용체계 수립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찰이 이루어지기 전 혹은 낙찰이 이루어진 직후에 계약을 위한 예산이 진행되었는가?</li> <li>■ 소액 조달의 경우, 혁신적인 지급방식을 활용하고 있는가? (구태의연한 지급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li> <li>■ 지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li> <li>■ 예산집행과 관련된 체계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가?</li> </ul>
	프로젝트 준공 후 평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치, 복잡성 및 민감도 등 사전 수립된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계약의 결과)를 평가하였는가?</li> <li>■ 조달절차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배운 것이 있는가?</li> <li>■ 고가(high-value)조달의 경우, 고객의 평가를 받는 것을 고려하였는가?</li> <li>■ 조달절차의 불일치와 비정상적인 경향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였는가?</li> <li>■ 고가(high-value)조달의 경우, 감사기관 혹은 기타 감독기관에게 평가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li> </ul>

(5) 갑질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상기 체크리스트는 민간위탁 담당자를 위한 지침 그리고 계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 볼 수 있음.
- 좀 더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제안함.

가. 민간위탁 및 기타 계약 관리팀 신설

- 민간위탁에 대한 갑질근절을 위하여 감사팀 내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피해조사 그리고 지속적인 수탁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관리할 것을 제안함.

표 78 | 민간위탁 갑질근절 전담팀 신설 방안

구분	내용	비고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감사팀 내 전담 인원 1인 배치</li> </ul>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 직원에 대한 계약갑질 행위방지를 위해 교육·상담</li> <li>■ 계약갑질 행위의 첩보수집, 신고접수, 직권조사, 처리</li> <li>■ 피해자 보호지원 등 필요한 업무 수행</li> <li>■ 주기적인 민간위탁 수탁자 설문조사 시행 및 발주기관 담당자 피드백</li> </ul>	

나. 민간위탁 수탁기관 설문조사(안)

■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정당한 지위보장 및 투명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설문조사(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수탁기관 근무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표 79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설문조사(안)

갑절유형	갑절내용	평가결과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① 법령 등 위반	■ 발주기관(혹은 관계자)으로부터 선물, 식사대접, 유흥 등 기타 호의를 받는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					
	■ 하자담보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하자담보기간을 연장하여 특정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적이 있다					
	■ 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해당기업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적이 있다					
	■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가산점 혹은 별점 제도를 포함한 입찰참가자격을 마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유리 혹은 불리하게 적용한 적이 있다					
	■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내부평가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자가 낙찰을 받도록 한 적이 있다					
	■ 특정사업자와 구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한 적이 있다					
② 사적 이익추 구	■ 발주기관(혹은 관계자)에게 정보 전달, 편애 혹은 기타 편익을 주는 댓가로 금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적이 있다.					
	■ 발주기관(혹은 관계자)에게 사업지분을 강탈당한 적이 있다					
	■ 특정 입찰업체에 가족, 친지, 친구가 근무하거나, 입찰업체의 사업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입찰절차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적이 있다					
	■ 계약입찰절차에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발주기관(혹은 관계자)에게 가족, 친지, 친구 등 지인의 채용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					
③ 부당한 인사	■ 현 채용 직원, 파견근무자의 직무배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직원, 파견근무자를 편애하여 타 직원, 파견근무자들이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를 직무에 배치하도록 강요당한 적이 있다					
	■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절차 없이 협력업체의 직원, 파견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퇴직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					
④ 비인격 적 대우	■ 업체 직원, 파견근무자에 대한 인사복귀명령서에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반납’이라는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					
	■ 업체 직원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언행 혹은 폭언을 당한 적이 있다					
⑤ 기관 이기주 의	■ 낙찰자선정기준이 입찰 전에 수립된 경우, 합법적인 타당한 정보를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제안을 받은 후 낙찰자선정기준이나 낙찰자선정기준의 가중치를 변경 혹은 수정한 적이 있다					
	■ 입찰을 수단으로 하여 압력을 행사당한 적이 있다					
	■ 입찰 계약방식을 불공정하게 적용당한 적이 있다(예: 부당한 수의계약, 단일사업 쪼개기 등)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조건을 무리하게 요구당한 적이 있다 (예: 과도한 실적, 업종 혹은 사양 요구, 지역제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특약조건을 적용당한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처리 등 문제해결을 업체에게 전가당한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액 산정을 불공정하게 당한 적이 있다 (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하도록 요구당한 적이 있다 (예: 하자보수기간, 보증연장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에 따라 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당한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면허 업체 하도급, 일괄 하도급, 동일 업종 간 하도급 등을 묵인당한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업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적이 있다 (예: 예산 부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시 노무비 삭감, 물가 미반영, 시설관리비 미지급 등 업체에게 해당비용을 부담하게 한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 민원해결 등 모든 법적 행정절차 및 민원해결에 관한 비용을 업체(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한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규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배치 외 인건비 증액 없이 운영요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협약을 설정한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자격을 퇴직자를 고용한 법인으로 제한하여 특정사업자가 낙찰되도록 유도한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당한 적이 있다</li> </ul>				
⑥ 업무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자가 제안한 내용을 타 입찰자와 공유하여 입찰상 불이익을 본 적이 있다 (단,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참가자격에 미달하거나 후순위 업체를 정당한 절차 없이 낙찰자로 선정한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휴일 혹은 휴가기간에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수탁기관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근무를 강요한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관 직원에게 심야시간에 업무 지시를 하면서 익일 아침에 보고하도록 강요당한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관 직원에게 대기를 명령하면서 퇴근을 방해당한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에게 불필요한 자료 혹은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여 부당하게 업무 부담을 준 적이 있다</li> </ul>				
⑦ 부당한 민원 응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입찰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도 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접수를 거부한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을 상대로 접수된 계약입찰관련 민원을 취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한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번호 오류 등 쉽게 정정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고의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면서 처리를 지연한 적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리하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관련성이 희박한 타 직원, 부서, 기관 등에 민원처리를 떠넘긴 적이 있다</li> </ul>				
⑧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입찰관련 비리신고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한 적이 있다</li> </ul>				

## 6. 민간위탁 성과평가 부문

### 1)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필요성

- 민간위탁 운영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과평가라 할 수 있음.
- 민간위탁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고안된 제도적 장치가 나, 현재 오산시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그 사항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그림 46 | 수탁기관 의견반영의 난이도

### 2)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정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778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앞서 검토한 종합성과평가의 대상이 사업비 5억원이상의 사무라 정하고 있음.
- 또한, 종합성과평가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도점검의 형태를 통하여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오산시의 경우, 지도점검 / 재계약시 수탁기관의 성과를 고려하는 등의 간접적인 언급이 있으나, 직접적인 의무사항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오산시 역시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대한 부문을 조례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2019. 10. 10., 타법개정]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3) 성과평가 프로세스

- 성과평가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음.
- 일반적인 성과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성되며, 현장평가에는 이용자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평가지표에 대한 설정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가. 협약 단계에서 서비스 수준 및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나. 성과평가 지표는 발주기관과 수탁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지표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함.
- 초기단계에서의 지표설정에는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목적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역시 성과 지표에 따른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존재함.



|그림 47| 민간위탁 성과평가 프로세스

4) 성과평가 평가방법 기준

-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아래와 같음.
- 정성평가의 경우 대부분 9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정량평가의 경우 다양한 분석방법이 존재하나, 목표대비 실적평가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방법임.
- 이에 따라 오산시 역시 평가 기준을 9등급평가 + 목표대비 실적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난이도 및 효율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 검토되었음.

표 80 | 성과평가 평가방법 기준

구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서울특별시 종합성과평가 편람
정성평가	9등급 평가(A)	9등급평가(B)	9등급평가(B)	9등급평가(C)
정량평가	목표부여평가 목표부여편차평가 글로벌실적비교평가 중장기목표부여평가 목표대비실적평가 β분포평가 추세치평가	목표부여A평가 목표부여B평가(6:4) 목표부여편차평가 목표대비실적평가 단계별평가	목표대비실적평가 목표부여평가 단계별평가	목표대비실적평가
종합평가	6등급평가	5등급평가	5등급평가	점수 평가

표 81 | 정량평가 평가방법 세부내용

평가방법	내용	비고
목표부여 평가	해당지표에 부여된 최고 또는 최저목표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도를 계산	$\text{목표달성도}(Y)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목표부여 편차평가	민간위탁사무가 5년 이상인 수탁기관에 한하여 5년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이상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에 적용
목표대비 실적평가	사업성과에 대한 목표치(사업계약서 상의 목표 또는 전년도 실적 등) 대비 달성도 평가	$\text{평점} = \text{달성도} / \text{목표치} * 100$
유사실적 비교평가	유사 민간위탁 사무 또는 수탁기관의 실적치 등을 격차 및 비중 등을 활용하여 목표부여 편차를 활용하여 평가	유사 민간위탁 사무 또는 수탁기관의 실적치 등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중장기목표부여평가	서울특별시,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선진국 수준 등을 활용하여 최종 목표를 선정후 목표부여 방법을 통해 평가	서울특별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중기계획과 연계한 사업의 경우에 적용
β분포 평가	최고, 최저, 직년년도 실적치를 고려하여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적치가 표준치로부터 어떤 확률 범위 내에 있는지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10년 이하로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추세치평가	회귀분석을 활용,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적치가 표준치로부터 어떤 확률 범위 내에 있는지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10년 이상 추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단계별평가	지표별로 발생간오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평가 점수를 부여	단계의 구분과 단계별 평가점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표 정의서에 안내
+		
목표난이도 평가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처 및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예산, 효율성, 이해관계자 고객요구,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평가	

5) 성과평가 표준 절차 및 유형

(1)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민간위탁 추진 시, 위수탁 계약체결 단계에서 수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한 후, 위탁 만료년도에 오산시 민간위탁 총괄부서 주관에 따라 성과평가를 수행함.



그림 48 | 민간위탁 추진절차와 성과평가

(2) 성과평가 수행 절차

- 민간위탁 추진절차 중 위수탁 계약체결 단계에서 발주부서와 수탁기관은 사전적으로 성과평가 수행에 관한 사항과 성과평가 지표에 관하여 협의 및 설정하여야 함.
- 지표 협의 후, 계약만료 전 진행되는 종합성과평가는 아래와 같이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표준적인 절차임.
- 지표를 확정하는 설계,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결과를 통한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에 따른 우수사례 선정과 개선사항 제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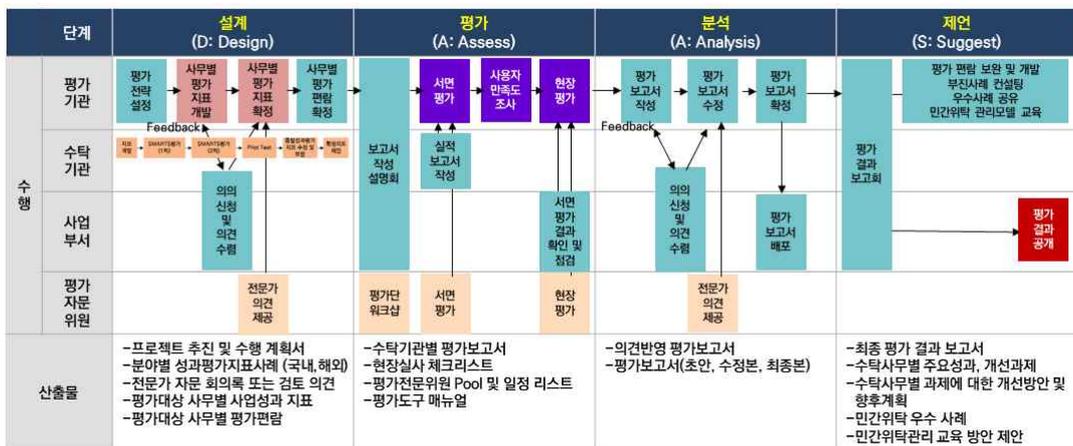


그림 49 | 민간위탁 성과평가 표준 절차

(3) 민간위탁 사무 유형의 구분

■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은 제공 서비스의 형태 및 대상자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개의 사무로 분류할 수 있음.

| 표 82 |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 (사무의 성격)

구분	내용
시민이용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의 이용이 가능한 개방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무</li> <li>■ 예) 관광안내소 운영, 문화회관 운영 등</li> </ul>
사회복지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li> <li>■ 예) 노인복지관 운영,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운영 등</li> </ul>
중간지원조직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산시와 정책수혜자의 중간조직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무</li> <li>■ 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li> </ul>
단순시설관리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시민 이용이 발생하지 않는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사무</li> <li>■ 예)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등</li> </ul>

■ 또한, 상기의 사무 유형은 시설 유지관리 업무 유무에 따라 시설형과 사무형으로 구분됨.

| 표 83 |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 (시설 유지관리 업무 포함 여부)

순번	구분	내용
1	시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li> <li>■ 예) 국민체육관 민간위탁</li> </ul>
2	사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li> <li>■ 예) 마을기업 교육 등</li> </ul>

6) 성과지표의 설정

(1) 기본 원칙

■ 효과적인 민간위탁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3가지 대분류 지표로 구성하도록 함.

| 표 84 |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분류 지표 구성

구분	내용
과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사무의 기본적인 절차 및 운영 사항에 대한 평가 구성</li> <li>■ 동일한 분류의 사무는 같은 지표 및 배점에 의하여 평가됨</li> </ul>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사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 구성</li> <li>■ 동일한 분류의 사무일지라도 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li> </ul>
만족도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li> <li>■ 수탁기관의 노력 및 친절,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등의 지표로 구성</li> </ul>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2) 세부 체계

- 과정지표 / 결과지표 / 만족도 지표는 중분류지표 및 세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함.
- 민간위탁 성과평가 수행기관<sup>6)</sup>은 각 사무의 여건 및 평가 시점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분류 및 세부지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산시 성과평가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

표 85 |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 세부 체계

구분		내용
과정지표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인력 및 조직	■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인력의 전문성,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예산	■ 예산집행의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사업운영	■ 자체점검 활동 및 규정 준수 여부, 사업관리의 투명성, 시설관리의 적정성
	사업활성화	■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 이해관계자 협조, 마케팅 및 홍보 노력
	사회적가치	■ 사회적 기여 등 위탁 사무 가치 제고, 거버넌스 구축도, 민간주체에 대한 지원 노력도
결과지표	목표달성도	■ 개별 사무 주요 목표 달성도, 성과목표의 적정성
	우수사례	■ 개별 사무 우수사례 창출의 적정성
	지도점검	■ 개별 사무 지도점검 이행 및 노력도
만족도지표	만족도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제고 노력	■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3) 개별 사무 목표 설정의 원칙

- 발주부서와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계약 시, 해당 사무의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설정된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성과목표는 다음의 기준에 따름.

표 86 | 성과목표 설정 기준

순번	기준	내용
1	사업의 필요성	■ 민간위탁 사업 실시 전,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함
2	사업 대상	■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적절한 대상을 선별하여 명시 ■ 실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실인원과 연인원을 성과측정의 중요한 지표로 하여, 수탁기관은 달성 가능한 목표인원 설정 ■ 유사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관이나 다른 지역의 동일한 민간위탁 사업과 비교분석 하여 민간위탁 지원액 대비로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높이는 목표 인원 설정
3	사업 목표	■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성과목표를 명시 ■ 위탁기간동안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하며, 측정·보고·관리되어질 것인가를

6) 피평가기관인 수탁기관이 아닌,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p>포함하여 서비스의 세부사항, 특징, 기준, 대상, 주요성과지표 등 구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숫자, 측정 가능한 지표 등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종결 후 그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함</li> <li>■ 위탁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명시하고,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측정 가능한 목표(10명, 10% 등) 설정</li> <li>■ 위탁사업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세워지면, 그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고, 목표에 따른 프로그램의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li> </ul>
--	---

■ 설정된 목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음.

표 871 사업성과목표 측정 예시 (청소년상담센터)

평가범주	사업성과	배점	35점
평가 주안점	■ 사업계획서 내 사업평가 계획 상 제시한 계획 대비 이행여부 판단		
세부평가요소		가중치	평가기준
① 청소년상담사업	20.00점	사업계획 목표 대비 달성도	정량평가 (목표대비실적)
② 솔리언 또래 상담 연합회	5.00점		
③ 찾아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5.00점		
④ 청소년 사회심리적외상 지원사업	5.00점		
평가 착안사항	① 청소년상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상담서비스 이용자 수 (50%)</li> <li>■ 청소년상담서비스 서비스 제공 건 수 (50%)</li> <li>■ 수탁자가 제출한 단위사업별 운영 시스템이 구축 여부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사업계획서 상 목표 부재시 전년도 실적)</li> </ul>	
	② 솔리언 또래 상담 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회 지도교사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여부 (10%)</li> <li>■ 또래상담자 기초교육 실시 여부 (30%)</li> <li>■ 또래상담자 대표모임 실시 여부 (10%)</li> <li>■ 또래상담자 보수교육 실시 여부 (30%)</li> <li>■ 상담연합회 보고대회 실시 여부 (20%)</li> </ul>	
	③ 찾아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상담 전문지도자 양성 건수 (50%)</li> <li>■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소그룹 및 학급 수 (50%)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사업계획서 상 목표 부재시 전년도 실적)</li> </ul>	
	④ 청소년 사회심리적외상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사례 발굴 및 워크숍 개최 건수 (100%)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사업계획서 상 목표 부재시 전년도 실적)</li> </ul>	
평가지 확인·반영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간 내 사업계획서</li> <li>■ 단위사업별 수행 실적</li> <li>■ 사업계획서 상 계획된 청소년상담사업의 단위사업별 운영 시스템 구축 여부 근거자료 제출</li> <li>■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의 경우 근거자료 및 시 보고자료 첨부 제출</li> <li>■ 사업계획서 상 계획 대비 변경 수행한 사업의 경우 근거자료 및 시 보고자료 첨부 제출</li> </ul>		

7) 성과평가 수행

(1) 과정 및 결과지표 평가

- 성과평가 수행자는 수탁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과정 및 결과지표를 평가함.
- 성과평가 수행자는 필요에 따라 수탁기관에 필요자료 및 현장검증을 요구할 수 있음.
- 성과평가 수행자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하나의 사무에 대하여 최소 2개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한 후, 각 평가결과의 평균값으로 점수를 도출하도록 함.

(2) 만족도 평가

- 만족도 평가는 수탁기관에서 수행한 만족도 결과를 기준으로 함.
- 성과평가 수행자는 수탁기관 만족도 조사 지표 및 조사 대상자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결과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부적절한 만족도 조사가 진행된 경우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수행자가 만족도 조사 지표를 구성하여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도록 함.

(3) 기타 고려사항

- 성과평가 관련 금품 및 향응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0"점을 부여하며, 성과평가 수행자는 오산시에 즉각 보고하여 조치하여야 함.
- 성과평가 미실시 기관은 최하 등급 부여.
- 당해연도 평가에서 허위 및 오류자료 발견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시 성과평가 수행자 및 오산시의 심의를 거쳐 "0"점을 부여할 수 있음.

[표 88] 허위 및 오류자료에 대한 처리

고의성 여부	중대성 정도	결과 처리
허위 발견 시	중대한 사안	■ 해당지표 0점 처리 /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최하 등급 부여
	경미한 사안	■ 해당지표 0점 처리 / 최종 결과에서 1등급 하향 조정
오류 발견 시	중대한 사안	■ 해당지표 0점 처리
	경미한 사안	■ 해당지표 점수 보정

※ 중대 및 경미 판단기준 : 허위 및 오류의 정도가 해당지표의 실제 받아야할 점수에 50% 이상 영향을 끼친 경우

(4) 이의신청

- 성과평가단은 성과평가가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한 후 수탁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아야 함.
- 이의신청 기간은 수탁기관이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4일로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 수탁기관이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인정함.
- 성과평가단은 수탁기관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 수용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 (5) 성과평가 결과 확정

- 성과평가단은 이의신청을 완료한 후 최종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함.
- 성과평가 결과 등급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함.

|표 89|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점수 구간	평가 결과	비고
95점 이상	매우 우수	
85점 이상 ~ 95점 미만	우수	
75점 이상 ~ 85점 미만	보통	
65점 이상 ~ 75점 미만	미흡	
65점 미만	매우 미흡	

## (6) 종합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및 우수사례 공유

- 성과평가 결과는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우수사례는 평가결과 “우수”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우수사례와 더불어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발주부서 및 수탁기관에 통보하여 대상 사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야 함.
-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의 경우, 오산시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재검토 및 결과 부진에 대한 원인분석 그리고 사업 개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 성과평가 총괄부서장은 평가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확인하여야 함.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8) 민간위탁 사무 유형별 지표 구성(안)

■ 평가 시점의 상황적 여건 및 중요도 판단 기준에 따라 지표와 배점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

(1) 시민이용 부문

가. 시설형

■ 시민이용 - 시설형 민간위탁의 평가지표 구성은 아래와 같음.

■ 과정지표 40점, 결과지표 45점, 만족도 15점, 가감점 ±4점으로 구성됨.

표 90 | 시민이용 - 시설형 민간위탁 평가지표 구성

구분	평가지표	배점	방법	비고	
과정 지표 (40)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3	정성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1.5	정성	
	인력 및 조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2	정량/정성	
		인력의 전문성 보유	2	정량/정성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5	정성	
	예산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	정량	
		경제적 효율성	2	정성	
	사업운영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 규정 준수 수준	3	정량/정성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5	정량/정성	
		시설물 및 안전 관리	5	정량/정성	
	사업활성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	3	정성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구축 노력	2	정성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5	정성	
사회적가치	사회적 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 제고	3	정성		
<b>과정지표 소계</b>		<b>40</b>			
결과 지표 (45)	성과목표의 적정성	5	정량/정성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30	정량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5	정성		
	지도점검 결과 조치 이행률	2.5	정량		
	지도점검 결과 이행 노력도	2.5	정성		
	<b>결과지표 소계</b>		<b>45</b>		
만족도 (15)	이용자 만족도	12	정량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3	정성		
	<b>만족도 소계</b>		<b>15</b>		
가점 (+4)	대내외 수상실적	±4	정량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 혁신		정성		
	계획대비 프로그램 운영 혁신		정성		
	지역사회 기부		정량		
감점 (-4)	부적절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4	정량		
	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정량		
	협약사항 위반		정량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		정량		
<b>총 합계</b>		<b>100</b>			

나. 사무형

- 시민이용 - 사무형 민간위탁의 평가지표 구성은 아래와 같음.
- 과정지표 35점, 결과지표 50점, 만족도 15점, 가감점 ±4점으로 구성됨.

표 91 | 시민이용 - 사무형 민간위탁 평가지표 구성

구분	평가지표	배점	방법	비고	
과정 지표 (35)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3	정성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1.5	정성	
	인력 및 조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2	정량/정성	
		인력의 전문성 보유	2	정량/정성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5	정성	
	예산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	정량	
		경제적 효율성	2	정성	
	사업운영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 규정 준수 수준	3	정량/정성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5	정량/정성	
	사업활성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	3	정성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구축 노력	2	정성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5	정성	
	사회적가치	사회적 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 제고	3	정성	
	<b>과정지표 소계</b>		<b>35</b>		
결과 지표 (50)	성과목표의 적정성	5	정량/정성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35	정량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5	정성		
	지도점검 결과 조치 이행률	2.5	정량		
	지도점검 결과 이행 노력도	2.5	정성		
	<b>결과지표 소계</b>		<b>50</b>		
만족도 (15)	이용자 만족도	12	정량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3	정성		
	<b>만족도 소계</b>		<b>15</b>		
가점 (+4)	대내외 수상실적	±4	정량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 혁신		정성		
	계획대비 프로그램 운영 혁신		정성		
지역사회 기부	정량				
감점 (-4)	부적절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정량		
	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정량		
	협약사항 위반		정량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	정량			
<b>총 합계</b>		<b>100</b>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2) 중간지원조직 부문

가. 시설형

- 중간지원조직 - 시설형 민간위탁의 평가지표 구성은 아래와 같음.
- 과정지표 40점, 결과지표 45점, 만족도 15점, 가감점 ±4점으로 구성됨.

표 92 | 중간지원조직 - 시설형 민간위탁 평가지표 구성

구분	평가지표	배점	방법	비고	
과정 지표 (40)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3	정성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1.5	정성	
	인력 및 조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2	정량/정성	
		인력의 전문성 보유	2	정량/정성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5	정성	
	예산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	정량	
		경제적 효율성	2	정성	
	사업운영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 규정 준수 수준	2	정량/정성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5	정량/정성	
		시설물 및 안전 관리	4	정량/정성	
	사업활성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	3	정성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구축 노력	2	정성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3	정성	
	사회적가치	사회적 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 제고	3	정성	
		거버넌스 구축도	2	정성	
		민간주체에 대한 지원 노력도	2	정성	
	<b>과정지표 소계</b>		<b>40</b>		
	결과 지표 (45)	성과목표의 적정성	5	정량/정성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30	정량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5	정성		
지도점검 결과 조치 이행률		2.5	정량		
지도점검 결과 이행 노력도		2.5	정성		
<b>결과지표 소계</b>		<b>45</b>			
만족도 (15)	이용자 만족도	12	정량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3	정성		
	<b>만족도 소계</b>		<b>15</b>		
가점 (+4)	대내외 수상실적	±4	정량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 혁신		정성		
	계획대비 프로그램 운영 혁신		정성		
	지역사회 기부		정량		
감점 (-4)	부적절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4	정량		
	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정량		
	협약사항 위반		정량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		정량		
<b>총 합계</b>		<b>100</b>			

나. 사무형

- 중간지원조직 - 사무형 민간위탁의 평가지표 구성은 아래와 같음.
- 과정지표 35점, 결과지표 50점, 만족도 15점, 가감점 ±4점으로 구성됨.

[표 93] 중간지원조직 - 사무형 민간위탁 평가지표 구성

구분	평가지표	배점	방법	비고	
과정 지표 (35)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3	정성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1	정성	
	인력 및 조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2	정량/정성	
		인력의 전문성 보유	2	정량/정성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5	정성	
	예산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	정량	
		경제적 효율성	2	정성	
	사업운영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 규정 준수 수준	2	정량/정성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	정량/정성	
	사업활성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	3	정성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구축 노력	2	정성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3	정성	
	사회적가치	사회적 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 제고	3	정성	
		거버넌스 구축도	2	정성	
		민간주체에 대한 지원 노력도	2	정성	
<b>과정지표 소계</b>		<b>35</b>			
결과 지표 (50)	성과목표의 적정성	5	정량/정성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35	정량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5	정성		
	지도점검 결과 조치 이행률	2.5	정량		
	지도점검 결과 이행 노력도	2.5	정성		
	<b>결과지표 소계</b>		<b>50</b>		
만족도 (15)	이용자 만족도	12	정량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3	정성		
	<b>만족도 소계</b>		<b>15</b>		
가점 (+4)	대내외 수상실적	±4	정량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 혁신		정성		
	계획대비 프로그램 운영 혁신		정성		
	지역사회 기부		정량		
감점 (-4)	부적절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4	정량		
	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정량		
	협약사항 위반		정량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		정량		
<b>총 합계</b>		<b>100</b>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3) 사회복지 부문

가. 시설형

- 사회복지 - 시설형 민간위탁의 평가지표 구성은 아래와 같음.
- 과정지표 40점, 결과지표 45점, 만족도 15점, 가감점 ±4점으로 구성됨.

|표 94| 사회복지 - 시설형 민간위탁 평가지표 구성

구분	평가지표	배점	방법	비고	
과정 지표 (40)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3	정성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1.5	정성	
	인력 및 조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2	정량/정성	
		인력의 전문성 보유	3	정량/정성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5	정성	
	예산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	정량	
		경제적 효율성	2	정성	
	사업운영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 규정 준수 수준	3	정량/정성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5	정량/정성	
		시설물 및 안전 관리	5	정량/정성	
	사업활성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	5	정성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구축 노력	2	정성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2	정성	
	사회적가치	사회적 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 제고	3	정성	
<b>과정지표 소계</b>		<b>40</b>			
결과 지표 (45)	성과목표의 적정성	5	정량/정성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30	정량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5	정성		
	지도점검 결과 조치 이행률	2.5	정량		
	지도점검 결과 이행 노력도	2.5	정성		
	<b>결과지표 소계</b>		<b>45</b>		
만족도 (15)	이용자 만족도	12	정량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3	정성		
	<b>만족도 소계</b>		<b>15</b>		
가점 (+4)	대내외 수상실적	±4	정량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 혁신		정성		
	계획대비 프로그램 운영 혁신		정성		
	지역사회 기부		정량		
감점 (-4)	부적절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정량		
	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정량		
	협약사항 위반		정량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		정량		
<b>총 합계</b>		<b>100</b>			

나. 사무형

- 사회복지 - 사무형 민간위탁의 평가지표 구성은 아래와 같음.
- 과정지표 35점, 결과지표 50점, 만족도 15점, 가감점 ±4점으로 구성됨.

[표 95] 사회복지 - 사무형 민간위탁 평가지표 구성

구분	평가지표		배점	방법	비고
과정 지표 (35)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3	정성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1.5	정성	
	인력 및 조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2	정량/정성	
		인력의 전문성 보유	3	정량/정성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5	정성	
	예산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	정량	
		경제적 효율성	2	정성	
	사업운영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 규정 준수 수준	3	정량/정성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5	정량/정성	
	사업활성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	5	정성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구축 노력	2	정성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2	정성	
	사회적가치	사회적 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 제고	3	정성	
	<b>과정지표 소계</b>			<b>35</b>	
결과 지표 (50)	성과목표의 적정성		5	정량/정성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35	정량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5	정성	
	지도점검 결과 조치 이행률		2.5	정량	
	지도점검 결과 이행 노력도		2.5	정성	
	<b>결과지표 소계</b>			<b>50</b>	
만족도 (15)	이용자 만족도		12	정량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3	정성	
	<b>만족도 소계</b>			<b>15</b>	
가점 (+4)	대내외 수상실적		±4	정량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 혁신			정성	
	계획대비 프로그램 운영 혁신			정성	
	지역사회 기부			정량	
감점 (-4)	부적절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4	정량	
	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정량	
	협약사항 위반			정량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			정량	
<b>총 합계</b>			<b>100</b>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4) 단순시설관리

■ 단순시설관리 민간위탁의 평가지표 구성은 아래와 같음. (사무 특성상 시설형만 존재함)

■ 과정지표 50점, 결과지표 35점, 만족도 15점, 가감점 ±4점으로 구성됨.

[표 96] 단순시설관리 민간위탁 평가지표 구성

구분	평가지표		배점	방법	비고
과정 지표 (50)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인력 및 조직	인력 배치 및 고용안정의 적정성	10	정성	
	예산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10	정량	
	사업운영	시설물 및 안전관리	15	정량/정성	
	사업활성화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3	정량/정성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 제고	2	정성	
	<b>과정지표 소계</b>		<b>50</b>		
결과 지표 (35)	성과목표의 적정성		5	정량/정성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20	정량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5	정성	
	지도점검 결과 조치 이행률		2.5	정량	
	지도점검 결과 이행 노력도		2.5	정성	
	<b>결과지표 소계</b>		<b>35</b>		
만족도 (15)	이용자 만족도		12	정량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3	정성	
	<b>만족도 소계</b>		<b>15</b>		
가점 (+4)	대내외 수상실적		±4	정량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 혁신			정성	
	계획대비 프로그램 운영 혁신			정성	
	지역사회 기부			정량	
감점 (-4)	부적절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4	정량	
	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정량	
	협약사항 위반			정량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			정량	
<b>총 합계</b>			<b>100</b>		

(5) 실적보고서 작성 기준

-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수탁기관의 실적보고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상인 수탁기관의 실적보고서 작성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중간지원조직 - 시설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타 분야의 경우 동일한 항목 참고.

|표 97| 중간지원조직 - 시설형 민간위탁 평가지표 구성

구분	평가지표		작성 기준	
과정 지표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작성내용	■ 사업계획 기입 (목적 / 일정 / 기대효과 / 예산투입계획 등)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작성내용	■ 전기 사업 자체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 도출 사항 기입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자체평가 자료
	인력 및 조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작성내용	■ 운영 조직도, 인력현황, 업무분장 기입
			참고자료	■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인력의 전문성 보유	작성내용	■ 투입인력 경력, 자격사항, 교육실적 등 기입
			참고자료	■ 경력 및 자격 증빙자료, 교육수행 실적 등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작성내용	■ 지급 임금 수준, 고용안정 노력, 법정 수당 지급 현황, 근로여건 개선 노력 등 기입	
		참고자료	■ 임금지급 명세서, 근무대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예산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작성내용	■ 수탁기간 동안의 예산 집행률 기입
			참고자료	■ 예산서 및 결산서
		경제적 효율성	작성내용	■ 비용절감 또는 수입확대 노력, 조직 효율화 노력 등 기입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
	사업운영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 규정 준수 수준	작성내용	■ 사무편람, 안전대책 매뉴얼, 시설관리 매뉴얼, 재산대장 등 작성 여부 기입
			참고자료	■ 수탁기관 보유 매뉴얼 자료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작성내용	■ 제3자위탁 여부, 사업 투명성 강화 활동(교육 및 캠페인 등)	
		참고자료	■ 해당 자료	
시설물 및 안전 관리		작성내용	■ 안전점검일지 작성 여부, 소방 및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안전물품 배치 여부,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여부 등 기입	
		참고자료	■ 각종 안전일지, 사업계획서 등	
사업 활성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	작성내용	■ 사업관련 환경 및 이용자 분석 자료,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탁기관 노력 등 기입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대내외 여건 분석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구축 노력	작성내용	■ 오산시 등 관련 기관 보고 및 협조 체계, 오산시 보고 주기 및 내용 등 기입	
		참고자료	■ 발주기관 보고 자료, 유관기관 협조 자료 등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작성내용	■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및 결과물, 홍보 및 마케팅 효과 등 기입	
		참고자료	■ 각종 홍보자료	
사회적	사회적 기여 등	작성내용	■ 수탁기관 사무와 사회적 가치 연관성, 사회적 약자 고용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가치	위탁사무 가치 제고	참고자료	여부, 봉사활동 여부, 기부 여부, 사회적 약자 기업 물품 구매 여부 등 기입	
		작성내용	■ 지역사회 활동 자료, 물품구매내역,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거버넌스 구축도	작성내용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네트워크 현황, 민-민, 민-관 중재 역할 수행 경험 등 기입	
		참고자료	■ 수탁기관 네트워크 현황	
	민간주체에 대한 지원 노력도	작성내용	■ 민간 지원 프로그램 현황,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등 기입	
참고자료		■ 해당 활동 실적		
<b>과정지표 소개</b>				
결과 지표	성과목표의 적정성	작성내용	■ 연도별 설정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설정의 근거, 도전적 목표 설정을 위한 노력 등 기입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자체 평가 보고서 등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작성내용	■ 설정된 사업성과 목표 달성률 기입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자체평가 보고서 등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작성내용	■ 수탁기관 자체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내용(계획, 목표, 성과 등) 기입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자체 평가보고서	
	지도점검 결과 조치 이행률	작성내용	■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기입	
		참고자료	■ 지도감독 보고서	
	지도점검 결과 이행 노력도	작성내용	■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세부 내용 기입	
		참고자료	■ 지도감독 보고서 및 발주기관 보고서	
	<b>결과지표 소개</b>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작성내용	■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표 기입
참고자료			■ 만족도 설문지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작성내용	■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 여부,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방법 등 기입	
		참고자료	■ 만족도 조사결과, 사업계획서	
<b>만족도 소개</b>				
가점	대내외 수상실적	■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입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 혁신			
	계획대비 프로그램 운영 혁신			
	지역사회 기부			
감점	부적절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협약사항 위반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			

### 3절 공공위탁에 관한 검토

#### 1. 운영방식 검토

##### 1) 직영운영

- 선발-배치-전환-승진-보상 등 모든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등의 원칙에 준하여 운영

|표 98| 직영운영 요약

구분	내용
대원칙	○ 공무원 직접 운영
운영관리 방식	○ 자치단체의 과단위·과단위 내 팀단위·사업소 단위 등 자치단체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인사상 운영	○ 선발-배치-전환-승진-보상 등 모든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등의 원칙에 준하여 운영
근거법	○ 부서장과 직원들의 인사는 공무원법과 인사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운영은 지방재정법, 자치단체일반회계규정, 자치단체특별회계규정 등에 따라 실시

##### 2)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뜻함.
-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Cost-Less)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업무를 관리하며 행정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민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공공위탁은 민간위탁의 한 갈래로 볼 수 있으며, 민간위탁보다 공공부문에 좀 더 치우친 운영방식으로 볼 수 있음.



|그림 50|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3) 각 운영방식별 비교

■ 세 가지 운영 방식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음.

표 99 | 운영방식별 관리의 비교

구분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1.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으로 국가(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계획, 설계, 시공, 운영 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실시</li> <li>•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조직개편 및 근무자 처우개선, 교육 기회 확대 등의 조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는 국가(지자체)가 유지</li> <li>• 시설은 운영, 관리를 일괄 또는 부분적으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재단에 위탁하여 공공성과 관리효율을 모두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는 국가(지자체)가 유지</li> <li>• 시설은 운영, 관리를 일괄 또는 부분적으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효율을 향상 및 상호경쟁을 통한 경비절감을 도모</li> </ul>
2. 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으로 별도의 법 개정 또는 보완 불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관리에 대한 다소간의 법규개정이 필요. 또한 수익계약을 위해선 별도의 조례 제정 및 개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관리에 대한 다소간의 법규개정 (가격기준, 대가의 기준, 업체 선정방법 등)이 필요</li> </ul>
3. 관리조직구성 및 기대되는 관리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조직상의 문제는 없으나 공공부문의 독점성에 기인하는 관료조직의 특성상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우려</li> <li>• 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관리 담당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자체)는 재단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처리수준에 대한 감독규제업무만 수행하므로 현행보다 적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 가능</li> <li>• 지자체와 재단간의 업무 및 책임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관리 우수</li> <li>• 이윤을 배제한 공공성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자체)는 위탁회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처리수준에 대한 감독규제업무만 수행하므로 현행보다 적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 가능</li> <li>• 지자체와 위탁업체간의 업무 및 책임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관리 우수</li> <li>• 민간회사 특성상 이윤추구 배제불가</li> </ul>
4. 기술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적정운영 경쟁성이 떨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기술로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기술로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li> </ul>
5. 시설물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장 및 보수에 대한 신속대응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자나 고장에 신속대응 가능, 시설물 수명연장, 예산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자나 고장에 신속대응 가능, 시설물 수명연장, 예산절감</li> </ul>
6. 근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기피 현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인력 상주로 근무기피 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인력 상주로 근무기피 보완</li> </ul>
7. 예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한 예산에 맞추어 운영하므로 예산낭비요인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비 효율 극대화를 도모해 예산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비 효율 극대화를 도모해 예산절감</li> </ul>

자료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www.kcomi.re.kr) ; 윤하연(2006),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방안」, 인천발전연구원, p.41.

■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며, 운영체계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100 | 운영방식별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행정과 연계, 종합적 사업수행 가능</li> <li>● 고객의사반영 용이</li> <li>● 직접적 통제 용이</li> <li>● 공공성 확보 용이</li> <li>● 저공급가격 유지</li> <li>●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과 안정성 유지</li> <li>● 자금조달 용이</li> <li>● 채산성사업의 수행 가능</li> <li>● 도산, 파업 등에 의한 업무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 통제와 정치적 고려</li> <li>● 순환보직제도 준수에 따른 전문성과 계속성 결여</li> <li>● 인사이동으로 운영기술 축적 곤란</li> <li>● 책임경영의식의 결여</li> <li>● 경영마인드 결여로 기술개발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어려움</li> <li>● 업무성과평가나 부실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려움</li> <li>● 감사를 의식한 조직의 경직성과 시설 운영 탄력성 저하</li> <li>● 행정구역을 초월한 업무수행의 한계성</li> <li>● 동일 지자체 시설을 개별 운영함으로써 운영비 과다 소요</li> </ul>
공공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방식의 활용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li> <li>● 운영관리, 고용의 탄력성, 신속한 대응 가능</li> <li>● 서비스생산비용 절감</li> <li>● 결과중심적 성과관리</li> <li>● 전문성과 기술인력 활용</li> <li>● 운영의 효율성</li> <li>● 관리자와 규제자 동일로 인한 감독기능 저하 방지</li> <li>● 공공기관 고유의 비전과 사업의 목적 일치에 따른 운영성과 실현</li> <li>● 공공성 확보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에 따른 감시비용 발생</li> <li>● 대체인력 미확보 시 계약비용 상승</li> <li>●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위탁자와 피위탁자 책임소재 불분명</li> <li>● 재정/기술능력 부족한 재단과 계약시 업무 중단 및 서비스 질 저하 우려</li> <li>● 각종 시설 개/보수 시, 지자체와 수탁 기업 간의 비용전가 우려</li> <li>●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 구현 미흡</li> <li>● 정부의 책임 및 통제의 약화</li> <li>● 경영마인드 결여로 기술개발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어려움</li> </ul>
민간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방식의 활용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li> <li>● 정부성장의 억제</li> <li>● 운영관리, 고용의 탄력성, 신속한 대응 가능</li> <li>● 서비스생산비용 절감</li> <li>● 결과중심적 성과관리</li> <li>● 규모의 경제 실현</li> <li>●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활용</li> <li>● 운영의 효율성</li> <li>● 사업운영 경영마인드 제고</li> <li>● 관리자와 규제자 동일로 인한 감독기능 저하 방지</li> <li>● 지역독점 방지 및 경쟁을 통한 우수업체 선정 가능</li> <li>● 시설의 개보수에 민간기업 설계 및 시공 인력 활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에 따른 감시비용, 자동계약갱신 한계</li> <li>● 지나친 이윤추구로 공익성 저해 우려</li> <li>● 시대추구적 행태, 서비스 제공 중단 우려</li> <li>● 대체인력 미확보 시 계약비용 상승</li> <li>●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위탁자와 피위탁자 책임소재 불분명</li> <li>● 재정/기술능력 부족한 영세업체 선정시, 운영관리 부실 및 민간기업의 도산 및 파업 등에 의한 업무 중단 우려</li> <li>● 각종 시설 개/보수 시, 지자체와 수탁 기업 간의 비용전가 우려</li> <li>●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 구현 미흡</li> <li>● 정부의 책임 및 통제의 약화</li> </ul>

## 2.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

-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타당성 검토 기준에 따라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검토하였음.

표 101 |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

순번	기준	내용
1	개념적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은 위탁의 한 범주로서,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수행되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해당 규정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음.</li> <li>■ 민간위탁과는 수행주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등의 상위부처 관리를 받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함.</li> <li>■ 즉, 민간위탁과는 위탁의 목적 및 수행절차는 크게 차이가 없음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li> </ul>
2	사례적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기존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공공위탁도 민간위탁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li> <li>■ 이뿐 아니라 개정 및 제정 시기의 차이일 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구리시 등)에서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li> </ul>
3	절차적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의 경우, 설립단계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됨.</li> <li>■ 이 경우, 수탁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나, 설립 이후 수탁받는 사업에 관한 타당성 검토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li> <li>■ 이에 따라 공공위탁 타당성 검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li> </ul>

## 3. 공공위탁 조례 규정 사항

- 공공위탁에 관한 규정을 민간위탁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에 따른 조항 구성은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음.

표 102 | 공공위탁 조례 구성(안)

순번	조항	반영 내용
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공공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기준 명시
2	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등	■ 공공위탁 적정성, 계약, 지도감독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규정
3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 공공위탁도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의회동의 대상 (단, 당연 사업 제외)
4	공공위탁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원칙이 아님에 따라 선정 타당성 기준 별도 마련
5	공공위탁의 계약 체결 등	■ 공공위탁 계약에 관한 기준 마련
6	공공위탁 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 공공위탁 관리를 위한 발주기관 의무사항 마련
7	공공위탁 비용 부담 등	■ 공공위탁 운영비 지원 근거 조항 마련
8	공공위탁 사용료 등의 징수	■ 수입발생 사무에 대한 공공위탁 사용료 징수 근거 및 절차 마련
9	공공위탁 정산 및 실적보고 등	■ 공공위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10	공공위탁 사무편람 등	■ 사무편람 작성의 의무 규정
11	공공위탁 지도·감독 등	■ 발주부서의 지도감독 권한 부여 및 수행 절차 마련
12	공공위탁 감사	■ 발주부서의 감사 권한 부여 및 수행 절차 마련
13	공공위탁 계약취소 등	■ 공공위탁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 4절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

### 1.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앞서 검토하였던 제도개선안 및 공공위탁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공공위탁도 포함 대상임에 따라 조례명을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음.

표 103 |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b>제1장 총칙</b>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의 선정 원칙, 수탁기관 선정 절차,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수정</li> <li>• 민간위탁 조례의 범위를 기존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까지 확대하였고, 그에 따른 목적 및 범위 등을 수정</li> </ul>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간위탁”이란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li> <li>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li> <li>3. “위탁사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li> </ol>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li> <li>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조례 적용 범위 확장에 따라 공공위탁 /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추가</li> <li>• 기존 수탁사무의 내용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의 정의 내용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삭제 조치</li> <li>• 기존 수탁기관의 내용을 공공위탁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그리고 기관 및 개인으로 내용 수정</li> </ul>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관계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 사무를 말한다.</p> <p>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 종료 후 새로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p> <p>5. “재계약”이란 위탁계약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p>	<p>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p> <p>4. “수탁기관”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p> <p>5.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p> <p>6.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외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정의 문구 수정 (큰 내용의 변동은 없음)</li> </ul>
<p>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p>	<p>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범위를 공공위탁까지 확대함에 따라 제1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함.</li> <li>•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 공유재산법 내 관리위탁은 민간위탁과 동일개념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li> <li>•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지침에서는 관리위탁에 관한 예산비목을 모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li> <li>• 공유재산법에서 명시하는 관리위탁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명시하는 민간위탁의 절차는 동일하다 볼 수 있음에 따라 제2항의 내용 추가</li> </ul>
<p>&lt; 신설 &gt;</p>	<p>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행과 구분되는 위탁의 특성은 책임 및 권한이 수</li> </ul>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책임은 위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위탁기관에 위임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책임 및 명의 등의 사항을 위탁기관이 책임지며, 오산시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는다는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b>제2장 공공위탁</b>	
<b>&lt; 신설 &gt;</b>	<b>제5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b>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위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위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위탁에 관한 절차 추가 부문 • 공공위탁을 추진하기 전 사전 적정성 검토에 관한 의무 조항 추가 • 공공위탁은 민간위탁 대비 공공성이 다소 강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추진되며, 이에 따라 적정성 검토 기준에 책임행정의 보장성이 추가됨. • 또한,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취지(민간위탁 촉진)에 맞도록 공공위탁의 지나친 확대를 지양하는 조항을 삽입.
<b>&lt; 신설 &gt;</b>	<b>제6조(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등)</b> ①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위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2. 위탁기관의 선정	• 공공위탁에 관한 절차 추가 부문 • 이번에 추가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역할을 공공위탁 분야에서도 수행하는 공공위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명시 • 단, 공공위탁의 수행주체인 공공기관은 상위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중복관리를 최대한 지양하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3. 재위탁, 재계약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p>	<p>기 위하여 심의 항목을 다소 축소(성과평가, 감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해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 지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 신설 &gt;</b></p>	<p><b>제7조(공공위탁의 의회 동의)</b>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개시 60일 전까지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li> <li>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li> <li>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li> <li>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li> <li>5.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의 사무</li> <li>6. 재난, 재해 대응 등 공공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사무명</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에 관한 절차 추가 부문</li> <li>•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 하였음</li> <li>• 단,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당연사업에 대한 예외 조항을 추가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 축소</li> <li>• 위탁개시 60일 전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성과평가 및 위탁 추진 등의 원활한 추진 도모</li> </ul>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의 내용 4. 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5조에 따른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공공위탁 성과보고서(재계약, 재위탁의 경우) 9.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 3. 사업장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의 변경 등	
<p>&lt; 신설 &gt;</p>	<p><b>제8조(공공위탁 수탁기관 선정)</b>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p>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에 관한 절차 추가 부문</li> <li>• 공공위탁에서의 수탁기관 선정 과정은 공개모집 등의 절차가 아닌 수행 공공기관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부분임에 따라 적합성 검토 기준을 명시하였음</li> </ul>
<p>&lt; 신설 &gt;</p>	<p><b>제9조(공공위탁의 계약 체결 등)</b>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1. 위·수탁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사무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에 관한 절차 추가 부문</li> <li>• 공공위탁 계약체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추가</li> <li>• 위탁기간 기준을 설정하였고, 위탁계약 만료일자를 설정하여 행정의 편의성 도모</li> </ul>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3. 위탁사무 및 내용</p> <p>4. 위탁기간</p> <p>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p> <p>6.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p> <p>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p> <p>8. 수탁기관의 의무</p> <p>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p> <p>10.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p> <p>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 만료일자는 12월 31일로 하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lt; 신설 &gt;</p>	<p><b>제10조(공공위탁 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b>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에 관한 절차 추가 부문</li> <li>• 공공위탁 시행 시, 위탁사무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설정하여야 하는 발주기관의 의무 명시화</li> </ul>
<p>&lt; 신설 &gt;</p>	<p><b>제11조(공공위탁 비용 부담 등)</b>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에 관한 절차 추가 부문</li> </ul>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위탁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은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 삽입</li> <li>• 공공위탁 예산편성은 적정성 검토와 의회동의를 거친 후에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전 절차의 의무화 강조</li> </ul>
<p>&lt; 신설 &gt;</p>	<p><b>제12조(공공위탁 사용료 등의 징수)</b>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p> <p>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에 관한 절차 추가 부문</li> <li>• 수입이 발생하는 사무에 관한 공공위탁 시, 사용료 등의 징수 권한 명시</li> </ul>
<p>&lt; 신설 &gt;</p>	<p><b>제13조(공공위탁 정산 및 실적보고 등)</b>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 시장이 부담한 위탁비용의 정산 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위탁비용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에 관한 절차 추가 부문</li> <li>• 공공위탁 비용 및 수입에 대한 정산을 의무화</li> <li>• 또한, 발주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도 의무화</li> </ul>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lt; 신설 &gt;</p>	<p><b>제14조(공공위탁 사무편람 등)</b>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10조에 따른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p> <p>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에 관한 절차 추가 부문</li> <li>•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발주기관의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의무사항 명시</li> </ul>
<p>&lt; 신설 &gt;</p>	<p><b>제15조(공공위탁 지도·감독 등)</b>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에 관한 절차 추가 부문</li> <li>• 발주기관의 지도감독 권한 명시</li> <li>• 지도감독에 따른 처리사항 구체화</li> </ul>
<p>&lt; 신설 &gt;</p>	<p><b>제16조(공공위탁 감사)</b>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에 관한 절차 추가 부문</li> </ul>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및 결과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감사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기관 감사에 대한 권한 및 의무사항 명시</li> <li>• 공공위탁 감사에 관한 처리사항 명시</li> </ul>
<p>&lt; 신설 &gt;</p>	<p><b>제17조(공공위탁 계약취소 등)</b>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기관이 제9조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li> <li>2. 수탁기관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li> <li>3. 수탁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li> <li>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li> <li>5.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li> <li>6. 수탁기관 임·직원의 범죄행위 등 비위 발생 또는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li> </ol>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에 관한 절차 추가 부문</li> <li>• 공공위탁 계약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와 함께 명시화</li> <li>• 계약 취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가 (원상복구 원칙)</li> </ul>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위탁시설(장비·물품 포함)을 원상회복하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가 부담한 위탁비용의 환수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제4조(대상사무)</b>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li> <li>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li> <li>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li> <li>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li> </ol> <p>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li> <li>2. 환경기초시설</li> <li>3. 문화·관광시설</li> <li>4. 공원·녹지시설</li> <li>5. 보건·건강증진시설</li> <li>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li> <li>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li> <li>8.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 등</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민간위탁</b></p> <p><b>제18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b>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li> <li>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li> <li>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li> <li>4. 그 밖에 공공시설물의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li> </ol>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li> <li>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li> <li>3. 경제적 효율성</li> <li>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li> <li>5. 성과 측정의 용이성</li> <li>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li> <li>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li> </ol>	<p><b>적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민간위탁 구분에 따른 조항명 변경</li> <li>• 사무의 기준 원칙에 민간위탁의 정의(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 추가</li> <li>• 기존 제2항은 민간위탁 사무를 나열식으로 설정하여 민간위탁 사무 판단 기준에 혼란을 줄 수 있었고, 또한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였음</li> <li>• 이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은 제1항의 원칙을 따르되, 적정성 판단 기준을 추가하여 총 2단계에 따른 판단 기준을 설정함</li> <li>• 즉, 1단계는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며, 2단계에서는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임</li> </ul>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lt; 신설 &gt;</p>	<p><b>제19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b> ① 민간위탁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소속으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제18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li> <li>3.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li> <li>4. 제28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li> <li>5. 제33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li> <li>6. 제34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li> <li>7. 제3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li> <li>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신규 위원회에 관한 사항 추가</li> <li>•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li> <li>• 운영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 외의 사항을 총괄하는 위원회로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li> </ul>
<p>&lt; 신설 &gt;</p>	<p><b>제20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 사무 관련 업무 총괄 부서장</li> <li>2.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li> <li>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신규 위원회에 관한 사항 추가</li> <li>•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li> <li>•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중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가하였음</li> <li>• 선정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과 함께 즉시 해산이 원칙이나 운영위원회는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설정하였음</li> </ul>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4.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 또는 해당 업무에 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p> <p>5.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p> <p>6.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⑥ 운영위원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p> <p>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 제출</p> <p>⑦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p> <p>⑧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p>	
<p>제6조(위탁계획)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p>	<p><b>제21조(민간위탁의 의회 동의)</b>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민간위탁 구분에 따른 조항명 변경</li> <li>• 민간위탁으로 분류가 되나, 용역과 성격이 유사한 1</li> </ul>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 및 위탁근거</li> <li>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li> <li>3. 범위·내용 및 타당성</li> <li>4. 위탁기간 및 조건</li> <li>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li> <li>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li> <li>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7조(동의 등)</b> 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오산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li> <li>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li> <li>3. 사업장의 위치 변경</li> <li>4. 기타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의 변경 등</li> </ol> <p>③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재계약 포함)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개시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개시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li> <li>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li> <li>3.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의 사무</li> </ol> <p>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사무명</li> <li>2. 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li> <li>3. 위탁 사무 내용</li> <li>4. 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li> <li>5. 위탁 기간</li> <li>6. 수탁자 선정방식</li> <li>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li> <li>8. 제18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li> <li>9.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재위탁, 재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li> <li>10.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li> </ol> <p>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li> </ol>	<p>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운영금액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무 그리고 청소 및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에 대한 동의 절차를 제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개시 60일 전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성과평가 및 위탁 추진 등의 원활한 추진 도모</li> </ul>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b>제8조(공개모집)</b>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과 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li> <li>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li> <li>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li> <li>4. 사업계획의 타당성</li> <li>5. 그 밖에 시장이 그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li> </ol>	<p>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p> <p>3. 사업장의 위치 변경</p> <p>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의 변경 등</p> <p><b>제22조(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b>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수준</li> <li>2. 재정 부담 능력</li> <li>3. 책임능력과 공신력</li> <li>4.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li> <li>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li> <li>6.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로부터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p> <p>⑤ 시장은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민간위탁 구분에 따른 조항명 변경</li> <li>•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 조건을 추가하였음</li> <li>• 공개모집이 원칙이되, 그 외의 방법(제한입찰, 수의계약 등)을 적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li> </ul>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b>제10조(설치)</b>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성과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거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의결 할 수 있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p> <p><b>제11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당연직 위원은 오산시 부시장을 포함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명으로 임명하고 전체위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도록 한다.</p> <p>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고, 어느 한 쪽의 성이 전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li> <li>2. 관련분야 전문가</li> <li>3. 이용시설 대표자</li> <li>4. 사회단체 회원</li> <li>5. 기타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li> </ol> <p>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b>제23조(수탁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 설치 등)</b>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수탁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국·소장</li> <li>2.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li> <li>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li> <li>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또는 해당 업무에 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li> <li>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li> <li>• 기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수탁기관 선정으로 한정하여 축소함</li> <li>• 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li> </ul>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li> <li>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li> <li>3. 회의록 작성 및 보관</li> </ol> <p><b>제12조(회의)</b> ①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14일 이내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p> <p><b>제14조(의견청취)</b> 위원장은 해당 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b>제15조(비밀준수)</b>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p>	<p>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및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⑥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p> <p>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p> <p><b>제16조(수당)</b>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p> <p><b>제17조(운영세칙)</b>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b>제13조(제척 등)</b>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위원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은 위원장이 주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li> <li>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li> <li>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li> <li>4.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기피 신청의</p>	<p><b>제24조(위원의 제척 등)</b> ① 위원회의 위원(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장은 직권 또는 해당 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여부를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li> <li>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li> <li>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li> <li>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li> <li>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민간위탁 구분에 따른 조항명 변경</li> <li>•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공통 적용에 관한 사항 명시</li> <li>• 위원의 제척 사유 추가 및 내용 구체화</li> </ul>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p> <p>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위원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p> <p>④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⑤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p>	
<p>&lt; 신설 &gt;</p>	<p><b>제25조(위원의 해촉)</b> 시장은 위촉위원(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li>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추가</li> <li>•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정 구성원 유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해촉 근거 조항 마련</li> </ul>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b>제5조(계약기간)</b> ①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 만료일자는 12월 31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b>제9조(계약)</b>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간위탁의 목적</li> <li>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li> <li>3. 위탁사무의 명칭과 내용</li> <li>4. 위탁계약기간</li> <li>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li> <li>6. 수탁기관의 의무</li> <li>7. 계약의 해지 사유</li> <li>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li> <li>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li>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5.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p> <p><b>제26조(민간위탁 계약체결 등)</b>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제22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 만료일자는 12월 31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④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li> <li>2.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li> <li>3. 위탁기간</li> <li>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li> <li>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li> <li>6.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의 징수 및 처리방법</li> <li>7.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li> <li>8.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li> <li>9.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li> <li>10. 그 밖에 위탁사무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민간위탁 구분에 따른 조항명 변경</li> <li>• 계약체결 기한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도모</li> <li>•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li> <li>•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원활한 성과평가 추진을 위한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li> </ul>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lt; 신설 &gt;</p>	<p><b>제27조(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b>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결과 공개원칙에 관한 조항 추가</li> </ul>
<p><b>제26조(재계약)</b>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내용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p> <p>② 시설 등의 기부채납 사유로 선정된 수탁기관은 최초 민간위탁을 제외하고, 기부채납된 금액과 약정된 기간 내에서 재계약 된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의 사유로 재계약 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성과평가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의결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⑤ 그 밖의 재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28조(민간위탁 재계약 등)</b>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0조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 이행 여부</li> <li>2. 제33조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의 이행결과</li> <li>3. 제34조 감사 결과</li> <li>4. 제35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li> </ol> <p>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따른 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민간위탁 구분에 따른 조항명 변경</li> <li>• 재계약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 무화</li> <li>•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발주기관에서는 제2항의 사항을 준비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li> <li>• 사무 및 시설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90일의 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li> </ul>
<p><b>제18조(운영지원)</b>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위탁비용”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은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p>	<p><b>제29조(민간위탁 운영지원)</b>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민간위탁 구분에 따른 조항명 변경</li> <li>• 계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추가</li> </ul>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다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轉貸)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p> <p><b>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b> ① 수탁기관은 위탁 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해당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li> <li>2. 관계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li> <li>3.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li> <li>4.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li> <li>5.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할 경우에는 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li> <li>6.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li> </ol> <p>②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해야하며, 수탁기관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p>	<p>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p> <p><b>제30조(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의무)</b>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li> <li>2. 시설, 장비, 비용 등은 <b>위탁받은 목적</b>에만 사용하여야 한다.</li> <li>3.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li> <li>4. 위탁받은 사무 또는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으며,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li> <li>5.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할 경우에는 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li> <li>6. 수탁기관은 <b>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b>하여야 한다.</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민간위탁 구분에 따른 조항명 변경</li> <li>•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li> </ul>
<p><b>제20조(자부담)</b>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자부담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독립된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p>	<p>&lt; 폐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부담 조항 폐지</li> <li>• 민간위탁 특성 상, 자부담은 민간위탁의 원칙적인 사항이라 보기 어려움</li> </ul>
<p><b>제21조(수입금)</b>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p> <p>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을 시장이 지정하는</p>	<p><b>제31조(민간위탁의 사용료 징수 등)</b>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p> <p>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민간위탁 구분에 따른 조항명 변경</li> <li>• 공공사무 및 시설물 운영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진행되도록 명시</li> </ul>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b>제22조(사무편람 등)</b>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기간·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p> <p>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b>제32조(민간위탁 사무편람)</b>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기간·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p> <p>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민간위탁 구분에 따른 조항명 변경</li> <li>• 발주기관의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의무사항 명시</li> </ul>
<p><b>제23조(지도·감독)</b>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p>	<p><b>제33조(민간위탁 지도·감독 등)</b>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민간위탁 구분에 따른 조항명 변경</li> <li>• 발주기관의 지도감독 의무화 명시</li> <li>• 지도감독의 처리방법 구체화</li> </ul>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제3항의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해당 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b>제24조(사무 감사)</b>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p>	<p><b>제34조(민간위탁 사무처리 감사)</b>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감사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민간위탁 구분에 따른 조항명 변경</li> <li>• 감사결과 및 사유를 통보하도록 명시화</li> </ul>
<p><b>제25조(성과평가)</b>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등의 인센티브와 재위탁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p> <p>④ 최종 성과평가는 위탁계약 기간 만료 90일 전에 완료하고 반드시 의회에 보고한다.</p> <p>⑤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35조(민간위탁 성과평가)</b> ① 시장은 민간위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해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b>최종 성과평가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b></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한하여 제1항의 성과평가를 제33조의 지도·감독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이며,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의 사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민간위탁 구분에 따른 조항명 변경</li> <li>• 성과평가 완료 시점에 대한 명시</li> <li>• 원활한 성과평가 수행 및 중복 평가 방지를 위하여 성과평가 예외 조항 추가</li> <li>• 상위부처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중복된 평가가 진행되어 수탁기관의 부담 가중화 방지</li> <li>• 소규모 및 단순관리 사업의 경우 성과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지도·감독을 대체</li> <li>•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원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li> </ul>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2. 청소, 방호 등 단순시설관리 업무인 경우</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위탁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p>	
<p><b>제27조(계약취소)</b>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li> <li>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li> <li>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li> <li>4. 시의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5. 수탁기관이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경우</li> <li>6. 시장이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li> <li>7.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p>	<p><b>제36조(민간위탁 계약의 취소 등)</b>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그 지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li> <li>2. 제33조 지도·감독 및 제34조 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li> <li>3. 제35조 성과평가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위·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li> <li>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li> <li>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때</li> <li>7. 수탁기관 임·직원의 범죄행위 등 비위 발생 또는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li> </ol> <p>② 시장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탁/민간위탁 구분에 따른 조항명 변경</li> <li>• 계약 취소 사유 재검토</li> <li>• 원활한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원상복구 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li> </ul>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개정 사유
<p>수탁시설 및 수탁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계약 취소 후 3년 이내에는 시의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다.</p>	<p>수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9조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위탁시설(장비·물품 포함)의 원상회복</li> <li>2. 제31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li> <li>3. 관련 서류 일체 반환</li> <li>4.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 기관 고발 등 조치</li> <li>5. 그 밖에 위탁 취소에 따른 시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lt; 신설 &gt;</b></p>	<p><b>제37조(민간위탁 수탁기관 응모 제한)</b> 제36조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탁 대상기관 참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취소에 따른 패널티 조항 추가</li> <li>• 계약 취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른 패널티 부여 가능 명시</li> </ul>
<p>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lt; 폐지 &gt;</b></p>	

## 5절 오산시 위탁에 관한 감사 전략 검토

### 1. 감사원 민간위탁 감사 전략 방향

- 2013년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감사원은 합법성 / 효율성 / 효과성의 3가지 측면에 집중하는 민간위탁 감사 수행 전략을 제안하고 있음.
- 합법성 측면의 감사란 민간위탁 계약 및 운영관리 부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었는가에 집중하는 것임
- 효율성 측면의 감사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 적절한 프로세스에 의하여 투입되고 관리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 효과성 측면의 감사는 일종의 성과평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업계획상의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함

표 104 | 감사연구원 민간위탁 감사 전략

감사기관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연구원 합법성 감사 효율성 감사 효과성 감사	합법성	위탁결정 단계	총괄기능	사업운영	<input type="checkbox"/> 민간위탁 총괄부서 유무 <input type="checkbox"/> 표준 사무편람 <input type="checkbox"/> 최초 위탁시작	
			사무선정	사업타당성	<input type="checkbox"/> 타당성 검토 여부 <input type="checkbox"/> 타당성 근거	
			기관선정	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위탁업체 성격	
	효율성	위탁과정 단계	위탁비용 산정기준	제도화	<input type="checkbox"/> 위탁비용 산정근거 <input type="checkbox"/> 원가분석 강행규정	
			업체간 비경쟁성	위탁비용	<input type="checkbox"/> 예산증감비율 <input type="checkbox"/> 위탁원가	
	효과성	위탁기간 적정성	계약방식	<input type="checkbox"/> 입찰참가 업체 수 <input type="checkbox"/> 위탁업체 변경횟수 <input type="checkbox"/> 최근계약방식 <input type="checkbox"/> 최근 위탁계약 기간 <input type="checkbox"/> 해당업체 누적계약 기간 <input type="checkbox"/> 해당업체 누적계약 횟수		
	합법성				모니터링	<input type="checkbox"/> 지도감독 횟수 <input type="checkbox"/> 지도감독 근거
	효과성	사후관리 단계	재계약시 규정 및 과정	성과평가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행위 적발 건수 <input type="checkbox"/> 성과평가기준 <input type="checkbox"/> 성과평가 횟수 <input type="checkbox"/> 성과평가 결과
	합법성				피드백	<input type="checkbox"/> 재계약 여부 <input type="checkbox"/> 재계약 사유
	효과성					경쟁성 부재
효율성	효율성	비용절감	효율성			

## 2.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감사 사례

### 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는 채용관리 / 예산회계 / 계약관리 / 재산물품관리 / 후원금관리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음.
- 총 75건의 감사 중점사항을 공표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서울특별시는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인사, 노무, 회계 관리 매뉴얼'이 존재하며, 이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음.
- 채용관리 19건, 예산회계, 21건, 계약관리 19건, 재산물품관리 8건, 후원금관리 8건으로 조사되었음.
- 채용관리 부문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고용 / 인사변경 시 발주기관 보고 / 상근에 관한 사항 / 의 무배치 인원이 주요 지적사항이었고, 예산회계 부문에서는 용도에 따른 예산 지출 외 대부분 정산과정에 의한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는 사항이었음.
- 계약관리 부문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적정성 /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계약체결 방식과 그 외 계약체결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재산물품관리부문에서는 재물조사 실시 및 재산대장 작성 여부 / 재산의 용도와 사용금지 등을 기준으로 하였음.
- 후원금의 경우 후원금에 대한 적정한 보고 여부 및 회계 기준 준수 등이 주요 중점사항이었음.
- 앞서 검토하였던 감사원 평가 기준 중 합법성과 효율성에 치중된 감사 결과라 볼 수 있으며, 효과성에 대한 부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105]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감사지적 사항 1

지역	구분	감사지적 사항
서울특별시	감사 중점사항 - 5개 분야 75건 - I. 채용관리 II. 예산회계 III. 계약관리 IV. 재산물품관리 V. 후원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의 전문역량을 도시경영에 접목하는 것은 선택 아닌 필수</li> <li>■ 지침 및 매뉴얼 숙지소홀로 미숙운영 투명/공정 운영을 위한 잘 못 운영된 부분 개선책 제시</li> </ul>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b>&lt; I. 채용관리 &gt;</b>                              1. 공고(모집)기간 임의 단축                              2. 채용(변경) 공공 절차 없이 신규 종사자 채용                              3. 객관적 서류심사와 기준 없이 면접대상자선정                              4. 이유 없이 학력·학교소재지 등에 따른 차별                              5. 지원자 1명이라고 서류심사·면접 없이 채용                              6. 자격미달자 종사자 채용                              7. 응시 자격조건 미달자 종사자 채용                              8. 시설장 가족 재무·회계 담당자로 채용                              9. 직원 임면사항 허위보고                              10.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 받지 않고 수집                              12. 사회복지시설장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13. 아동시설 종사자 아동학대·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14. 승진 최소요건 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승진                              15. 종사자(시설장포함)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위반                              16.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17. 의무배치 인원 기준 위반                              18. 종사자 근무상황 관리 부적정                              19.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실시 기준 미준수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b>&lt; II. 예산회계 &gt;</b>                              20. 세입/세출 예산편성 누락                              21. 예산변경 없이 목별 세출예산 초과집행                              22. 인건비, 시설비 전용불가 예산과목 전용                              23. 세출 예산 목적외 사용                              24. 법인 명의 통장사용 등 독립회계 위반                              25. 수당신설 및 재원 운영 부적정                              26. 수탁법인 소유 가설건축물 등록면허세 시설예산으로 지출                              27. 자부담 이행 계획 미준수                              28. 시설 이용료수입 집행 부적정                              29. 정산오류에 따른 과소 반납                              3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31. 가족수당 지급 및 미지급 부적정                              32. 경조사비 지급 부적정                              33. 수입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사용                              34. 직원식대 식자재 구입비로 전액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35. 클린카드 미발급·법인카드사용제한업종이용                              36. 신용카드 인센티브(포인트,마일리지) 사용 부적정                         </td> </tr> </table>
<b>&lt; I. 채용관리 &gt;</b> 1. 공고(모집)기간 임의 단축 2. 채용(변경) 공공 절차 없이 신규 종사자 채용 3. 객관적 서류심사와 기준 없이 면접대상자선정 4. 이유 없이 학력·학교소재지 등에 따른 차별 5. 지원자 1명이라고 서류심사·면접 없이 채용 6. 자격미달자 종사자 채용 7. 응시 자격조건 미달자 종사자 채용 8. 시설장 가족 재무·회계 담당자로 채용 9. 직원 임면사항 허위보고 10.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 받지 않고 수집 12. 사회복지시설장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13. 아동시설 종사자 아동학대·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14. 승진 최소요건 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승진 15. 종사자(시설장포함)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위반 16.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17. 의무배치 인원 기준 위반 18. 종사자 근무상황 관리 부적정 19.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실시 기준 미준수	<b>&lt; II. 예산회계 &gt;</b> 20. 세입/세출 예산편성 누락 21. 예산변경 없이 목별 세출예산 초과집행 22. 인건비, 시설비 전용불가 예산과목 전용 23. 세출 예산 목적외 사용 24. 법인 명의 통장사용 등 독립회계 위반 25. 수당신설 및 재원 운영 부적정 26. 수탁법인 소유 가설건축물 등록면허세 시설예산으로 지출 27. 자부담 이행 계획 미준수 28. 시설 이용료수입 집행 부적정 29. 정산오류에 따른 과소 반납 3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31. 가족수당 지급 및 미지급 부적정 32. 경조사비 지급 부적정 33. 수입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사용 34. 직원식대 식자재 구입비로 전액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35. 클린카드 미발급·법인카드사용제한업종이용 36. 신용카드 인센티브(포인트,마일리지) 사용 부적정	

표 106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감사지적 사항 2

지역	구분	감사지적 사항
서울특별시	감사 중점사항 - 5개 분야 75건 - I. 채용관리 II. 예산회계 III. 계약관리 IV. 재산물품관리 V. 후원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의 전문역량을 도시경영에 접목하는 것은 선택 아닌 필수</li> <li>■ 지침 및 매뉴얼 숙지소홀로 미숙운영 투명/공정 운영을 위한 잘 못 운영된 부분 개선책 제시</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8%;"> <p><b>&lt;II. 예산회계&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7.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오류</li> <li>38. 강사료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및 원천징수세액 과소 납부</li> <li>39. 통장관리 부적정(사업비통장, 인건비통장)</li> <li>40.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출 부적정</li> </ul> <p><b>&lt;III. 계약관리&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 나라장터 이용 입찰공고 미실시</li> <li>42.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li> <li>43. 입찰 참가자격 제한규정 부적정</li> <li>44. 계약 이행보증 부적정</li> <li>45. 인지세 미납</li> <li>46.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공사 분리발주</li> <li>47. 수의계약 체결 위해 시기 또는 수량 분할 구매</li> <li>48. 자동연장 방식으로 수의계약</li> <li>49. 수의계약내역 미공개</li> <li>50. 청소 및 경비구역 체결방식 부적정</li> <li>51. 제안서 평가위원회 선정방법 부적정</li> <li>52. 무허가건설폐기물처리사업자 건설폐기물처리</li> <li>53. 선금지급 부적정</li> <li>54.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부적정 및 하자검사 미실시</li> <li>5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미이행</li> <li>56. 공사 준공 전 준공처리 및 대가 지급</li> <li>57. 검수 소홀</li> <li>58. 용역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료 과다 지급</li> <li>59. 지연배상금 미부과</li> </ul> </div> <div style="width: 48%;"> <p><b>&lt;IV. 재산물품관리&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물품 취득 후 비품관리대장 미등재 및 정기재물조사미실시</li> <li>61. 수탁시설을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li> <li>62. 수탁재산의 제3자 권리설정 및 용도의 사용금지 규정위반</li> <li>63.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활용 부적정</li> <li>64. 물품 매각 시기 부적정</li> <li>65. 시설 이용료 감면 부적정</li> <li>66. 화재보험 및 단체상해보험 미가입</li> <li>67. 임대 선납기준 위반</li> </ul> <p><b>&lt;V. 후원금관리&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8. 후원금 성격의 법인전입금 예산편성 부적정</li> <li>69. 법인후원금 모금계좌를 시설 후원금 모금계좌로 이용</li> <li>70. 후원금품대장 미비치</li> <li>71. 후원금 영수증 발급 소홀</li> <li>72. 비지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li> <li>73. 비지정 후원금인 바자회 수입 관리 부적정</li> <li>74. 비공개 사항인 후원자의 성명 및 단체 명칭을 홈페이지에 공개</li> <li>75.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통보 및 보고 소홀</li> </ul> </div> </div>

2) 부천시

- 부천시 역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존재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감사가 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됨
- 조직 / 재정 / 재산 / 행정 / 기타로 총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음
- 조직 부문에서는 직원채용절차와 정규직 전환 방안 / 종사자 임면 보고의무 / 필수 인사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였고, 재정부문에서는 사업예산 수준의 적정성 및 용도에 따른 예산지출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계약법 준수 여부 등과 회계 규정에 따른 예산집행과정을 위주로 검토한 것으로 조사됨
- 재산 부문에서는 안전점검 여부 / 위수탁협약서의 적정성 / 적정 사용료 산정 등을 검토하였고, 행정 부문은 사무편람 작성 여부 / 사업계획 보고 의무 / 인수인계 시행여부 등을 검토하였음
- 앞서 검토하였던 서울특별시와 마찬가지로 합법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되, '시설관리 위탁사무의 시설관리 소홀', '찾아가는 거리상담 사무의 운영 부적정' 등 효과성에 대한 감사도 소수로 존재하고 있음

표 107 | 경기도 부천시 민간위탁 감사지적 사항 1

지역	구분	감사지적 사항	
부천시	감사 중점사항 - 5개 분야 88건 -  I. 조직 II. 재정 III. 재산 IV. 행정 V. 기타	■ 민간위탁 감사사례 공유로 유사지적 발생 예방,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업무처리시 활용 ■ 합법적이고 타당한 범위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발전적·자율적 민간위탁업무 수행 기대	
		< I. 조직 > 1. 직원채용절차와 정규직 전환 방법 부적정 2. 직원 채용시 공고와 다르게 채용 3. 시설장 및 직원 채용시 결격조회 미실시 4.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 5. 프로그램강사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면보고 소홀 7. 인사위원회 미구성 및 의결 부적정 8. 직원 승진 인사 부적정 9. 운영위원회 미개최 10. 운영위원회 임기 규정 미준수 11.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위반 12. 시설장 휴가 등 근무상황부 미기록 13. 복무관리 부적정 14. 필수규정 미제정	20. 자부담 집행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 미이행 21. 사업별 계좌 미 분리 및 휴면계좌 관리 소홀 22. 수입금의 직접사용 금지 위반 23. 4대 보험료 등 예수금 계좌관리 소홀 24. 공용차량의 유류비 집행 부적정 25. 회계처리절차 미준수 2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27.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소홀 28.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세입조치 미실시 29.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업무처리 소홀 30. 수익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31. 수강료 환불금 수입금에서 과오납 반환 처리 3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33.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34. 여비 지급 부적정 35. 강사료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36. 퇴직급여 충당금 운영 부적정 37. 퇴직금 중간정산 운영 부적정 38. 일용근로자 소득세 미신고 39. 제수당 근로소득 미포함 40. 물품검수조서 작성 누락
		< II. 재정 > 15.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불가항목 편성·지출 16. 예산의 전용절차 위반 17. 이월액 불일치 및 보고절차 미이행 18. 예산편성절차 없이 긴급공사 선 시행 19. 직원 역량강화 사업예산 과다 편성	

표 108 | 경기도 부천시 민간위탁 감사지적 사항 2

지역	구분	감사지적 사항	
부천시	감사 중점사항 - 5개 분야 88건 -	■ 민간위탁 감사사례 공유로 유사지적 발생 예방,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업무처리시 활용 ■ 합법적이고 타당한 범위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발전적·자율적 민간위탁업무 수행 기대	
		< II. 재정 > 41. 장기근속수당 지급 부적정	65. 부과금(공과금) 징수 부적정 66. 사용·수익허가 재산 사용료 부적정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p>I. 조직 II. 재정 III. 재산 IV. 행정 V. 기타</p>	<p>42. 시설위탁형 수탁사업자 시설관리 소홀 43. 채무확정 및 지급기한 도래 전 지출 4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 수수료 지급 부적정 45. 고용안정장려금 집행 부적정 46.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소홀 47.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미신청 48. 후원금(품) 관리 부적정 49. 후원금 용도의 사용금지 위반 50. 법인전입금 과소 납입 51. 공개입찰 절차 운영 부적정 52. 공사,용역,물품 계약 분할발주 부적정 53.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54. 수의계약 운영 절차 부적정 55. 청렴 서약제도 따른 청렴서약서 누락 56.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부적정 57. 계약이행보증 절차 부적정 58. 공사,용역,물품계약시 선금지급 부적정 59. 검사 및 대가지급 절차 부적정 60. 시설공사 하자관리 소홀</p> <p>&lt;III.재산&gt; 61.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부과징수 소홀 62.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부적정 63. 위수탁 협약서 작성 소홀 64. 시설물 대관 관련 규정 미비</p>	<p>67. 사용·수익허가 재산 평가액 산정 부적정 68. 변상금 부과 소홀 69. 연체료 부과 누락 7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홀 71. 수탁자 재해보험 미가입 72. 정기재물(물품) 조사 소홀 73. 불용물품 처리 소홀</p> <p>&lt;IV.행정&gt; 74. 사무편람 작성 및 비치 소홀 75. 위수탁협약서 표준안 부적정 76. 민간위탁사업 정산 시기 미준수 77. 사업계획변경시 발주처 사전승인 미이행 78. 위·수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미준수 79. 사무의 인계·인수 미실시 80.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추진절차 부적정 81. 민간위탁기간 지도감독 소홀 82. 운영위원회 구성 개선 83. 불필요한 규정 삭제</p> <p>&lt;V.기타&gt; 84.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이행 소홀 8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소홀 86. 도서대출 미납자 관리 부적정 87. 수탁기관 직원 주차요금 징수 부적정 88.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의 운영 부적정</p>
--	--	--

3)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감사사례는 협약서 준수 / 조례 및 규정 준수 / 회계처리적정 / 관리 및 운영실태, 4부문을 중심으로 하였음
- 상기 4가지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특성에 따라 총 9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감사를 진행하였고,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단, 대구광역시 역시 효과성보다는 합법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검토됨

표 109 |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감사지적 사항

지역	구분	감사지적 사항	
대구광역시	감사 중점사항 - 52개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 사무처리의 적정성</li> <li>■ 위탁금 등 예산 편성, 집행, 정산 등 회계처리 적법성</li> </ul>	
	<p>I. 협약서 준수 II. 조례·규정 준수 III. 회계처리 적정 IV. 관리·운영</p>	<p>1. 계약관리 분야 ① 소규모 하자관리 소홀 ② 분리발주 수의계약</p> <p>2. 규정관리 분야 ① 사무편람 미 작성 ② 운영규정 내용 미흡 및 승인신청 미 이행</p> <p>3. 사업관리 분야</p>	<p>6. 예산회계 분야 ① 증빙서류 미 징구, 사전품의 미 이행 등 회계절차 미 이행 ② 수탁사무 비 관련 차량 유류비 집행 ③ 업무추진비 사후 일괄품의 및 사적 사용 ④ 예산 편성목적 외 집행 7. 위탁협약 분야</p>

실태	① 개인별 사무분장 관리 소홀 ② 조례와 다른 사용료 징수 ③ 승인 없이 이용료 및 강의료 징수 ④ 이용자 이용권(전표) 발부·교부 미 이행 ⑤ 수요분석, 사업지원 단체선정 부 적정 4. 수탁자 선정분야 ① 민간위탁적격자 심의 위원 공개모집 미 이행 ② 1개 업체 응찰 시 재 공고해야 하나 미 이행 5. 시설관리 분야 ① 시설이용 홍보 미흡 및 비효율적공사 예산 낭비 ② Led조명 교체공사 무자격자 시공 ③ 수탁시설 임의로 운영시간 단축 ④ 위탁사무 범위를 벗어난 위탁금 편성 지출	① 협약 만료 후 사업비 잔액 미 정산·미 반환 ② 위·수탁 협약서에 시설장비 목록 누락 ③ 위탁수수료 사업비의 10%이나 예산의 10%로 지급 ④ 자체평가, 공유재산 심의 미 이행 8. 자산관리 분야 ①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험 미 가입 ② 결산·정산보고서 물품 변경사항 누락 등 ③ 공유재산 승인 이 전대, 감정평가 미 이행 ④ 대부료 미 부과 ⑤ 허가·승인 없이 자동판매기 운영 9. 인사관리 분야 ① 채용방법 부 적정 ② 근로계약서 작성 미 작성 및 부 적정 ③ 퇴직적립금 및 퇴직금 정산 부 적정
----	---	--

4) 경기도 안산시

- 안산시 감사사례는 지도감독 / 예산회계 / 사무운영 / 계약공사, 4부문을 중심으로 하였음
- 재물조사 실시여부, 계약 절차의 적성성, 인수인계서 작성여부, 임면 보고 등 앞에서 검토하였던 합법적인 절차 준수 여부와 예산집행 절차 및 결과가 적정한지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음
- 단, 안산시는 협약서 이행 실태에 대한 감사와 보육실 출입문 설치의 적정성(이용동선에 대한 미고려 및 예산집행의 효과성 측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이는 효과성에 대한 감사라 볼 수 있음

표 110 | 경기도 안산시 민간위탁 감사지적 사항

지역	구분	감사지적 사항
안 산 시	감사 중점사항 - 24개 사무 -  I. 지도감독 II. 예산회계 III. 사무운영 IV. 계약공사	■ 민간위탁 업무처리 적정성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 투명·효율적 민간위탁사업 운영 기여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1. 위탁부서의 지도·감독분야 : 총 3건                              1) 00센터 손해보험 가입 및 지도·감독 소홀                              2) 위수탁협약서 공증 미실시                              3) 재위탁 운영관리 협약체결 인수인계서 미작성                              2. 예산회계 분야 : 총 10건                              1)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처리 부 적정                              2) 위탁운영비 보조금 결산 소홀                              3) 특별복지상여금 지급 부 적정                              4) 회계 증빙서류 첨부 원칙 미 준수                              5) 세입·세출예산 편성 부 적정                              6) 신용(체크)카드 관리 부 적정                              7) 1년 미만 종사자 퇴직급여 관리 부 적정                              8) 예수금 계좌관리 소홀                              9) 세출예산 집행 원칙 준수 미비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3. 수탁사무 운영분야 : 총 10건                              1) 보육실 출입문 설치 부 적정                              2) 직원 채용공고 기간 미 준수                              3) 종사자 출장관리 부 적정                              4)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부 적정 및 전결규정 소홀                              5) **센터 협약서 이행실태 부 적정                              6) 물품관리 소홀                              7)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보수규정 개정                              8) 직원채용 임면보고 소홀                              9) 물품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10)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4. 계약·공사 분야 : 총 2건                              1) 2017 ** 박람회 행사 계약 부적정                              2) 공사 및 용역계약 대가지급 업무 소홀                         </td> </tr> </table>
1. 위탁부서의 지도·감독분야 : 총 3건 1) 00센터 손해보험 가입 및 지도·감독 소홀 2) 위수탁협약서 공증 미실시 3) 재위탁 운영관리 협약체결 인수인계서 미작성 2. 예산회계 분야 : 총 10건 1)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처리 부 적정 2) 위탁운영비 보조금 결산 소홀 3) 특별복지상여금 지급 부 적정 4) 회계 증빙서류 첨부 원칙 미 준수 5) 세입·세출예산 편성 부 적정 6) 신용(체크)카드 관리 부 적정 7) 1년 미만 종사자 퇴직급여 관리 부 적정 8) 예수금 계좌관리 소홀 9) 세출예산 집행 원칙 준수 미비	3. 수탁사무 운영분야 : 총 10건 1) 보육실 출입문 설치 부 적정 2) 직원 채용공고 기간 미 준수 3) 종사자 출장관리 부 적정 4)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부 적정 및 전결규정 소홀 5) **센터 협약서 이행실태 부 적정 6) 물품관리 소홀 7)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보수규정 개정 8) 직원채용 임면보고 소홀 9) 물품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10)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4. 계약·공사 분야 : 총 2건 1) 2017 ** 박람회 행사 계약 부적정 2) 공사 및 용역계약 대가지급 업무 소홀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5) 서울시 영등포구

- 서울시 영등포구 감사사례는 사무선정 / 사후관리 / 회계관리 / 사무운영, 4부문을 중심으로 하였음
- 감사지적 사항은 타 지자체와 유사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특이사항으로는 '시장조사 소홀', '센터 운영의 효율적 개선방안 강구권고' 등의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외 우수 감사사례 역시 공유하였음

표 111 | 서울시 영등포구 민간위탁 감사지적 사항

지역	구분	감사지적 사항
서울시 영등포구	감사 중점사항 -44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운영상의 문제점 불합리 사항 보완 개선</li> <li>■ 민간위탁사업 효율적 운영</li> </ul>
		<table border="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의·시정 처분사항 : 총 20건</li> <li>1) 민간위탁 사업 선정의 적정성 미확보 : @개</li> <li>2) 민간위탁사업 관리 업무 부적정: @개 사업</li> <li>3) 민간위탁사업 목적외 사용 : @개 사업</li> <li>4) 기관운영비 사용 부적정</li> <li>5) 강사료 원천징수 미실시: @개 사업 **회, 000,000원</li> <li>6)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li> <li>7) 입찰공고시 제 경비 정산내역 미기재</li> <li>8) 기부금 영수증 미발급 등 후원금 관리업무 부적정:@개</li> <li>9) 제경비 사후정산 미이행: @회 0,000,000원</li> <li>10) 퇴직적립금 부당 사용 : 0,000,000원</li> <li>11) 퇴직적립금 반환 지연</li> <li>1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li> <li>13)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 부적정</li> <li>14) 예산 집행절차 부적절</li> <li>15) 예산 전용 절차 미준수</li> <li>16) 시장조사 소홀 : @개 사업</li> <li>17) 수탁재산의 관리 부적정: @개 사업</li> <li>18) 협약서 조항 미이행: @개 사업</li> <li>19) 직원 채용시 결격사유 미확인</li> <li>20) 일대일(1:1) 상담 시 증빙자료 미 첨부</li> </o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권고 처분사항 : 총 3건</li> <li>1) 민간위탁 사업 운영 개선 대책 마련 강구 : ***과 - 신규 민간위탁 사업 선정 방법 개선</li> <li>2) ***복지관 후원금 및 사업수익 복지사업 운영방안 강구</li> <li>3) ***센터 사례관리사업 운영의 효율적 개선방안</li> <li>3. 제도개선 처분사항 : 총 2건</li> <li>1) ***센터 자문위원회 구성 재구성</li> <li>2)인사채용 세부규정 신설 : ***센터, ***센터</li> <li>4. 우수사례 : 총 6건</li> <li>1) 어린이 영어캠프 : ***과</li> <li>2) 학생 진로 페스티벌 개최 : ***과</li> <li>3) 저소득 결혼이민자 고국방문 사업 : ***과</li> <li>4) 문화원 이용자 편의증진 휴게공간 조정</li> <li>5) 기업사회공헌 통한 나눔활성화</li> <li>6) 건강100세 나눔마을 형성 '함께살이' 사업 추진</li> </ol> </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의·시정 처분사항 : 총 20건</li> <li>1) 민간위탁 사업 선정의 적정성 미확보 : @개</li> <li>2) 민간위탁사업 관리 업무 부적정: @개 사업</li> <li>3) 민간위탁사업 목적외 사용 : @개 사업</li> <li>4) 기관운영비 사용 부적정</li> <li>5) 강사료 원천징수 미실시: @개 사업 **회, 000,000원</li> <li>6)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li> <li>7) 입찰공고시 제 경비 정산내역 미기재</li> <li>8) 기부금 영수증 미발급 등 후원금 관리업무 부적정:@개</li> <li>9) 제경비 사후정산 미이행: @회 0,000,000원</li> <li>10) 퇴직적립금 부당 사용 : 0,000,000원</li> <li>11) 퇴직적립금 반환 지연</li> <li>1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li> <li>13)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 부적정</li> <li>14) 예산 집행절차 부적절</li> <li>15) 예산 전용 절차 미준수</li> <li>16) 시장조사 소홀 : @개 사업</li> <li>17) 수탁재산의 관리 부적정: @개 사업</li> <li>18) 협약서 조항 미이행: @개 사업</li> <li>19) 직원 채용시 결격사유 미확인</li> <li>20) 일대일(1:1) 상담 시 증빙자료 미 첨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권고 처분사항 : 총 3건</li> <li>1) 민간위탁 사업 운영 개선 대책 마련 강구 : ***과 - 신규 민간위탁 사업 선정 방법 개선</li> <li>2) ***복지관 후원금 및 사업수익 복지사업 운영방안 강구</li> <li>3) ***센터 사례관리사업 운영의 효율적 개선방안</li> <li>3. 제도개선 처분사항 : 총 2건</li> <li>1) ***센터 자문위원회 구성 재구성</li> <li>2)인사채용 세부규정 신설 : ***센터, ***센터</li> <li>4. 우수사례 : 총 6건</li> <li>1) 어린이 영어캠프 : ***과</li> <li>2) 학생 진로 페스티벌 개최 : ***과</li> <li>3) 저소득 결혼이민자 고국방문 사업 : ***과</li> <li>4) 문화원 이용자 편의증진 휴게공간 조정</li> <li>5) 기업사회공헌 통한 나눔활성화</li> <li>6) 건강100세 나눔마을 형성 '함께살이' 사업 추진</li> </ol>	

6) 서울시 성동구

- 서울시 성동구 감사사례는 인사복무 / 예산회계 / 운영관리 / 제도개선, 4부문을 중심으로 하였음
- 성동구 역시 감사지적 사항은 타 지자체와 유사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특이사항으로는 권익위의 민간위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는지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뽑을 수 있음

| 표 112 | 서울시 성동구 민간위탁 감사지적 사항

지역	구분	감사지적 사항		
서울시 성동구	감사 중점사항 - 4개분야 -  I. 인사복무 II. 예산회계 III. 운영관리 IV. 제도개선	<p>■ 민간위탁 운영상 문제점 시정개선 통한 효율적 운영 기여</p> <table border="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1. 인사복무 : 총 4건</p> <p>1) 채용계획 미수립</p> <p>2) 법정 의무교육 미실시</p> <p>3) 임용구비서류 미비</p> <p>4) 근무상황기록 관리 부적정</p> <p>2. 예산회계 분야 : 총 17건</p> <p>1) 기관운영비 사용 증빙서류 미비</p> <p>2) 사업비 집행 부적정(예산 목적 외 사용)</p> <p>3) 계약 이행 및 대금지급 부적정</p> <p>4) 신용카드 영수증 서명 미실시</p> <p>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p> <p>6) 물품구입에 따른 포인트 개인 적립</p> <p>7) 예산집행 부적정(직원 피복비 사용)</p> <p>8) 후원금 관리 부적정(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미통보)</p> <p>9) 하자보증금 지급 약약서 미확인</p> <p>10)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p> <p>11) 지출품의서 및 결의서 작성 부적정(예산집행절차 미준수)</p> <p>12) 위탁사업비 발생일자 미반납</p> <p>13) 공사계약서 미작성</p> <p>14) 물품 검수 절차 이행 소홀</p> <p>15) 강사료 원천징수 부적정</p> <p>16)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홀</p> <p>17) 위탁사업비 예수금 계좌 잔액 미정산</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3. 운영·관리분야 : 총 7건</p> <p>1) 사무편람(운영규정) 미작성 및 승인 미실시</p> <p>2) 회계담당자 교체시 인계인수서 작성 소홀</p> <p>3)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 미수립</p> <p>4) 위탁운영 지도·감독 소홀</p> <p>5) 지출원미지정(미임명)</p> <p>6) 수탁재산 관리 소홀</p> <p>7) 이행보증보험 가입 소홀</p> <p>4. 제도개선 : 총 2건</p> <p>1) 권익위 권고사항 반영한 운영의 투명성제고</p> <p>①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 - 선정기준, 구의회 동의</p> <p>②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선정기준 사전공개, 선정위 이해충돌방지, 결과공개</p> <p>③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 사후평가 의무화, 재계약시 성과평가결과 반영 등</p> <p>2) 민간위탁사업 지도·감독 책임성 강화</p> </td> </tr> </table>	<p>1. 인사복무 : 총 4건</p> <p>1) 채용계획 미수립</p> <p>2) 법정 의무교육 미실시</p> <p>3) 임용구비서류 미비</p> <p>4) 근무상황기록 관리 부적정</p> <p>2. 예산회계 분야 : 총 17건</p> <p>1) 기관운영비 사용 증빙서류 미비</p> <p>2) 사업비 집행 부적정(예산 목적 외 사용)</p> <p>3) 계약 이행 및 대금지급 부적정</p> <p>4) 신용카드 영수증 서명 미실시</p> <p>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p> <p>6) 물품구입에 따른 포인트 개인 적립</p> <p>7) 예산집행 부적정(직원 피복비 사용)</p> <p>8) 후원금 관리 부적정(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미통보)</p> <p>9) 하자보증금 지급 약약서 미확인</p> <p>10)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p> <p>11) 지출품의서 및 결의서 작성 부적정(예산집행절차 미준수)</p> <p>12) 위탁사업비 발생일자 미반납</p> <p>13) 공사계약서 미작성</p> <p>14) 물품 검수 절차 이행 소홀</p> <p>15) 강사료 원천징수 부적정</p> <p>16)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홀</p> <p>17) 위탁사업비 예수금 계좌 잔액 미정산</p>	<p>3. 운영·관리분야 : 총 7건</p> <p>1) 사무편람(운영규정) 미작성 및 승인 미실시</p> <p>2) 회계담당자 교체시 인계인수서 작성 소홀</p> <p>3)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 미수립</p> <p>4) 위탁운영 지도·감독 소홀</p> <p>5) 지출원미지정(미임명)</p> <p>6) 수탁재산 관리 소홀</p> <p>7) 이행보증보험 가입 소홀</p> <p>4. 제도개선 : 총 2건</p> <p>1) 권익위 권고사항 반영한 운영의 투명성제고</p> <p>①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 - 선정기준, 구의회 동의</p> <p>②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선정기준 사전공개, 선정위 이해충돌방지, 결과공개</p> <p>③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 사후평가 의무화, 재계약시 성과평가결과 반영 등</p> <p>2) 민간위탁사업 지도·감독 책임성 강화</p>
		<p>1. 인사복무 : 총 4건</p> <p>1) 채용계획 미수립</p> <p>2) 법정 의무교육 미실시</p> <p>3) 임용구비서류 미비</p> <p>4) 근무상황기록 관리 부적정</p> <p>2. 예산회계 분야 : 총 17건</p> <p>1) 기관운영비 사용 증빙서류 미비</p> <p>2) 사업비 집행 부적정(예산 목적 외 사용)</p> <p>3) 계약 이행 및 대금지급 부적정</p> <p>4) 신용카드 영수증 서명 미실시</p> <p>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p> <p>6) 물품구입에 따른 포인트 개인 적립</p> <p>7) 예산집행 부적정(직원 피복비 사용)</p> <p>8) 후원금 관리 부적정(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미통보)</p> <p>9) 하자보증금 지급 약약서 미확인</p> <p>10)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p> <p>11) 지출품의서 및 결의서 작성 부적정(예산집행절차 미준수)</p> <p>12) 위탁사업비 발생일자 미반납</p> <p>13) 공사계약서 미작성</p> <p>14) 물품 검수 절차 이행 소홀</p> <p>15) 강사료 원천징수 부적정</p> <p>16)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홀</p> <p>17) 위탁사업비 예수금 계좌 잔액 미정산</p>	<p>3. 운영·관리분야 : 총 7건</p> <p>1) 사무편람(운영규정) 미작성 및 승인 미실시</p> <p>2) 회계담당자 교체시 인계인수서 작성 소홀</p> <p>3)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 미수립</p> <p>4) 위탁운영 지도·감독 소홀</p> <p>5) 지출원미지정(미임명)</p> <p>6) 수탁재산 관리 소홀</p> <p>7) 이행보증보험 가입 소홀</p> <p>4. 제도개선 : 총 2건</p> <p>1) 권익위 권고사항 반영한 운영의 투명성제고</p> <p>①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 - 선정기준, 구의회 동의</p> <p>②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선정기준 사전공개, 선정위 이해충돌방지, 결과공개</p> <p>③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 사후평가 의무화, 재계약시 성과평가결과 반영 등</p> <p>2) 민간위탁사업 지도·감독 책임성 강화</p>	

### 3. 오산시 민간위탁 감사 전략 수립

#### 1) 감사방향 기준 설정

■ 아래와 같이 민간위탁 표준 추진 절차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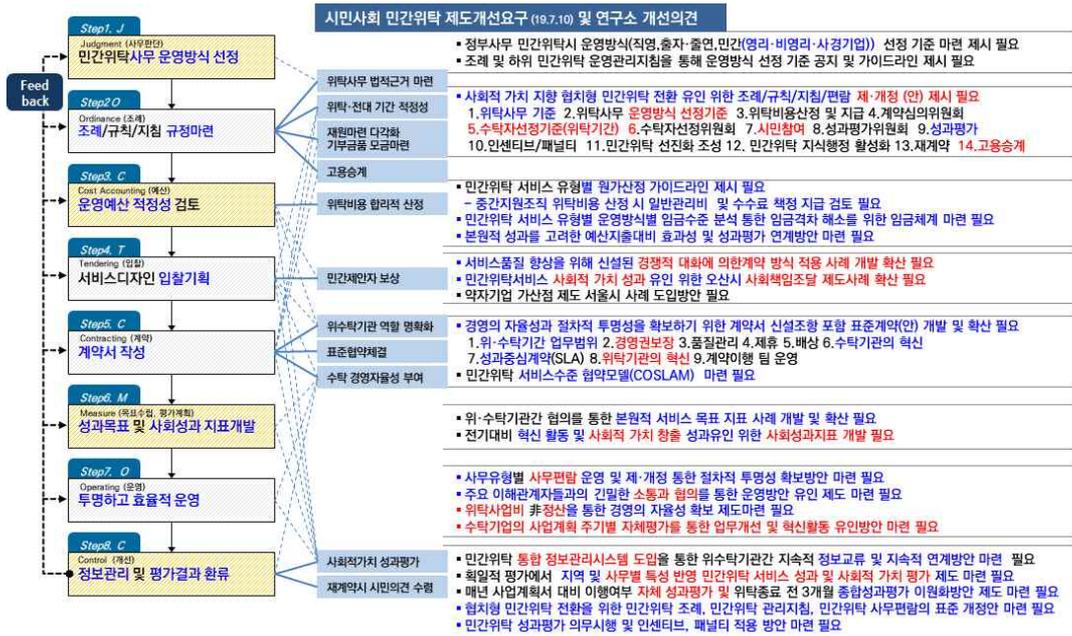


그림 51 | 민간위탁 추진 모델 및 요구사항

#### 2) 민간위탁 사무 감사 기본모델

■ 앞서 도출한 개선방안과 민간위탁 표준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오산시형 민간위탁 사무감사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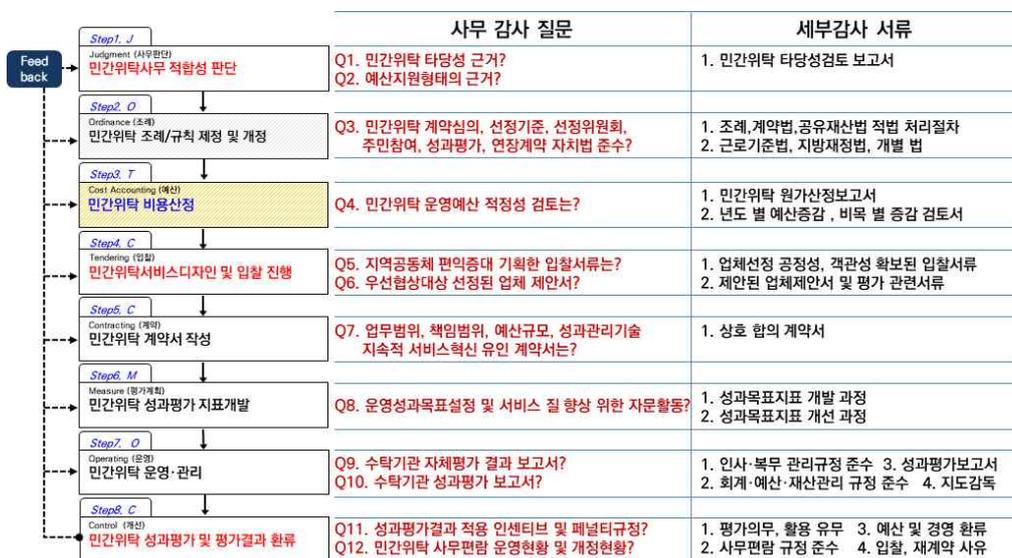


그림 52 | 민간위탁 사무 감사 기본모델

#### 4. 오산시 민간위탁 감사 기준

#####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기준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감사 기준은 아래와 같음.

|표 113| 민간위탁 사무 운영방식 선정 부문 감사 중점사항

구분	감사 기준	검토 자료
합법성	☐ 조례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적정성 보고서</li> <li>■ 민간위탁 추진 자료 등</li> </ul>
	☐ 적정성 검토 시, 근거법령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가?	
	☐ 다른 사무 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이 검토되었는가?	
효율성	☐ 경제적, 사업운영방안 등에 대한 효율성 검토가 진행되었는가?	
	☐ 수익발생 사업의 경우 적정한 수입추정이 되어 있는가?	
	☐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 수준이 검토되었는가?	
효과성	☐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되었는가?	
	☐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수행 성과목표가 검토되었으며, 그에 대한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가?	
	☐ 민간위탁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및 목표가 검토되었는가?	

##### 2) 조례 및 지침 등 준수 기준

■ 조례 및 지침 등 준수 감사 기준은 아래와 같음.

|표 114| 조례/규칙/지침 준수 부문 감사 중점사항

구분	감사 기준	검토 자료
합법성	☐ 민간위탁 추진 시, 조례에 따라 의회동의를 진행하였는가?	■ 민간위탁 의회동의서
	☐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운영함에 있어(이용료, 이용시간, 인력구성 등) 개별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가?	■ 해당사무 개별조례
	☐ 사무편람 작성, 지도점검 실시, 계약만료 전 성과평가 등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 사무편람, 지도점검보고서, 성과평가보고서 등

##### 3)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기준

■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감사 기준은 아래와 같음.

표 115 | 운영예산 적정성 부문 감사 중점사항

구분	감사 기준	검토 자료
합법성	□ 운영예산 산출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예산 편성 자료</li> <li>■ 운영원가 보고서</li> <li>■ 수입추정 보고서 등</li> </ul>
	□ 상위지침 또는 계약예규에 따른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였는가?	
	□ 주52시간 및 근로자 보호지침 등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었는가?	
효율성	□ 유사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효율성 검토를 진행하였는가?	
	□ 수익발생 사업의 경우 수입추정에 대한 사항이 적절한가?	
	□ 사업목적과는 맞지 않는 불필요한 경비비목이 존재하는가?	
효과성	□ 편성예산을 통하여 사업의 목적을 적절히 달성할 수 있는가?	
	□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과 규모가 확보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우가 적절히 편성되어 있는가?	
	□ 적절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적용하였는가?	

4) 입찰 및 계약 검토 기준

■ 입찰 및 계약 감사 기준은 아래와 같음.

표 116 | 서비스디자인 입찰기획 부문 감사 중점사항

구분	감사 기준	검토 자료
합법성	□ 공개경쟁을 전제로 입찰을 추진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공고서</li> <li>■ 과업지시서</li> <li>■ 제안요청서</li> <li>■ 낙찰자 선정결과 등</li> </ul>
	□ 제한 및 수의계약 또는 연장계약 시, 그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고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상,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효율성	□ 위탁사무에 대한 사전적인 시장조사를 통하여 충분한 경쟁자를 확보하고자 하였는가?	
	□ 수탁자 선정 기준 중 가격에 대한 배점이 적절한가?	
	□ 수탁자 선정 기준 중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었는가?	
효과성	□ 수탁자 선정기준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사무임에도 단순적격심사 또는 최저가낙찰제를 이용하여 입찰을 진행하였는가?	
	□ 지나친 제한과 부적절한 선정 기준으로 경쟁력있는 민간기관의 참여가 제한되었는가?	

5) 계약서 작성 기준

■ 계약서 작성 감사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표 117 | 계약서 작성 부문 감사 중점사항

구분	감사 기준	검토 자료
합법성	☐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위수탁협약서
	☐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가?	
	☐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해지 조건등에 대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가?	
효율성	☐ 범정부의무인력 배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 효율적인 예산집행(수익창출 및 예산 절감에 따른)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영되어 있는가?	
	☐ 사업비 지급 및 집행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효과성	☐ 과업의 범위 및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가	
	☐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가?	
	☐ 수탁기관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 사업수행 결과 및 성과평가 점수 등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6) 성과목표 개발 기준

■ 성과목표 개발 감사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표 118 | 성과목표 개발 부문 감사 중점사항

구분	감사 기준	검토 자료
합법성	☐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시기에 적절한 구성으로 제출되었는가?	■ 사업계획서 ■ 성과평가 계획서 ■ 위수탁협약서 등
	☐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성과목표 설정이 이루어졌는가?	
효율성	☐ 인력운영,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목표가 포함되어 있는가?	
	☐ 예산증감 또는 인력증감에 계획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가?	
	☐ 객관적인 정량지표가 적절히 분배되어 있는가?	
효과성	☐ 지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 연차별 성과목표가 더 개선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가?	
	☐ 성과목표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었는가?	
	☐ 단위사업별로 충분한 성과목표가 반영되었는가?	

제4장. 오산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안)

7)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 기준

■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 감사 기준은 아래와 같음.

표 119 |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 부문 감사 중점사항

구분	감사 기준	검토 자료	
합법성	인력 및 조직	▣ 협약서 또는 제안서 내 명시된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가? (전문성 및 규모)	■ 인력배치 현황
		▣ 인력 채용 시,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하였는가?	■ 인력채용 결과
		▣ 주요 관리직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는가?	■ 인사변경 보고
		▣ 발주기관이 민간위탁 근로자의 임금이 적절히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 임금지급내역서
		▣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가? (주52시간, 근로계약서, 연차지급 등)	■ 근무시간내역 ■ 근로계약서 등
	회계	▣ 별도의 입출금 통장을 통하여 민간위탁금이 관리되고 있는가?	■ 회계장부 ■ 지출내역 등
		▣ 근거와 발주기관의 승인없는 예산과목 전용이 있었는가?	
		▣ 민간위탁 사업 목적 외의 사용이 있었는가?	
		▣ 오산시 회계기준에 따라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가?	
		▣ 회계장부 및 수입금 등에 대한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재산 및 안전	▣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가?	■ 재산관리대장
		▣ 물품구입 및 용역발주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는가?	■ 입찰내역서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재, 상해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 있는가?	■ 보험가입증
	대시민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사항이 적절히 진행되었는가?	■ 정보공개 현황
기타	▣ 사무편람, 운영규정 등 시설 운영을 위한 매뉴얼이 존재하는가?	■ 각종 매뉴얼 등	
	▣ 발주기관 승인없는 재위탁 또는 하도급이 진행되었는가?	■ 사무 운영현황	
효율성	인력 및 조직	▣ 근로자의 근무상황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출결, 근무시간, 업무분장 등)	■ 인력현황표
	예산	▣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사업계획서
		▣ 예산 집행률에 따른 예산관리가 이뤄지고 있는가?	■ 예산 집행현황
	재산 및 안전	▣ 정기적인 재물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	■ 재물조사 내역서
대시민	▣ 민간위탁에 대한 홍보 및 정보공개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 홍보 및 정보공개 내역서	
효과성	인력 및 조직	▣ 근로자의 인권 교육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가?	■ 교육현황표
		▣ 근로자의 역량 교육이 전문가를 통하여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가?	■ 교육현황표
	예산	▣ 예산절감 계획에 대한 실천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성과보고서
	재산 및 안전	▣ 비상상황을 대비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 안전관리 매뉴얼
	대시민	▣ 시민이용시설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 만족도 조사결과
		▣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이 공개되고 있는가?	■ 민원 처리결과
		▣ 기관 홈페이지 또는 타 매체를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가?	■ 홍보 및 정보공개 내역서

8)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기준

■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감사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표 120 |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부문 감사 중점사항

구분	감사 기준	검토 자료
합법성	☐ 조례에 따라사업 완료 전 성과평가가 시행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평가 보고서</li> <li>■ 후속조치 보고서</li> </ul>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수행하였는가?	
	☐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수탁기관 이의절차 수행되었는가?	
효율성	☐ 성과평가 수행자는 적절한 전문가를 통해 구성되었는가?	
	☐ 성과평가 수행 시, 사업예산 대비 적절한 비용이 투입되었는가?	
효과성	☐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기준(우수, 미흡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 형식적인 성과보고가 아닌 서비스개선과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사업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평가가 수행되었는가?	
	☐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는 충실히 명시되어 있는가?	
	☐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되었는가?	
	☐ 대시민 만족도 조사를 적절한 대상과 수량으로 진행하였는가?	
	☐ 상위부처에 의한 성과평가 사항이 오산시에서 추구하는 바와 일치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는가?	



CHAPTER

부록

# 표준 입찰공고문



## 부록 | 표준 입찰공고문 (안)

### 1. 표준 입찰공고문 기준

- 표준 입찰공고문은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개별 사무 특성에 따라 변경이 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개별 사무 특성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은 별도의 표시를 통해 추후 표준 입찰공고문을 활용하기 용이하게 구성하였음.

[표 121] 표준 입찰공고문 작성 기준

순번	내용	비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개별 사무에 따른 개요 자료 작성
2	입찰방법	개별 사무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적격심사 여부 판단
3	참가자격	개별 사무에 따른 제한입찰 여부 판단
4	제안서 평가 방법	개별 사무에 따른 평가 점수 배점 기준 변경 가능
5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개별 사무에 따른 선정 기준 변경 가능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7	제안서 심사 및 평가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9	입찰의 무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11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	
12	기타사항	
1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1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사항	
15	수탁기관 평가 기준 예시	개별 사무에 따른 지표 및 배점 변경 필요

- 상기 기준에 따른 표준 입찰공고문(안)은 다음과 같음.

# 입찰 공고문 (안)

(협상에 의한 계약)<sup>7)</sup>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 (용역명)		
용역기간	: 2000.00.00 ~ 2000.00.00 (착수일로부터 000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 금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안서 제출	: 2000.00.00.(O)
공고기간	: 2000.00.00(O) ~ 2000.00.00(O)		
가격제안서 제출	: 2000.00.00(O) 09:00 ~ 2000.00.00(O) 17:00		
공고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a href="http://www.g2b.go.kr">http://www.g2b.go.kr</a> ) 및 오산시 홈페이지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제안금액의 산출내역서 투찰 시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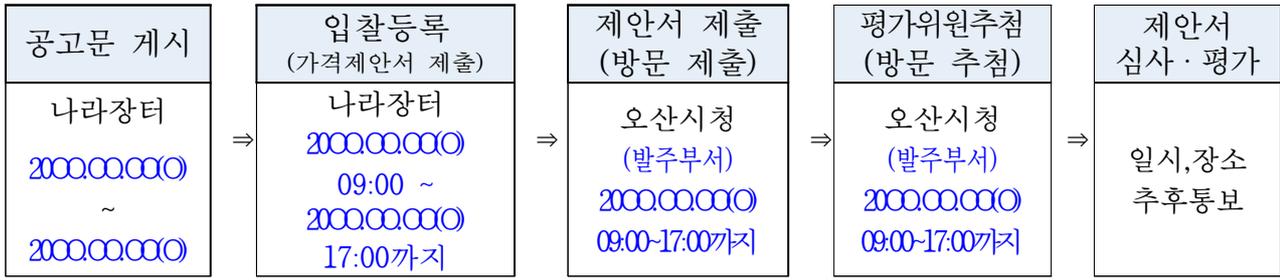
## 2.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가. 낙찰자 선정방식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7) 경기도 오산시 입찰공고 표준(안)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선정방식에 따라 입찰방법, 사업자 선정방법 등 변경 필요

나. 흐름도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0000(업종코드:0000)으로 입찰참자 등록을 필한 업체<sup>8)</sup>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같음합니다.

다. (공동수급 여부에 관한 사항)<sup>9)</sup>

라. (기타 입찰참가자격 명시)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경기도 오산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80%, 입찰 가격 20%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으로 함.<sup>10)</sup>

8)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나, 나라장터 상 입찰참가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 적용  
 9) 공동수급은 지방계약법 제29조에 따라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나,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7항에 따라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적용함. 또한, 공동수급을 허용할 경우, 공동이행 방식인지 분담이행 방식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부문을 준용하되, 각 사업의 중요성을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점수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부담이 되는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점수 0% 불가)

다.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5.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sup>11)</sup>
-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

- 일 시 : 2000.00.00.(O) 09:00 ~ 2000.00.00.(O) 17:00
- 제출장소 : G2B (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참가마감 전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되며, 제안서(우리시 제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 ※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

1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부문을 준용하되, 사업의 여건과 중요도를 판단하여 기준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나.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 소 : G2B (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 다.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방문접수 -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1) 제안서 제출 (경기도 오산시 발주부서 - 방문접수)

- 일 시 : 2000.00.00.(O) 09:00 ~ 17:00
- 제출장소 : 경기도 오산시청 발주부서(담당자 000, 031-000-0000)  
 ※ 발주부서 주소 : 경기도 오산시 000 000 000 00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설명 : 나라장터 “제안요청서” 로 같음합니다.

### 2) 제안서 제출방법 (방문제출만 허용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에 의한 방문접수이어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함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3) 평가위원 추첨 (우리시 발주부서 - 제안서 제출 후 추첨)

- 일 시 : 2000.00.00.(O) 09:00 ~ 17:00
- 추첨장소 :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함
- 제출서류 : 비치된 양식에 의거 추첨

## 7. 제안서 심사 및 평가

가. 일시 / 장소 : 추후 통보

나. 방 법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접수기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내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

※ 포함사항 : 노무관리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취약 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제출 여부 등) - 별첨 2. 참고

※ 주의사항 : 상기 노무관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되,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 사업의 사안에 따라 지표와 점수를 변경할 수 있음

- 발표자 : 제안 설명은 PPT로 진행하며 업체당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업체 소속 대리인(발표자 포함 총 2인 이내)

- 발표시간 : 제안사별로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sup>12)</sup>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증명자료, 신분증 등 소정 신분을 증명하여야 하며, 제안의 내용과 실제 사업수행 내용과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제안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정성적 평가지표 항목을 “0” 점 처리함)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하며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확약으로 같음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2) 사업의 중요도 및 여건에 따라 해당 시간 변경 가능.

## 11.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를 제출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추후 제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이 확인될 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하다.
-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12. 기타사항

-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
-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계약자는 경기도 오산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바. 경기도 오산시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대상이 됨을 숙지.
-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기도 오산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 Line) 및 [전화\(031- 000-0000\)](tel:031-000-0000), [팩스\(031-000-0000\)](tel:031-000-000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확약서 양식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재지 :
- 대표사 :

1. 당사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000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 ④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⑤ 상기 사항 외 붙임문서(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조건) 내 사항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경기도 오산시 분임재무관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사항

“수탁기관”은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 “위탁기관”은 경기도 오산시를 말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를 제출한 자와 경기도 오산시는 서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고용유지·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2조(특별한 사정)** ① 제1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 ②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위탁기관 내 설치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고용기간)**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5조(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제6조(소통 창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논의사항)**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8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수탁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탁기관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① 수탁기관은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위탁기관은 해당 계좌에 위탁사무 관련 소요되는 노무비를 별도 지급한다.

② 수탁기관은 노무비 지급 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제9조(연장 및 재계약 등)**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 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위탁기관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평가 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2.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2조(계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기관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13조(관리·감독)**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4.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5.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6.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7.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 ② 위탁기관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 감사 외 수시 감사 및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약속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 동일한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

본 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약속서에 포함된 상기 조항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오산시 분임재무관**

[별첨 2] 수탁기관 평가 기준 예시

## 수탁기관 평가 기준 예시

수탁기관 선정 시, 아래의 평가기준을 참고하되,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 사업의 사안에 따라 지표와 점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정성평가 - 노무관리의 항목은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에 의거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구 분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비 고
정량 평가 (2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본 재무 지표	5	발주처 평 가
	운영실적	▪ 유사사업 운영 실적	6	
	인력보유	▪ 사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6	
	신인도	▪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경력	3	
<b>소 계 (A)</b>			<b>20</b>	
기술 능력 평가 (80점)	수행 계획 (15점)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추진전략의 적정성	5	평가위원 평 가
		▪ 연차별 위탁 수행 계획 및 목표	5	
		▪ 운영 활성화 및 홍보	5	
	인력운영 (15점)	▪ 조직 구성 계획의 타당성	5	
		▪ 인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	5	
		▪ 직원 교육 실시 계획	5	
	운영능력 (10점)	▪ 운영방안 및 개발 전략	5	
		▪ 시설 유지보수 및 투자 계획	3	
		▪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2	
	회계관리 (10점)	▪ 수입·지출 관리 및 예산절감 방안의 효율성	5	
▪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5		
노무관리 (5점)	▪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제출여부 등 포함	5		
기타 (5점)	▪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발생시 및 대응 전략 ▪ 각종 민원 발생 예방방법 및 노력 제시 ▪ 위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타 제안 사항	5		
<b>소 계 (B)</b>			<b>60</b>	
가격평가(C) (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20	
<b>합 계 (A+B+C)</b>			<b>100</b>	